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이 용 안 내

- ✔ 본 사례집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2,658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시정권고 결정 현황 및 사례를 수록함
- ✔ 주요 시정권고 사례로 법익침해 유형별 시의성·대표성이 높은 총 32건의 사례를 선정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규정된 조항 순에 따라 수록함
- ✔ 시정권고 전체 목록은 전체 결정건을 의결번호 순으로 수록하되,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이 2건 이상 연속된 경우, 첫 건에 한해 권고이유를 포함한 결정내용을 표시하고 나머지 건은 별도 목록표로 요약함
- ✔ 수록 사례에 개인정보·단체명 등 특정 주체에 관한 정보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유명인 또는 공적 인물에 관하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식별 불가하도록 편집함

제1부 시정권고 현황	5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11
개인적 법익 침해	13
제1장 사생활 침해	14
사례. 1 제2019-202호	14
사례. 2 제2019-214호	16
사례. 3 제2019-449호	18
사례. 4 제2019-582호	20
사례. 5 제2019-445호	22
사례. 6 제2019-210호	23
사례. 7 제2019-370호	25
제2장 명예훼손	27
사례. 8 제2019-61호	27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9
사례. 9 제2019-1017호	29
사례. 10 제2019-257호	31
사례. 11 제2019-797호	33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34
사례. 12 제2019-258호	34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5
사례. 13 제2019-1051호	35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37
사례. 14 제2019-1174호	37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39
사례. 15 제2019-804호	39
사회적 법익 침해	41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2
사례. 16 제2019-97호	42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장 차별 금지 위반	44
사례. 17 제2019-98호	44
사례. 18 제2019-154호	46
제3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47
사례. 19 제2019-491호	47
제4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48
사례. 20 제2019-379호	48
사례. 21 제2019-502호	50
제5장 성관련 보도	52
사례. 22 제2019-1177호	52
제6장 자살관련 보도	54
사례. 23 제2019-700호	54
사례. 24 제2019-516호	55
제7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56
사례. 25 제2019-163호	56
사례. 26 제2019-718호	59
제8장 폭력 묘사	61
사례. 27 제2019-728호	61
제9장 충격·혐오감	63
사례. 28 제2019-39호	63
사례. 29 제2019-412호	65
제10장 여론조사 보도	67
사례. 30 제2019-1191호	67
제11장 기사형 광고	69
사례. 31 제2019-747호	69
제12장 기사 제목	71
사례. 32 제2019-1243호	71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73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부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2019년 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총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했다. 2017년 이후부터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시정권고를 위한 상시 심의 대상매체는 총 2,658개로 이 중 418개 매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91.1%에 달해 인터넷 기반 매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이신문 및 방송과 같은 매체의 비중은 8.9%에 머물렀다.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가장 빈번했던 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등’ 458건(35.6%), ‘기사형 광고’ 132건(10.2%), ‘여론조사 보도’ 123건(9.5%)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2019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먼저 3월 20일에는 제10조의2(차별 금지)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 요인(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국적, 지역, 나이’를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8월 21일에는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제8조(신고자등 보호)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사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극적 또는 선정적인 제목을 금지하는 제21조(기사 제목)를 신설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9년 시정권고 결정 중 개인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663건, 사회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결정은 625건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이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보다 약간 많았다.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이 458건(35.6%)으로 가장 많아 전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적 인물·유명인의 가족 혹은 관련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 유명인의 성적 지향을 밝힌 보도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101건(7.8%),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47건(3.6%)이었다.

사회적 법의 침해에서는 ‘기사형 광고’ 132건(10.2%), ‘여론조사 보도’ 123건(9.5%), ‘충격·혐오감’ 105건(8.2%)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여론조사 보도’ 유형은 독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함께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상당한 결정건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2019년 8월 신설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제목)에 의해 8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기사 제목의 중요도가 높은 인터넷 기반 언론 환경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의 침해										사회적 법의 침해										국가적 법의 침해
		사생활 등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아동·청소년의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2017	1,034 (100)	217 (21)	4 (0.4)	280 (27.1)	70 (6.8)		27 (2.6)		5 (0.5)	2 (0.2)	3 (0.3)		57 (5.5)	2 (0.2)	1 (0.1)	84 (8.1)	13 (1.3)	1 (0.1)	70 (6.8)		198 (19.1)	
2018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2019	1,288 (100)	458 (35.6)	25 (1.9)	101 (7.8)		19 (1.5)	47 (3.6)	1 (0.1)		12 (0.9)	1 (0.1)	9 (0.7)	21 (1.6)	68 (5.3)	27 (2.1)	77 (6.0)	42 (3.3)	12 (0.9)	105 (8.2)	123 (9.5)	132 (10.2)	8 (0.6)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9년 결정건수를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1,101건으로 전체 중 8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간지 대상 결정이 94건(7.3%)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뉴스통신 73건(5.7%), 방송 13건(1.0%), 주간지 5건(0.4%), 월간지 2건(0.2%) 순이었다.

시정권고 대상 매체 유형 중 인터넷신문의 비중은 2009년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후 2017년부터는 80% 중반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집중은 온라인으로의 언론 환경 전환과 인터넷신문의 양적 팽창, 매체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7. 1. 1. ~ 2019.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7	1,034 (100)	41 (4.0)	41 (4.0)	12 (1.2)	2 (0.2)	47 (4.5)	878 (84.9)	13 (1.3)
2018	1,275 (100)	38 (3.0)	52 (4.1)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2019	1,288 (100)	34 (2.6)	60 (4.7)	5 (0.4)	2 (0.2)	73 (5.7)	1,101 (85.5)	13 (1.0)

* () 안의 숫자는 %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9. 12. 31.)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이등 청소년 보호	정신 질환 자 신원 공개	부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유포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중견 언론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 도덕 및 사회 유포리 침해	기타	
1981																												
1982																												
1983	3																										3	
1984																												
1985																												
1986	3	3																										
1987	6	4					2																					
1988	37	16		3			9																				9	
1989	180	36		92			52																					
1990	311	67		169	12		63																					
1991	264	34		140	16		70												1								3	
1992	390	34		227	3		123																				3	
1993	344	10		228			106																					
1994	204	7		132			58													7								
1995	282			131			29													121							1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1998	348			29	151		16			14									1	137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이동 청소년 보호	정신 질환 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진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지식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기타
1999	240	-	-	20	126	-	17	-	-	11	-	-	-	-	-	-	-	-	66	-	-	-	-	-	-	-
2000	234	2	-	8	67	-	54	-	-	6	-	-	-	-	-	-	-	-	97	-	-	-	-	-	-	-
2001	231	1	-	9	70	-	22	-	-	10	-	-	-	-	-	-	-	-	119	-	-	-	-	-	-	-
2002	142	1	-	-	88	-	9	-	-	-	-	-	-	-	-	-	-	-	44	-	-	-	-	-	-	-
2003	237	2	-	41	153	-	13	-	-	1	-	-	-	-	-	-	-	-	20	-	-	-	-	-	-	7
2004	283	2	-	114	68	-	7	-	-	1	-	-	-	-	-	-	-	21	52	-	-	-	-	-	-	18
2005	278	10	-	88	24	-	11	-	-	-	-	-	-	-	-	-	-	85	47	-	-	-	-	-	12	1
2006	190	3	-	68	23	-	4	-	-	2	-	-	-	-	-	6	-	73	10	-	-	-	-	-	-	1
2007	202	14	-	80	21	-	1	-	-	2	-	-	-	-	-	-	-	44	30	-	7	-	-	-	-	3
2008	289	30	-	48	8	-	4	-	-	-	-	-	-	-	-	62	7	97	27	-	4	-	-	-	-	2
2009	253	14	-	98	6	-	-	-	-	1	-	-	-	-	-	2	-	93	-	-	2	2	-	-	-	35
2010	284	10	-	49	2	-	2	-	-	-	-	-	-	-	-	17	-	199	4	-	-	1	-	-	-	-
2011	426	36	-	100	-	-	2	-	-	-	-	-	-	-	-	4	-	189	95	-	-	-	-	-	-	-
2012	259	5	-	40	-	-	5	-	-	3	-	1	-	-	-	40	-	49	116	-	-	-	-	-	-	-
2013	289	23	-	35	-	-	-	-	-	1	-	-	-	-	-	31	-	78	89	-	32	-	-	-	-	-
2014	302	25	-	16	-	-	5	-	-	-	-	-	29	9	51	4	73	75	-	13	2	-	-	-	-	-
2015	438	92	-	5	-	1	-	-	-	10	-	-	-	-	16	8	62	135	-	14	-	95	-	-	-	-
2016	912	134	-	43	4	262	20	-	-	4	75	-	-	4	22	5	124	28	-	14	-	173	-	-	-	-
2017	1,034	217	4	280	70	-	-	27	-	5	2	3	-	57	2	1	84	13	1	70	-	198	-	-	-	-
2018	1,275	230	-	108	1	-	54	285	-	4	2	7	-	21	31	13	287	-	23	73	-	136	-	-	-	-
2019	1,288	458	25	101	-	-	19	47	1	-	12	1	9	-	21	68	27	77	42	12	105	123	132	8	-	-
계	12,237	1,533	29	2,700	1,117	263	824	359	1	161	91	12	9	29	112	352	65	1,640	1,601	36	334	128	734	8	12	87
%	100	12.5	0.2	22.1	9.1	2.1	6.7	2.9	0.0	1.3	0.7	0.1	0.1	0.2	0.9	2.9	0.5	13.4	13.1	0.3	2.7	1.0	6.0	0.1	0.1	0.7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14
제2장 명예훼손	27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9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34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5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37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39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9-202호
매 체 명	서울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12일 31면
기사제목	광주의 분노

1. 보도내용

「광주의 분노」 제하의 사진

서울경제

2019년 03월 12일
31면 (사회)



광주의 분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핑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가운데 사진). 이날 전씨가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자 시민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그를 규탄했으며(왼쪽 사진) 법원 옆 동산초등학교 학생조차 창문 밖으로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쳤다.
/광주=오. 기자

(17.8*13.0)crr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향해 비난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9-214호
매 체 명	스포티비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6일 TV연예면
기사제목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1. 보도내용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제하의 사진



[스포티비뉴스=장 기자]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S.E.S.로 활동하며 '원조 요정'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슈 씨. 최근엔 8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실수가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 의사를 밝혔던 슈. 하지만 그녀가 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바로 지난 6일 슈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보며 한층 밝아진 모습의 슈 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요. 이 시기가 비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선고를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떠나고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 비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해외 상습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가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9-449호
매 체 명	인터넷 영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3일 국제면
기사제목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1. 보도내용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제하의 사진

영남일보

2019년 05월 13일
(국제면)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가운데)과 프랑스인 남성 2명이 11일 프랑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9-582호
매 체 명	뉴스시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0일 연예면
기사제목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1. 보도내용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배우의 미성년자 자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19-445호
매 체 명	광주타임즈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4일 1면
기사제목	○○군 공직자 이래도 되나

1. 보도내용

「제○회 ○○○○축제 때인 지난 3일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센터 ○○○○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 농촌지도사가 담당과장인 ○모과장에게 대들며 먹살을 잡는 일이 벌어져 축제장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눈총을 쬐푸리게 해 공직자 기강이 무너지고 근무태도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편 ○씨는 본인의 병에 심각성을 모르고 인정도 않고 행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병가를 내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다름을 벌인 공무원 양 당사자의 성, 소속, 직위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 중 일방이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직기강해이를 지적한 기사라 할지라도 신원 및 정신과적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9-210호
매 체 명	인터넷 금강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22일 사회면
기사제목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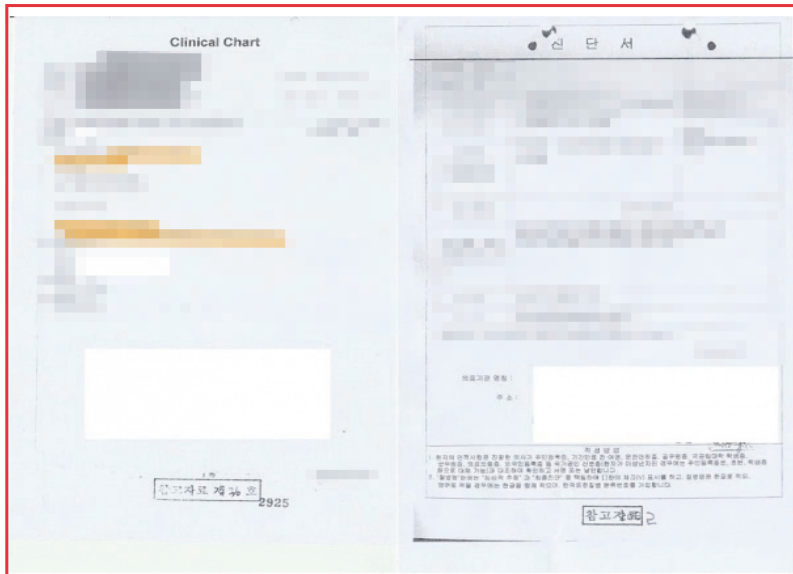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제하의 사진



HOME > 사회 > 사회일반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03.22 14:46 | 댓글 0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당 씨가 22일 SNS에 공개하며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의 진단서 2건.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산부인과 등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해당 진단서 실물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7

의결번호	제2019-370호
매 체 명	뉴스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4월 10일
기사제목	물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1. 보도내용

「물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물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씨의 경우 물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중략)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이들이 ○씨 자택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시 동성행각을 짐작하게 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냈다”고 했다. (중략)

○씨의 동성애 사실도 그대로 문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동성애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동성행각’,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명예훼손

사례. 8

의결번호	제2019-61호
매 체 명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18일
기사제목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1. 보도내용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제하의 사진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Leader' with the headline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Kim Hak-rae explains the relationship with Lee Seung-mi, 'What did I say 8 years ago..'). The article is dated 2019.01.18 12:31. Below the headline is a row of social media sharing icons. A photograph of Kim Hak-rae is shown below the article preview. He is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black shirt,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with a neutral expression.

사진=뉴스1

김학래가 8년 전 남긴 이성미에 대한 해명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성 개그맨이 남성 가수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혼인하지 않고 미혼모로 생활하였고 이와 관련 남성 가수가 해명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성 가수와 동명이인인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비록 동명이인에 대한 단순한 착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과 함께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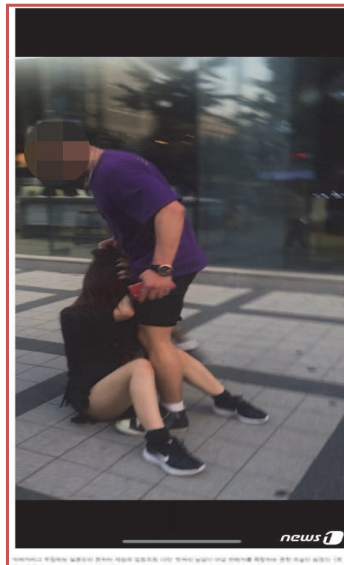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9

의결번호	제2019-1017호
매 체 명	동아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8월 24일 사회면
기사제목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1. 보도내용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피의자의 전신 모습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9-257호
매 체 명	인터넷 파주에서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28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주)○○○○ ○팀장 구속

1. 보도내용

「(주)○○○○ ○팀장 구속」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주시 출자기관인 ‘(주)○○○○’ ○○○○팀 ○ 모(○○)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는 작년 결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월 15일 파주경찰서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 나이, 소속 업체명,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9-797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7월 11일 사회면
기사제목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

1. 보도내용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의 제목

「아산 ○○○고, ○○세 당직 공무원 직위해제 (이하 생략)」의 부제목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길고양이를 때린 혐의로 고등학교 경비원이 직위해제 됐다.

11일 충남 아산의 ○○○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길고양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공무원 (경비업무) A씨(○○)를 지난 10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중략)

그중 직접 목격자 학생이 있었고 소문이 사실인 걸 알게 되자 고양이들을 도와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울었고, (중략) 경비해주시는 아저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중략)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학교 당국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소속 학교명,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9-258호
매 체 명	인터넷 총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18일 지역소식면
기사제목	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1. 보도내용

「한 집에 살던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전 ○○당 천안○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40)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동안 처제 B씨를 상대로 총 94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 중 5회는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강요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검찰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정당의 전(前)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 정당, 지역구, 직책,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관계인 성폭력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9-1051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8월 13일 REAL VIDEO면
기사제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1. 보도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 가해자의 범행과정을 영상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9-1174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23일 NEWS면
기사제목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1. 보도내용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소년법」 제62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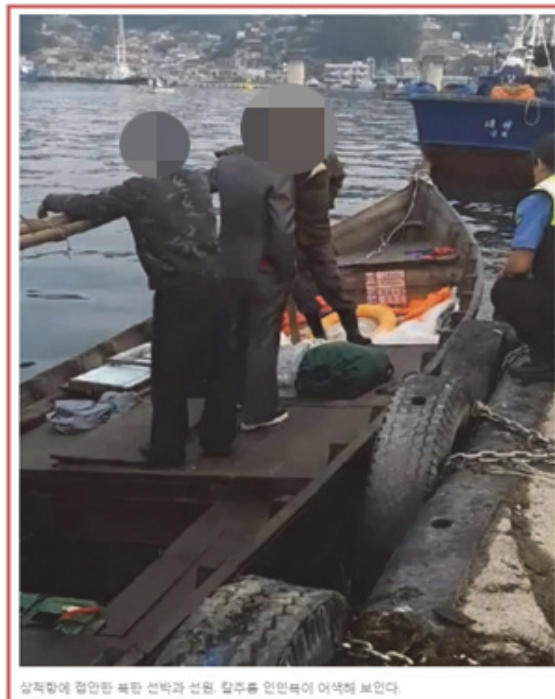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9-804호
매 체 명	인터넷 미래한국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7월 11일 국제·안보면
기사제목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1. 보도내용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목선 입항 경로와 목적 등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사회적 법익 침해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2
제2장 차별 금지 위반	44
제3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47
제4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48
제5장 성관련 보도	52
제6장 자살관련 보도	54
제7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56
제8장 폭력 묘사	61
제9장 충격·혐오감	63
제10장 여론조사 보도	67
제11장 기사형 광고	69
제12장 기사 제목	71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9-97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23일 Issue면
기사제목	과거 대구참사·세월호·천안함 사건 조롱했던 '유티브'

1. 보도내용

「과거 대구참사·세월호·천안함 사건 조롱했던 '유티브」 제하의 사진



「그는 '풍동'이라는 아이디로 수십 건의 게시물을 작성해왔는데요. 천안함 실종자를 보고는 “내가 천안함에서 실종됐는데 나 때문에 ‘개그콘서트’ 안 한다고 했으면 죄책감에 자살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타요전철’이라는 말과 함께 요리사 몸에 대구 지하철 참사 범인의 얼굴이 합성된 요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그는 지난 2014년 게시물에서 “유가족에게 ‘하나님이 xx이를 너무 예뻐해서 데려간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물)맛이 변한 거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 4월 당시 “현시각 연속으로 올리면 고소당하는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가수 백청강, 그리고 물만두 사진입니다. (중략)

모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유튜버의 과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가 작성한 ‘세월호 사건’ 피해자를 물만두에 비유하고 중국 조선족 출신의 가수 사진을 조선족 토막살인범에 빗대어 게재한 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해자의 초상을 요리사 사진과 합성한 글 등 조롱성 게시글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조롱성 게시글을 확산하여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차별 금지 위반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9-98호
매 체 명	중부뉴스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25일 일일보도면
기사제목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

1. 보도내용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의 제목

「- 남성들 성폭력 두려워 여성접근 고민... 출산저하로 이어져

- 일부여성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 성폭력 걸리면 합의금 뜯어내는데 혈안

- 체육계 여성 선수들 성폭력 관계없는 여성들까지 오해불러... 여성 남편들까지 고민?

(중략)

늘어가는 것이 이에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남성을 유혹하여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서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건 무마용으로 합의금이 높아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음성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A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금만 무려 3억원을 날린 적도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음성 유행은 만18세 미성년일수록 합의금은 높아 로또 사는 것보다는 남성들을 유혹 성폭력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남성과 알게 되면서 발생하는 H모 여성도 남성들 접촉 합의금 뜯어내는데 성공 취업은 부업이고 남성들 유혹 성폭력 합의금으로 혈안되고 있다.

또다른 미술학원에서 상습 성폭력사건 연루학생이 학원에 들어와서 학원장을 유혹 성폭력으로

고소하자 학원원장도 결백을 주장했지만 피해자측만 일방적으로 듣고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일부 직장들 사이에서는 남성들이 이러한 것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아예 여성과 접촉 자체를 리 두는가 하면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남성끼리, 여성끼리 회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도 성폭력 사건접수 전 해결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성폭력으로 수사 하여도 근거자료가 수사 레이다망에 없다면 마냥 성폭력으로 할개를 치고 있다.

사회 출발생에게 남녀 사랑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으며, 알아서 사귀게끔 만들어 놓다보니 여성이 남성과 첫 접촉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폭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다.

이래서 로또보다 더 좋은 수입은 성폭력으로 남성들을 유도하며 합의금 뜯어내는 신종 수법을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피해없는 선수나, 결혼한 선수여성 남성에게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중략)

저출산 저하 이래서 남성들이 여성 접근을 더 기피하고 있어 앞날 이어받는 미래 세대가 줄고 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의 접근을 기피해 출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는 일부의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9-154호
매 체 명	인터넷 경남매일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12일 핫뉴스면
기사제목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

1. 보도내용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의 제목 「(전략) 이에 대해 12일 정유미 소속사 측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나영석과 정유미의 불륜설을 최초 만든 이들이 모두 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5일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퍼트린 피의자 A 씨는 29살 여성 프리랜서 작가였다. 또한 A 씨의 메시지를 받아 가짜 뉴스 형식으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퍼트린 피의자 B 씨도 여성 회사원이었다. 방송가에 퍼진 소문들을 짜깁기해 동료작가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피의자 C 씨도 여성 방송 작가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유명 남성 프로듀서와 여성 배우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유포자가 모두 여성임을 부각하였다.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성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9-491호
매 체 명	e글로벌이코노믹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6일 사회면
기사제목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풀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 김포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

1. 보도내용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풀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 김포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제목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 살해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9-379호
매 체 명	뉴픽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20일 사회면
기사제목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덜미

1. 보도내용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덜미」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이씨는 ○분 간격으로 ○회씩 ○○○○을 귀에 대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서 ○시간가량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에서부터 시작해 ○○○○, ○○○○까지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으려면 56데시벨 이상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완전 면제를 받으려면 71데시벨 이상”이라고 이들의 치밀한 수법을 공개
했다.

병무청 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이 병역을 면제받고 나서 다시 청력이 돌아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
세히 묘사하고 청각 마비에 사용된 도구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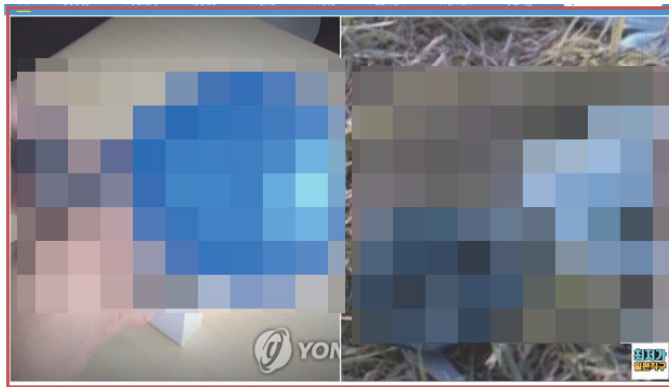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9-502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7일 ALL면
기사제목	강남 일대 '0000'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1. 보도내용

「강남 일대 '0000'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업자들, ○○용품 업체로 속여 ○○○○ 제조용으로 위장 구입」의 부제목

「(전략)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속여 ○○○○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약 25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8g짜리 ○○ 100개당 ○원을 받고 구매자의 집이나 호텔 등 약속된 장소로 배달했다. (중략)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베트남에 놀러 갔다 클럽에서 ○○○○를 ○○ 형태로 흡입하는 것을 보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지인들과 불법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환각물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체포했다고 보도하면서 환각물질의 명칭, 제조 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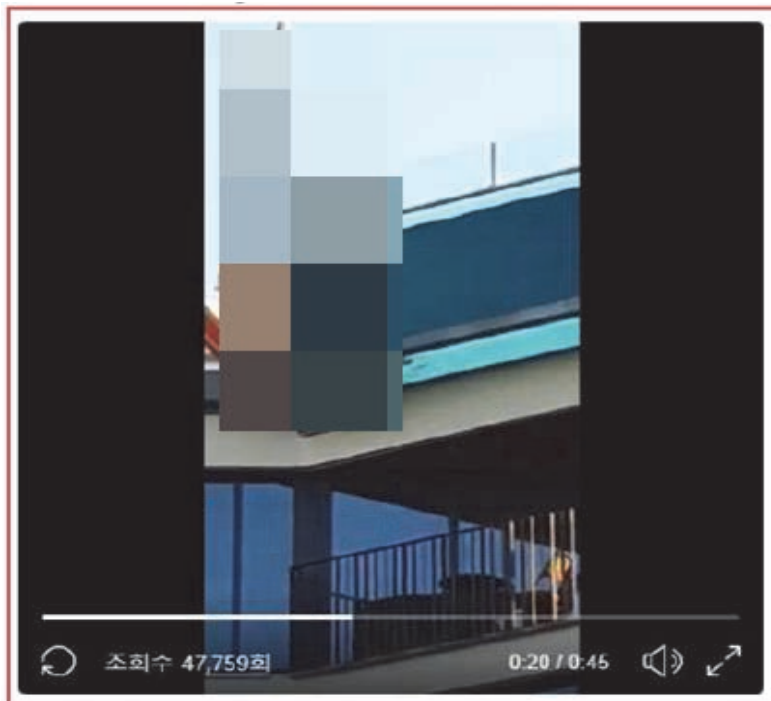
제5장 성관련 보도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9-1177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2일 월드컵
기사제목	대낮에 호텔 수영장에서 '성관계'하다 딱 걸린 커플 (영상)

1. 보도내용

「대낮에 호텔 수영장에서 '성관계'하다 딱 걸린 커플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수영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자살관련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9-700호
매 체 명	OM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일 정치·경제·사회면
기사제목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의 제목 「충남 ○○문화재단 신입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실종됐던 전 ○○시 사무관 A(○○)씨가 1일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지난달 1일 퇴직한 A씨는 ○○문화재단 직원채용 면접전형(사무국장)에 합격해 28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나이, 소속, 직책, 모 지역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9-516호
매 체 명	세계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현직 여경, 상관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

1. 보도내용

「[단독] 현직 여경, 상관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의 제목

「(전략) 경기 ○○○경찰서는 9일 ○○파출소 소속 ○모(○○·여) 경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경장은 8일 오전 5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동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현직 경찰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성, 성별, 나이,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제목에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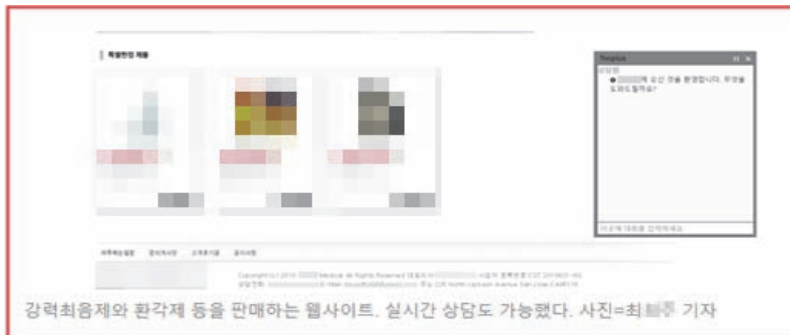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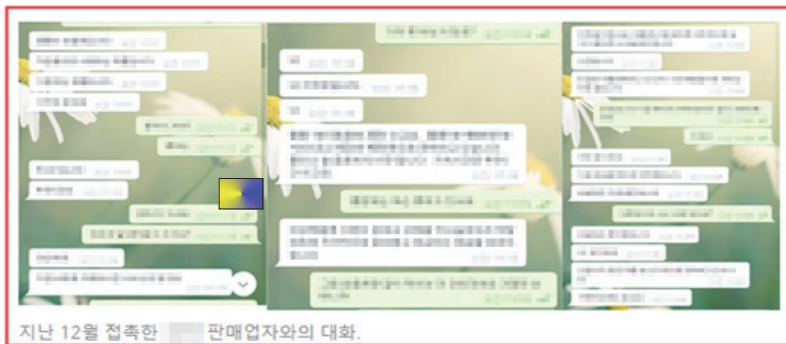
제7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9-163호
매체명	일요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1. 보도내용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추가함

「(전략) 최근 버닝썬 사태로 강간약물 ○○○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흔히 ‘물에 타 먹는 ○○○’이라는 뜻의 ‘○○’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라 하여 ‘○○○○’ 혹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부르기도 한다.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인 ○○○의 효과는 복용 10~20분 이내로 발생한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의식을 잃는다. 이런 상태는 ○시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색과 향이 없어 술이나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약 성분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판매업자는 ○○○를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절하게 만들어 기억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 넣으면 기절 시간이 더 기냐’고 묻자 “당연하다. 지금 세트로 구매하면 서비스도 많다”며 기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가격은 1병 당 ○ 원. 그는 ○ 원만 더 내면 흥분제 1병과 발기부전치료제인 아이코스 10정까지 주겠다고 패키지 구매를 권유했다.

흥분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성이 복용하면 기분이 업되고 성욕이 매우 높아져 악발에 취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기자가 접촉한 판매업자들 대부분은 “○○과 함께 쓸 수 있는 또 다른 마약을 구입하라”고 부추겼다. 앞서 접촉했던 SNS 판매업자 역시 “○○○만으로 부족하면 수면제를 쓰라”며 “원한다면 수면제나 ○○○ 등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은 환각의 강도가 ○○○나 ○○○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드러내놓고 마약류를 파는 웹사이트도 있다. 한 성기능개선제품 판매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의약품보조제를 판매하는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정 제품’ 코너에는 강력최음제와 환각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실시간 상담사는 강력 최음제를 추천했다. 효과에 대한 답은 3분 만에 도착했다. 그는 “○○분 정도 지나면 여성호르몬이 강력히 분비되면서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고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그만 자극이라도 주면 남자분이 하자는 대로 100% 따라오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품은 돼지흥분제로 알려진 ○○○보다 3배 더 강력하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술에 넣으면 작업률 100%”라고 자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중 제품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구매 과정은 허술했다. 그는 구매자에게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도 요구하지 않았다. 컴퓨터와 돈만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해당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등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6

의결번호	제2019-71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2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비아이 투여 의혹’ 일어난 마약 ‘○○○’를 복용한 여성이 그린 자화상 변화

1. 보도내용

「‘비아이 투여 의혹’ 일어난 마약 ‘○○○’를 복용한 여성이 그린 자화상 변화」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실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비아이는 A 씨에게 “○(○○○,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은 어떻게 하는 거임?” 등 마약과 관련해 수차례 물으며 ○○○를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략)

초강력 환각제 일종인 ○○○는 자그마치 ○○○의 1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 예술가 친구는 마약 일종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환각제 ○○○를 Omg 복용한 후 거울을 보며 총 9시간 동안 11장의 자화상을 그렸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사용량,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8장 폭력 묘사

사례. 27

의결번호	제2019-728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27일 국제면
기사제목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각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1. 보도내용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각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다가 여성을 일으켜 앉히고선 발로 강하게 머리와 배 등을 구타한다. 이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의 뒤로 가 치마를 벗기려다 잘되지 않자 옷을 찢는 모습도 보인다. 이내 남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끌고 간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해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문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9장 충격·혐오감

사례. 28

의결번호	제2019-39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8년 12월 24일 월드컵
기사제목	자신의 발 절단해 친구들과 인육 고기 해먹은 남성

1. 보도내용

「자신의 발 절단해 친구들과 인육 고기 해먹은 남성」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추가함

「자신의 잘린 발 인육을 자신의 친구들과 요리해 먹은 남성이 있습니다. (중략)

A씨는 이때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잘라낼 것이라면, 내가 먹는 건 어떨까?”라고요. (중략)

그는 자신의 다리 일부를 타코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1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육 타코 데이”를 제안했는데요. (중략)

타코의 재료가 된 인육은 밤새 양념된 뒤, 후추와 소금, 라임 소스로 볶아졌습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에서 한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절단한 자신의 다리를 요리해 먹은 내용과 요리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절단된 다리 사진, 상자에 담긴 절단된 다리를 모자이크한 사진, 이를 요리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9

의결번호	제2019-412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4월 20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1. 보도내용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자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투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10장 여론조사 보도

사례. 30

의결번호	제2019-1191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6일 대학입시면
기사제목	정시 놓고 또 쪼개진 교육계

1. 보도내용

「(전략) 각종 조사에서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다. 이날 공개된 대입 제도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63.2%)이 ‘수시가 바람직하다’(22.5%)는 응답의 3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한 입시 전문 교육기업이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 3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4%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라고 응답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11장 기사형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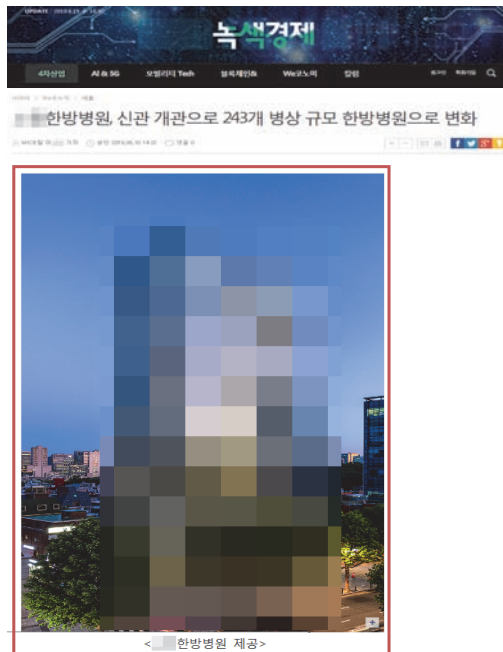
사례. 31

의결번호	제2019-747호
매 체 명	녹색경제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0일 We코노미면
기사제목	○○한방병원, 신관 개관으로 243개 병상 규모 한방병원으로 변화

1. 보도내용

「이○○ 기자」

「○○한방병원, 신관 개관으로 243개 병상 규모 한방병원으로 변화」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한방과 양방 협진을 통해 1명의 환자에게 6명의 전문의료진이 배정되는 1:6 팀닥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병원(병원장 ○○)이 6월 10일 ○○○○역 본관 인근에 143개 병상 규모의 신관을 개관해 총 243개 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으로 변화한다.

신관은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로서 1층에는 환자와 가족, 내원객들을 위한 라운지와 카페, 도서관이 위치하며, 2층은 FDA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SD-2000 고주파 기기를 포함, 총 8대의 고주파 치료장비가 갖춰진 고주파온열암치료센터가 운영된다. (중략)

병원 관계자는 “신관 개관은 최적의 치료공간 조성을 목표로 환자 중심의 편의시설과 설계를 적용했다. 면역력이 떨어져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 각 층마다 독일 공기청정기 ‘나노드론’ 및 지르벤 에어컨트롤워셔를 설치해 초미세입자까지 정화 가능한 실내정화시스템을 운영한다. 내부 마감재는 천연 자재로 만들어져 안전성을 높였고, 환자복 또한 천연섬유로 오랜 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은 헝가리 구스로 맞춤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12장 기사 제목

사례. 32

의결번호	제2019-1243호
매 체 명	헤럴드POP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0월 18일 화제면
기사제목	유승준 부친 총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

1. 보도내용

「유승준 부친 총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의 제목

「(전략) 유승준의 아버지 유○○ 씨는 “나는 아들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런 아들의 시민권 취득은 내가 권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중략)

또 그는 “내가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어떨겠나. 그게 17년이다. 애가 무슨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며 오열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수 유승준 부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편집하여 유승준의 부친이 마치 유승준이 강간범으로 비취질 수 있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왜곡

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시정권고 전체 목록

제2019-1호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대상 보도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2월 3일자 라이프면 「‘트러블메이커’ 손태영, 과거 혼전임신 아니라며 눈물…MMA 연예인 특혜 논란부터 삼각관계 스캔들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 자녀의 시상식 자리 제공 특혜 의혹을 보도하면서 과거의 삼각관계 스캔들, 혼전임신 사실 등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부각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 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8년 12월 19일자 문화/연예면 「이용대 인스타그램 속 변수미 사진 전부 삭제…파경설에 의미심장한 행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파경설 등 사생활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호	내외뉴스통신	2018년 12월 19일	오늘의 핫뉴스	변수미, 쇼윈도 SNS 활동? 별거 중 사진이..	뉴스통신
제2019-4호	디스패치뉴스	2018년 12월 19일	All	이용대X변수미, 결혼 10개월만에 이혼	인터넷신문
제2019-5호	인터넷 경인일보	2018년 12월 19일	연예	변수미 최근 SNS 근황 보니...“애기랑 아빠랑” 이용대와 딸 예빈이 봉어빵 부녀 투샷 게재	인터넷신문
제2019-6호	인터넷 매일신문	2018년 12월 19일	사회	이용대와 파경설 변수미 인스타 보니...‘이용대와 럽스타그램’ 10월 말에 최근?	인터넷신문
제2019-7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2018년 12월 19일	키워드	이용대 변수미 이혼, 별거 이후로도 달달했다? “용대 연봉 따라가는 그날까지 힘내자”	인터넷신문
제2019-8호	티비리포트	2018년 12월 19일	엔터	“쇼윈도 부부였냐”이용대·변수미, 결혼 2년만 합의 이혼→별거 1년 ○○대충격	인터넷신문
제2019-9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8년 12월 19일	문화·스포츠	변수미, 최근까지도 ‘이용대 셀카’ 게재..갑자기 ‘파경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9-10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2018년 12월 19일	문화	변수미, 최근까지도 ‘애기랑 아빠랑’ 셀카 게재..갑자기 합의 이혼?	인터넷신문
제2019-11호	톱스타뉴스	2018년 12월 19일	셀럽	이용대 아내 변수미, 결혼 1년만에 이혼 위기...인스타 속 그대로 남아있는 ‘딸과 아빠 사진’	인터넷신문
제2019-12호	스포탈코리아	2018년 12월 19일	나비뉴스	“별거 1년째”..이용대·변수미, SNS에서만 화목했던 가족(종합)[Oh!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13호	오에스이엔	2018년 12월 19일	연예	“별거 1년째”..이용대·변수미, SNS에서만 화목했던 가족(종합)[Oh!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14호	조선닷컴	2018년 12월 19일	스포츠	“별거 1년째”..이용대·변수미, SNS에서만 화목했던 가족(종합)[Oh!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15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2018년 12월 20일	연예스포츠	변수미, 이용대와 의아한 별거 시점 ‘SNS서는 화목했는데’...‘냄비반침’ 이후부터?	인터넷신문

제2019-16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18년 12월 4일자 사회일반면 「깨끗한 방, 평온한 모습... 얼굴만 검게 변색된 여성의 시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관악 10대 모텔 살인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살인에 사용된 동물마취제 클로로포름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득 용이성, 클로로포름을 문힌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7호	한국일보	2018년 12월 4일	12	깨끗한 방, 평온한 모습... 얼굴만 검게 변색된 여성의 시신	중앙일간지

제2019-18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9년 1월 3일자 사회면 「[속보]잠적한 신재민 “마지막 글입니다” 유서 게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를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하면서 게시글 전문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글은 전(前) 사무관의 주장, 심경, 자살 시도 경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전 사무관이 시사적 사건을 통해 스스로 관심을 야기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라 할지라도 자살을 시도한 자세한 경위 및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9호	뉴스웍스	1월 3일	정치·사회	신재민 前사무관 추정 인물이 고파스에 올린 유서 내용은?... “정신이 피폐해졌다”	뉴스통신
제2019-20호	동아닷컴	1월 3일	사회	[전문] 신재민 추정 인물, 고파스에 유서 올려...“이제 진짜 갈게요”	인터넷신문
제2019-21호	부산닷컴	1월 3일	사회	[전문] 신재민 추정 인물, 고대 커뮤니티에 “마지막 글입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22호	서울와이어	1월 3일	핫이슈	신재민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 유서 남기고 잠적	인터넷신문
제2019-23호	시사플러스	1월 3일	헤드라인뉴스	【유서 전문】‘잠적’ 신재민, ○○동 모텔서 발견...“건강상태 양호”	인터넷신문
제2019-24호	온라인 에포크타임스	1월 3일	시사	“이제 정말 갈게요” 잠적했던 신재민 ‘무사히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25호	위키트리	1월 3일	사회	극단적 선택 암시한 후 신재민이 모교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유서	인터넷신문
제2019-26호	인터넷 국제신문	1월 3일	사회	신재민, 모교 커뮤니티에 올린글 보니... “내가 죽으면 믿어주겠죠?”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27호	인터넷 금강일보	1월 3일	사회	신재민, 살아있다...어디서 발견됐나?	인터넷신문
제2019-28호	인터넷 천지일보	1월 3일	사회	신재민, 유서 남기고 잠적... 인터넷에도 유서 올려	인터넷신문
제2019-29호	인터넷 투데이코리아	1월 3일	사회	신재민 유서 전문(全文) “정말 재수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30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월 3일	사회	신재민 유서 공개 “죽으면 제 말 믿어주겠죠”	인터넷신문
제2019-31호	한국금융	1월 3일	정치·사회	고파스에 유서 올린 신재민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제가 죽으면 믿어주겠죠”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32호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대상보도	디트news24 2018년 12월 18일자 TV/연예면 「샤이니 故 종현 1주기, 편의점 2차례 찾아 담배 구입한 CCTV 동영상 “객실 연기 자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를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사망 1주기를 보도하면서 갈탄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3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2월 24일자 핫이슈면 「중국서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벌어진 자녀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사진 및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4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12월 3일자 Issue면 「“상품가치 없다”는 이유로 돼지들 쇠망치로 때려 죽이는 축산업자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축산업자가 망치로 돼지를 때려 죽이는 내용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5호	뉴스1코리아	2018년 12월 3일	문화	돼지 둔기로 내리쳐 죽인 농장·동물단체 검찰 고발	뉴스통신
제2019-36호	그린포스트 코리아	2018년 12월 3일	시사	[영상] 어린 돼지 둔기로 때려 죽이고 일부 생매장 의혹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37호	인터넷 한겨레	2018년 12월 3일	사회	'도나도나 사건' 후유증으로 새끼 돼지 수난	인터넷신문

제2019-3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8년 12월 7일자 이수면 「길 가던 남성 차 뺨뺨 달리는 도로에 확 밀쳐 죽이려 한 노숙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숙자가 행인을 차도로 밀어 중상을 입은 사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CCTV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8년 12월 24일자 World면 「자신의 발 절단해 친구들과 인육 고기 해먹은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국에서 한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절단한 자신의 다리를 요리해 먹은 내용과 요리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절단된 다리 사진, 상자에 담긴 절단된 다리를 모아 이크한 사진, 이를 요리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0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 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12월 8일자 시사면 「○○○○치과병원, ○○역으로 확장 이전... 경기북부 최대 치과병원 '우뚝'」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1호	인터넷 주간 고양신문	2018년 12월 13일	뉴스	“고양시민의 백세건강, ○○○○가 함께 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42호	디트news24	2018년 12월 13일	디트메디	알레르기에 특화된 어린이병원 ○○○○병원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43호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12월 14일	기업	어린이 알레르기 특화 ○○○○병원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44호	스포츠한국	2018년 12월 3일	라이프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확대하고 ○○○○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45호	스포츠한국	2018년 12월 4일	라이프	○○○○한의원, ○○○○역 ○○○○으로 확장이전... 환자 접근성 강화	인터넷신문
제2019-46호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2018년 12월 13일	키즈산업	○○○○, ○○○○역과 연결된 위치에 '○○○클리닉'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47호	정신의학신문	2018년 11월 21일	라이프	겨울방학, 수험생 치아교정을 고민한다면?	인터넷신문
제2019-48호	쿠키뉴스	2018년 12월 21일	사회	강남 ○○○에 암 특화 요양병원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9호	파이낸스 투데이	2018년 12월 19일	뉴스 일반	네트워크 피부과 '○○○클리닉 ○○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0호	파이낸스 투데이	2018년 12월 27일	뉴스 일반	'여성질환 특화' ○○○○ 여성한의원, 1월 2일 부산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51호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018년 12월 27일자 엔터면 「김동성, 부인 오○○ 씨와 14년 만에 이혼...장시호 동거설 재관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등 사생활을 보도하면서 일반인 전 아내의 초상, 실명, 결혼연도를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2호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12월 29일	-	김동성-오○○ 부부 과거 인터뷰 재조명, 아내 오○○ 누구? 서울대 음대 졸업	인터넷신문
제2019-53호	아시아뉴스 통신	2018년 12월 27일	연예·문화	김동성 서울대 음대 출신 아내 오○○과 이혼, '자기야' 프로그램의 저주?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의 불륜은?	뉴스통신
제2019-54호	리서치페이퍼	2018년 12월 27일	Life	김동성 이혼, '자기야'의 저주인가.. 서울대 음대 출신 아내에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의 불륜까지 등장	인터넷신문
제2019-55호	메디컬리포트	2018년 12월 27일	Health & Life	김동성 이혼 소식에 '자기야'의 저주 걸렸다..서울대 음대 출신 아내+최순실 조카 장시호와의 불륜 화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6호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2월 27일	-	김동성 서울대 음대 출신 아내와 이혼 보도에 '자기야'의 저주 '소름'..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의 불륜 해결 못했나..	인터넷신문
제2019-57호	푸른한국닷컴	2018년 12월 29일	통일	김동성 이혼, 동거설 상대 장시호 출소 시점과 맞물려 관심 끌어	인터넷신문

제2019-58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1월 6일자 경제면 「이건희, 올해 나이는? 사망설 왜 나왔나 보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입원 치료 중인 유명 대기업 회장의 과거 병상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였다. 비록 과거 사진이고, 그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외부 접근이 차단된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9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1월 22일자 연예·문화면 「“거짓말쟁이 극혐” ‘바스코 전여친 VS 박환희’ 어떤 사건이길래?...바스코 박환희 나이 차이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 나이를 공개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p>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60호	주식회사 트랜스파이나이트
대상보도	메디컬리포트 2019년 1월 30일자 헬스 & 라이프면 「김나영, 남편과의 결혼에 “지금까지 봤던 모습 아니었다”..김구라의 독설 재조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61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2019년 1월 18일자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뒤편고 남겼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여성 개그맨이 남성 가수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혼인하지 않고 미혼모로 생활하였고 이와 관련 남성 가수가 해명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성 가수와 동명이인인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비록 동명이인에 대한 단순한 착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과 함께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62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9년 1월 14일자 뉴스면 「신유용 유도선수 폭로글 보니…코치가 성폭행 후 “임신테스트기 해보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3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상보도	채널A 2019년 1월 14일자 사회 「신유용 “17세부터 성폭행”…돈으로 입막음 시도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SNS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신원을 부각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4호	연합뉴스	1월 14일	영상	[영상] 체육계 확산하는 미투...전 유도선수 신유용 "코치가 성폭행"	뉴스통신
제2019-65호	놀라운뉴스	1월 14일	SOCIETY	[영상] 신유용 고1때부터 성폭행 폭로 20차례 성폭행, "룸살롱" 말고 "여선수" 찾아 주장(영상, 기사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66호	뉴스인사이드	1월 15일	스포츠	신유용, 코치 성폭행 폭로 "성적 안 나오자 임신 테스트와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아"	인터넷신문
제2019-67호	뉴스투데이	1월 14일	종합	'유도계에도 미투' 신유용, "고1 때부터 코치에게 20차례 성폭행 당해"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9-68호	동아닷컴	1월 14일	-	신유용 "고1 때 부터 코치에 성폭행→돈으로 입막음"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9-69호	베리타스	1월 14일	뉴스	신유용 성폭행 폭로 사건과 모 신학대 사교수 사건	인터넷신문
제2019-70호	스포츠한국	1월 14일	스포츠	신유용, "고1부터 유도 코치로부터 성폭행"...어떤 선수가길래?	인터넷신문
제2019-71호	싱글리스트	1월 14일	#미투	'성폭행 피해' 신유용 "유도코치, 사과 대신 50만원으로 화유...고소 결심"	인터넷신문
제2019-72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14일	최신뉴스	신유용 "고1 때 부터 코치에 성폭행→돈으로 입막음"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9-73호	인터넷 아주경제	1월 14일	AJUTV	[영상] 심석희 이어 신유용, 20차례 성폭행 피해 고발 #아주모닝	인터넷신문
제2019-74호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1월 14일	사회	군산검찰 "신유용 씨 성폭행 철저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9-75호	인터넷 중도일보	1월 14일	방송/연예	신유용, 충격고백 "매트리스로 올라 오라고 한 뒤 성폭행을했다" 누리꾼들 경악...	인터넷신문
제2019-76호	조세일보	1월 14일	사회	前유도선수 신유용 "고1때부터 5년간 코치가 20차례 성폭행"	인터넷신문
제2019-77호	푸른한국닷컴	1월 14일	통일	신유용, "유도부 코치로부터 고교 1학년때 부터 20여차례 성폭행 당해"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9-78호	주식회사 기호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기호일보 2019년 1월 14일자 핫이슈면 「신유용, ‘좋아서 붙어먹고’ 올림픽 응원하는 마음까지 ‘뿔났다’... 일본은 ‘육상계 패닉’으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이를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9호	인터넷 충청매일	1월 14일	라이프	신유용, ‘좋아서 붙어먹고’ 올림픽 보는 마음까지 ‘뿔난 상태’ 일본은 ‘육상계 패닉 중	인터넷신문
제2019-80호	인터넷 서울경제	1월 14일	문화·스포츠	‘체육계 미투’ 신유용 한두 명 아니다? “코치가 귀에 혀 집어 넣어” “룸사롱 대신 여자 선수랑”	인터넷신문
제2019-81호	인터넷 일요시사	1월 14일	오늘의 이슈	신유용 유도선수 성폭행 코치17세 여자제자에게 “생리하냐?”	인터넷신문
제2019-82호	인터넷 축산신문	1월 14일	사회/일반	신유용, 추악하고 끔찍하고 손잡이조차 없었던 성폭행 악몽만... “환멸스러운 고교시절”	인터넷신문

제2019-83호	주식회사 인천일보
대상보도	인천일보 2019년 1월 25일자 19면 「“열달간 생리 안하게 해줄까” ... 이번엔 사립여고 스킨미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가해자의 성적 발언 등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p> <p>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8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4호	인터넷 인천일보	1월 25일	사회	“열달간 생리 안하게 해줄까” ... 이번엔 사립여고 스쿨미투	인터넷신문
제2019-85호	뉴스1코리아	1월 24일	인천	‘생리 열달간 안하게 해줄까?’...인천 사립여고생 ‘스쿨미투’	뉴스통신
제2019-86호	인터넷 세계일보	1월 26일	사회	“열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선생님은 늑대였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87호	여원뉴스	1월 28일	못참겠다	짐승스승이 여제자에게 “10개월 생리 안하게 해줄까?”	인터넷신문
제2019-88호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4일	사회	“열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인천서 또 ‘스쿨미투’	인터넷신문
제2019-89호	인사이트	1월 25일	정치·사회	“생리 열 달간 안하게 해줄까?” 생리통 호소하는 여고생에게 교사가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19-90호	인천뉴스	1월 24일	교육	‘생리통 심해? 열 달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인천 모 여고 스쿨미투 ‘일파만파’	인터넷신문
제2019-91호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8일	사회	여고생에 “생리 안하게 해줄까”...인천 ‘스쿨미투’ 조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92호	인터넷 문화일보	1월 24일	사회	“열 달간 생리 안 하게 해줄까” 여고생 충격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9-93호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4일	인천	인천 한 사립여고서 ‘스쿨 미투’ 폭로 “교복은 아한 옷”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 줄까”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9-94호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4일	지역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인천 여고서 또 스쿨미투	인터넷신문

제2019-95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9년 1월 23일자 사회면 「'농구코치 성추행' 누구? 프로농구 구단 은퇴 "목덜미 당기며 성기 대박" VS "기억나지 않는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체육계 '미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폭로한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6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9년 1월 10일자 문화·스포츠면 「키디비, 과거 발언 재조명 "드넓은 바다 닳고 싶어라"..'블랙넷 저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여성 래퍼가 남성 래퍼를 성적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여성 래퍼가 개인 SNS에 올린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함께 게재,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7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1월 23일자 Issue면 「과거 대구참사·세월호·천안함 사건 조롱했던 ‘유투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유투버의 과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투버가 작성한 ‘세월호 사건’ 피해자를 물만두에 비유하고 중국 조선족 출신의 가수 사진을 조선족 토막살인범에 빗대어 게재한 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해자의 초상을 요리사 사진과 합성한 글 등 조롱성 게시글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조롱성 게시글을 확산하여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8호	중부뉴스닷컴
대상보도	중부뉴스닷컴 2019년 1월 25일자 일일보도면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제10조(보도 윤리)
권고사항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의 접근을 기피해 출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는 일부의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9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2019년 1월 30일자 사회면 「“시체부킹이나 ○○ 있어요?”…술에 뽕 타는 남자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구입 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0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월간 조선 1월호 204~217면 「악마의 백색가루’ 필로폰 밀거래 ‘삼각 커넥션’의 세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월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 가격,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1호	조선pub	1월 4일	뉴스&이슈	국내 최대 '마약 사건'은 어떻게 적발됐나	인터넷신문

제2019-102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월 25일자 핫이슈면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배고프다”며 침입해 밥 얻어먹고 돈 빼앗아 달아난 남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3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월 14일자 핫이슈면 「어제 자 시민들 공포에 떨게 한 ‘암사역 흥기 난동 사건’ 현장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암사역에서 벌어진 흥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 간 폭력 장면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4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도	국제뉴스 2019년 1월 9일자 국제면 「습격받은 독일 극우 정당 의원, 이마에 피 철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부상을 입은 특정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105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월 28일자 핫이슈면 「“쇼핑몰에 함께 갔던 우리 딸이 3층에서 떠밀려 추락했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아이를 쇼핑몰 3층에서 떨어트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월 22일자 핫이슈면 「홍콩 놀러갔다가 고층빌딩서 떨어진 ‘유리창’ 맞고 즉사한 여성 관광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층빌딩에서 떨어진 유리창을 맞고 사망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모습, 피가 묻은 거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7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월 18일자 핫이슈면 「남친에게 뒷통수 맞고 ‘한’ 품은 여성들이 저지른 엽기적인 복수법 5」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여성이 자전거를 탄 남성을 자동차로 치는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8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1월 3일자 사회면 「아기도 한남? 워마드, 남아 살해 예고 글 충격 …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아기로 추정되는 대상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9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대상보도	노컷뉴스 2019년 1월 30일자 정치면 「‘컨벤션 효과’ 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불안한 시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정당 지지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0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0호	동아닷컴	1월 30일	정치	황교안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 좌우”	인터넷신문
제2019-111호	미디어스	1월 29일	미디어뉴스	‘박근혜 정부 2인자’ 황교안 등장, 민주당 ‘호재’ 될 듯	인터넷신문
제2019-112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1월 29일	정치	황교안 보수 진영서 ‘독주’ 선호도 31.9%	인터넷신문
제2019-113호	인터넷 서울경제	1월 29일	정치	황교안 대선주자 선호도 첫 1위에	인터넷신문

제2019-114호	주식회사 경인매일
대상보도	경인매일 2019년 1월 28일자 12면 「경기남부 거점의료기관 ○○○○ 신관 착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1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5호	인터넷 경인매일	1월 28일	지방	경기남부 거점의료기관 ○○병원 신관 착공	인터넷신문
제2019-116호	인터넷 내일신문	1월 16일	지방자치	김포 ○○○병원 개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인터넷신문
제2019-117호	지역내일	1월 17일	건강·의료	김포 ○○○병원 개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인터넷신문
제2019-118호	인터넷 광남일보	1월 8일	사회	광주 '○○병원' 개원·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119호	인터넷 김해뉴스	1월 15일	건강	'○○○○병원' 김해·부산 잇는 거점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인터넷신문
제2019-120호	인터넷 의학신문	1월 22일	의원·병원	광주 ○○병원, 2월초 신축 이전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121호	일요서울	1월 3일	라이프/문화	구로동 ○○○ 정신과, 여성 우울증 전문 클리닉	인터넷신문

제2019-122호	주식회사 더팩트
대상보도	더팩트 2019년 2월 2일자 연예면 「김나영 이혼 후 근황 공개, 두 아들과 밝은 미소 '눈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3호	마이데일리	2월 2일	연예	김나영, 이혼 발표 후→자와 다정한 근황 공개...해맑은 미소	인터넷신문
제2019-124호	매경닷컴	2월 2일	인기포토N	'이혼고백' 김나영, 두 아이와 여유로운 일상 공개...누리꾼 "고생 많았다" 응원↑	인터넷신문
제2019-125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2일	연예	'남편구속→이혼발표' 김나영, 아들과 함께 하는 행복 일상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126호	스포츠조선닷컴	2월 2일	엔터테인먼트	김나영, 두 아들과 행복한 미소 근황... '홀로서기' 응원 봇물	인터넷신문
제2019-127호	엑스포츠뉴스	2월 2일	국내연예	김나영, 두 아들과 행복한 근황...응원 물결[ing[엑's 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128호	엠케이스포츠	2월 2일	연예	'이혼 발표' 김나영, 두 아이와 행복한 모습 [똑똑SNS]	인터넷신문
제2019-129호	오에스이엔	2월 2일	연예	김나영, 두 아들과 털어낸 '남편구속+이혼' 마음고생..밝은 근황 '응원(종합)[Oh!쎬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130호	위키트리	2월 1일	엔터	아들 최○○ 군 SNS도 재개한 김나영...응원 쏟아져	인터넷신문
제2019-131호	인사이트	2월 5일	엔터테인먼트	방송 모두 하차한 상태에서 '두 아들' 책임지기 위해 일 시작한 김나영	인터넷신문
제2019-132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월 2일	스타	[SNS는 지금] 김나영, 이혼 발표 두 아들과 행복한 미소... "쭉 웃는 날만 있길" 응원 쏟아져	인터넷신문
제2019-133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월 2일	연예	[종합] 김나영 이혼발표→♥두 아들과 행복한 근황→활동 시동	인터넷신문
제2019-134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2월 2일	연예	'이혼 발표' 김나영, 두 아들과 함께 근황 공개...네티즌 응원 '봇물'	인터넷신문
제2019-135호	인터넷 팜타임스	1월 30일	라이프	김나영 결혼에 김구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남편과의 이혼 선견지명? 직업, 구속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9-136호	텐아시아	2월 2일	핫이슈	김나영, 두 아들과 다정한 일상 공개...환한 미소에 '응원 봇물'	인터넷신문
제2019-137호	투스타뉴스	2월 6일	엔터	김나영, 어여쁜 두 아들과 함께 환한 미소... 누리꾼들 "응원해요"	인터넷신문
제2019-138호	티브이데일리	2월 2일	포토	'이혼 발표' 김나영, 두 아들과 홀로서기 근황 공개 [TD#]	인터넷신문
제2019-139호	헤럴드POP	2월 2일	방송	[팝업★]김나영, 이혼 발표→두 아들과 행복 근황..쏟아지는 응원물결	인터넷신문

제2019-140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2월 22일자 사회면 「'매맞는 남편'? 조현아 남편 박○○ 직업+집안 보니 '스카이캐슬' 실사판.. '땅콩회항' 후 별거부터 폭행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7조(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전 부사장이 이혼 및 양육자 청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 배우자의 초상, 성명, 출신학교, 직업 등 이력과 가족의 이력 등 신원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본인과 부친, 형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4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41호	e글로벌 이코노믹	2월 20일	-	[인물] 조현아 남편 박○○ 누구? 아내폭행 vs 알코올 치료 진실공방 ...○○○ 성형외과 원장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	인터넷신문

제2019-142호		주식회사 디지털미디어랩
대상보도	인터넷 팸타임스 2019년 2월 24일자 라이프면 「조현아 남편 박○○,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도 조현아와 ‘결혼’.. 혹시 ‘병원’ 때문? 직업 뒤통이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전 부사장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의 초상, 성명, 출신학교, 직업 등 이력과 가족의 이력 등 신원을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 본인과 부친, 형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43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9년 2월 1일자 사회면 「산부인과 의사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밑에다 손가락 집어 넣으며 보습 효과 있다” 성추행 폭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산부인과 진료 중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제목 및 내용을 통해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4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44호	인사이트	2월 16일	핫이슈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 중 '몰카' 찍힌 여성 "맨손 넣어 절도 발랐다"	인터넷신문
제2019-145호	조세일보	2월 1일	뉴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주요 부위 도찰... "마사지해 주겠다며 제 밑에 손가락 넣어" 성추행도	인터넷신문

제2019-146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2월 21일자 정치면 「김지은, 슬립만 입고 안희정 방에서.. "부듯하고 즐거웠다" 안희정 부인 민주당 '재폭 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지인과 나눈 사적대화내용을 기사제목으로 쓰면 서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유	이는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4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47호	메디컬리포트	2월 21일	헬스&라이프	안희정에게 성폭력 당했다더니.. 김지은, "릴렉스 시켜드려 부듯하다" 다른 뜻 있었나	인터넷신문
제2019-148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21일	사회	"오빠 없으면 난 약(弱)지은" 민주당이 공개한 안희정·김지은 문자 어땠길래	인터넷신문
제2019-149호	뉴스투데이	2월 21일	일자리플러스	"몰라, 나 사랑받고 싶어".. 안희정 부인 민주당이 밝힌 문자메시지 보니	인터넷신문
제2019-150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2월 22일	사회/정책	민주당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대화보니 "연인맞네"	인터넷신문

제2019-151호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녹색경제신문 2019년 2월 1일자 대중문화면 「폭행 무혐의에도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가 들은 말?…‘김여사가 그렇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배우가 앞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고 보도하면서, 상대 여성 운전자를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을 뜻하는 ‘김여사’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재하고 이를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표현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5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52호	뉴스랩	1월 31일	스포츠 연예	최민수 보복운전 상대방은 김여사?…무혐의에도 컨테이너 칩거했던 최민수에게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19-153호	파이낸스 투데이	1월 31일	이슈	무혐의에도 컨테이너 칩거했던 최민수가 들은 말…보복운전 상대방은 김여사?	인터넷신문

제2019-154호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남매일 2019년 2월 12일자 핫뉴스면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유명 남성 프로듀서와 여성 배우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유포자가 모두 여성임을 부각하였다.	

	<p>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성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55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9년 2월 13일자 생활면 「신종마약 흡입한 20대 남녀, 약에 취해 자진신고…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20대 남녀가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경찰에 자수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환각물질의 명칭, 제조 방법, 구입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p> <p>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5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56호	동아일보	2월 9일	종합 04	식품첨가물 가면 쓴 'OOOO' 가스, 인터넷서 무분별 유통	중앙일간지
제2019-157호	동아닷컴	2월 9일	사회	식품첨가물 가면 쓴 'OOOO' 가스, 인터넷서 무분별 유통	인터넷신문
제2019-158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13일	사회	"환각상태서 자진 신고?" 20대 남녀 현행법으로 체포	인터넷신문
제2019-159호	뉴스1코리아	2월 14일	사회	OOOO 흡입하고 이웃여성 집 침입 30대 집행유예	뉴스통신
제2019-160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월 14일	사회	22일간 OOOO 수백개 흡입 30대... "출동 경찰관 폭행도"	인터넷신문
제2019-161호	MBC-TV	3월 5일	뉴스데스크	누구나 살 수 있는 '마약 아닌 마약'... "단속 인해"	방송

제2019-162호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19년 3월 5일자 사회면 「10분 안에 산다, 경찰 단속 비웃는 각종 환각물질 인터넷에서 버젓이 유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환각물질 및 마약의 별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해당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등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6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63호	일요신문	2월 8일	사회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인터넷신문
제2019-164호	동아일보	2월 21일	12	클럽 마약수사 한창인데... 클릭 한번에 “○○ 당일배송”	중앙일간지
제2019-165호	동아닷컴	2월 21일	사회	클럽 마약수사 한창인데... 클릭 한번에 “○○ 당일배송”	인터넷신문
제2019-166호	광주일보	2월 19일	23	[無等鼓] ‘○○’	지역일간지
제2019-167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31일	시사	술에 붕 타 성폭행하는 남자들...공공연한 ‘강간 문화’	인터넷신문
제2019-168호	인터넷 서울신문	2월 2일	사회	‘○○’ 구매 알아보니...10분 만에 “설날 특가 판매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169호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0일	사회	버닝썬 논란 키운 ○○... “입금 2시간뒤 배달” 쉽게 구매	인터넷신문
제2019-17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월 31일	사회	버닝썬 논란에도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여성들, 클럽 약물 성범죄에 불났다	인터넷신문
제2019-171호	조선닷컴	2월 4일	사회	“女 술에 타 10분이면 약물”...버닝썬 논란에도 ‘○○’ 판매 버젓	인터넷신문

제2019-172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주간동아 1176호 16~19면 「'다크웹'으로 유인, '던지기'로 판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7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73호	인터넷 주간동아	2월 18일	사회	'다크웹'으로 유인, '던지기'로 판매	인터넷신문

제2019-174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나우뉴스 2019년 2월 14일자 국제면 「선 채로 잠들고 이상행동... '좀비 마약'에 빠진 영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7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75호	인터넷 국민일보	2월 16일	시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좀비 마약에 빠진 영국(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17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2월 5일자 핫이슈면 「강도가 흥기 휘두르자 옆에 있던 동료 붙잡아 '인간 방패'로 이용한 편의점 알바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상해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필요 이상으로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77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2월 25일자 핫이슈면 「“손님이 홀로 식당 운영하는 우리 엄마 얼굴을 갑자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78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2019년 2월 13일자 국제면 「친구 집 놀러 갔다 '맹견'에 공격당한 남성(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지인의 주택을 방문하여 맹견에게 물렸다고 보도하면서 부상 입은 다리를 그대로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79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2월 11일자 핫이슈면 「분양받은 '생후 3개월' 아기 말티즈 번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번을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0호		주식회사 굿모닝총청
대상보도	인터넷 굿모닝총청 2019년 2월 12일자 천안아산당진면 「[동영상] 천안 원룸서 개 10여 마리 '떼죽음'...경찰 수사 나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개 1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 현장을 보도하면서 개의 사체를 그대로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181호	유한회사 제주의 소리
대상보도	제주의 소리 2019년 2월 20일자 사회면 「제주서 또 동물학대 의혹 ‘차량에 개 끌려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달리는 모습을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2호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9년 2월 1일자 정치면 「文대통령-한국당 지지율 동반상승… 김경수 사태에 진보-보수 결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조사의뢰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83호	파이낸셜뉴스	2월 2일	05(정치)	文대통령-한국당 지지율 동반상승… 김경수 사태에 진보-보수 결집	중앙일간지

제2019-184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서울경제 2019년 2월 9일자 02(정치)면 「지지율 8%p 최소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정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85호	프라이مج체	2월 20일	정치	자유한국당 5.18 폼페이발언 'TK도 등 돌렸다'	인터넷신문
제2019-186호	e머니투데이	2월 11일	정치	[300소정]치고 받는 '거대 양당', 지지율 왜 오르나	인터넷신문

제2019-187호		주식회사 강원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강원일보 2019년 2월 1일자 정치면 「한국당 도당 “당 지지율 민주당 앞질러” 성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88호	강원일보	2월 1일	03(종합)	한국당 도당 “당 지지율 민주당 앞질러” 성명	지역일간지

제2019-189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톱스타뉴스 2019년 2월 1일자 방송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1.6% 급반등…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추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8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90호	데일리안	2월 7일	정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대통령 지지율 46.2%, “김경수 법정구속, 옳다” 51.9%, 삼성-LG, 디스플레이 열전, 20대 최고 연봉 KIA 안치홍 등	인터넷신문

제2019-191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9년 2월 11일자 36(경제)면 「뒷말 무성, 건설부동산 업계 시각도 엇갈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92호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2019년 2월 17일자 정치면 「脫원전 ‘햇밭질’에 지역경제 휘청」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 표시 없이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9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93호	경북도민일보	2월 18일	1	脫원전 '헛발질'에 지역경제 휘청	지역일간지

제2019-194호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신문 2019년 1월 30일자 뉴스면 「○○요양병원, 서울 송파에 2호점 개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9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95호	헬스조선	2월 7일	기타	여성 암 면역케어 '○○요양병원' 서울 송파에 2호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196호	중부매일	2월 15일	5	'4무2탈 존엄케어'로 환자가 편안한 병원 실현	지역일간지
제2019-197호	인터넷 중부매일	2월 14일	라이프	'4무2탈' 존엄케어로 환자가 편안한 병원 실현	인터넷신문
제2019-198호	한국투데이	2월 13일	HAN_사이언스	[닥터 인터뷰] 관절통, 다이어트, 화병 치료 전문 ○○○한의원 공○○ 원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99호	주간인물 위클리피플	1월 25일	커버스토리	○○○ 대표원장, 올바른 진료로 통증을 치료하다	인터넷신문
제2019-200호	폴리뉴스	2월 21일	경제	[칼럼] 라식·라섹 정밀검사는 전문의의 경력과 노하우 관건!	인터넷신문

제2019-201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3월 11일자 사회면 「[경향포토] 전두환 물러가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향해 비난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교생들의 초상을 공개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0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02호	서울경제	3월 12일	31	광주의 분노	중앙일간지
제2019-203호	시민일보	3월 12일	11	초등생들도 “전두환 물러가라”	중앙일간지
제2019-204호	e머니에스	3월 11일	사회	[머니S포토] “전두환 물러가라” 외치는 초등학생들	인터넷신문
제2019-205호	광주드림	3월 13일	뉴스	5월 단체 “학살주범 전두환 역사의 책임 물을 것”	인터넷신문
제2019-206호	인터넷 서울경제	3월 14일	사회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다고... 광주 초교 앞서 집회 여는 극우	인터넷신문
제2019-207호	인터넷 서울신문	3월 11일	종합	광주 초등학생들까지 “전두환 물러가라”...29만원 ‘패러디 화폐’ 든 네팔 청년 눈길	인터넷신문
제2019-208호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1일	사회	전두환의 사과 없었던 광주, 시민들의 울분만 남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09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11일	-	[H#story]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인근 초등학교생들 “전두환 물러가라”	인터넷신문

제2019-210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3월 22일자 사회면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산부인과 등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해당 진단서 실물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11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19년 3월 6일자 방송면 「[POP이슈] “경솔해”...슈, 여행 사진 공개→논란 일자 SNS 비공개 전환(종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해외 상습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가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그들의 실명을 함께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1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12호	디스패치뉴스	2월 25일	ALL	상습도박 유죄선고 후 딸 쌍둥이와 세부여행 떠난 슈	인터넷신문
제2019-213호	스포츠조선닷컴	3월 6일	연예	[SC초점] “상습도박 반성한다더니”…슈, 경솔한 라동이 여행공개→비난붂물	인터넷신문
제2019-214호	스포티비뉴스	3월 6일	TV연예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인터넷신문

제2019-215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9년 3월 12일자 셀럽면 「김나영 이혼 후 두 아들과 행복한 일상 공개…셀프 사진 촬영 ‘행복한 母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1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16호	여성동아	3월 1일	why	#남편구속후 활동중단 김나영 #유튜브로 이혼발표 #엄마의 힘으로 씩씩하게	월간지
제2019-217호	동아닷컴	3월 7일	Celeb why	#남편구속후 활동중단 김나영 #유튜브로 이혼발표 #엄마의 힘으로 씩씩하게	인터넷신문
제2019-218호	미디어펜	3월 27일	연예·스포츠	김나영, 이혼 후 씩씩한 근황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219호		주식회사 에스에쓰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9년 4월 1일자 연예면 「황○○, 마약 의혹? 버닝썬 이문호 관련 루머보니...“이미 기소유에 처분 전력 있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의 외손녀가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인 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인 당사자 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1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20호	아시아 뉴스통신	4월 3일	문화/연예	황○○가 버닝썬 마약공급책? 필로폰+대마초 흡연까지...전남친 박유천 알고있었나 '화제'	뉴스통신
제2019-221호	내외경제TV	4월 1일	뉴스	황○○ 마약에 '버닝썬' 이문호와의 관계도 사실? 조씨는 누구? 짜리사+인스타그램 글보니 '배박'	인터넷신문
제2019-222호	메디컬리포트	4월 2일	일반기사	박유천 전여친 황○○, '버닝썬' 마약공급책? 이문호 대표와 무슨 관계?	인터넷신문
제2019-223호	부산닷컴	4월 1일	-	○○○○ 외손녀 황○○, 마약 의혹 제기...필로폰 함께 투약했는데 처벌 無	인터넷신문
제2019-224호	여원뉴스	4월 1일	사회	황○○ 마약 의혹 필로폰 유통·투약에도 조사 안받는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225호	위키트리	4월 1일	-	마약 의혹 제기된 황○○가 SNS에 오늘(1일) 홍보한 '마약김치'	인터넷신문
제2019-226호	인터넷 금강일보	4월 1일	사회	황○○ 마약 의혹 "주차장에서 대마 흡연"	인터넷신문
제2019-227호	인터넷 브릿지 경제신문	4월 1일	방송 연예	황○○ 마약 의혹, 효연과 다정샷...“울 얘기 너무 이뻐해 주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28호	인터넷 일요시사	4월 2일	사회	<단독> '마약 의혹' 황○○ "엄마가 뒤처리...아빠는 경찰청장 베프"	인터넷신문
제2019-229호	인터넷 천지일보	4월 2일	경제	○○○○ "황○○씨 마약혐의, 회사와 무관"	인터넷신문
제2019-230호	인터넷 한국 스포츠경제	4월 1일	사회/정책	황○○, 마약 공급 의혹에도 조사 안 받아...대마 흡연 전력도 있어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9-231호	인터넷 한국일보	4월 1일	연예	황○○, 마약투약 의혹 보주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9-232호	티비리포트	4월 1일	종합	황○○, 마약 투약설+보주기 수사 의혹→SNS에 김치 홍보 '논란 ing'[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233호	화이트페이퍼	4월 1일	방송/연예	황○○ 마약 의혹, 효연과 다정샷... "이쁜 효연"	인터넷신문
제2019-234호	enews24	4월 2일	-	'박유천 전 연인' 황○○, 마약 투약 의혹 경찰 수사...보주기 의혹 내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235호		월드미디어그룹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2019년 4월 1일자 뉴스면 「황○○ 마약 의혹, 파장 어마어마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동명이인인 여배우의 이력을 게재하였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여배우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3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36호	스포츠 조선닷컴	4월 2일	연예	[종합] 황○○의 마이웨이, 마약·버닝썬 의혹→'마약김치' 홍보	인터넷신문
제2019-237호	오에스이엔	4월 2일	연예	황○○, 버닝썬·마약 의혹→마약김치 대응..SNS 광폭 행보 어디까지 [종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38호	조선닷컴	4월 2일	연예	[종합] 황○○의 마이웨이, 마약·버닝썬 의혹→‘마약김치’ 홍보	인터넷신문
제2019-239호	티브이데일리	4월 1일	방송	‘박유천 전 연인’ 황○○ 누구? ○○○○ 창업주 외손녀	인터넷신문
제2019-240호	YTN	4월 8일	사회	황○○, 마약 경위 진술...언급된 연예인 1명 수사	방송
제2019-241호	경남데일리	4월 2일	핫이슈	황○○, 그녀는 무엇이 부족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나?	인터넷신문
제2019-242호	노컷뉴스	4월 8일	인권/복지	[팩트체크] 황○○ 얼굴 모자이크는 과잉친절?	인터넷신문
제2019-243호	말산업저널	3월 1일	일과 휴식	박유천 3년전 불미스러운 사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만든 황○○는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9-244호	블록체인 밸리	3월 1일	라이프	박유천 소환한 황○○는 누구?...박유천 3년전 불미스러운 사건 다시 수면위로!	인터넷신문
제2019-245호	인터넷 경북신문	3월 1일	핫이슈	황○○는 누구?...나이 서른 둘, 박유천 3년전 불미스러운 사건 소환	인터넷신문
제2019-246호	인사이트 코리아	4월 2일	ENTERTAINMENT	박유천 전 여친 황○○, 그녀는 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나?...부족하게 있나?	인터넷신문
제2019-247호	인터넷 인천일보	3월 1일	라이프	박유천 소환 황○○는 누구?...박유천 3년전 불미스러운 사건 다시 수면위로!	인터넷신문
제2019-248호	인터넷 시민일보	3월 15일	핫이슈	‘또다시 핫이슈’ 황○○, 온라인을 뜨겁게 만든 사연의 내막... “이유가 뭐야?”	인터넷신문
제2019-249호	인터넷 중부일보	3월 15일	종합	황○○,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저격 대상 박유천 아니었다? 반전 예고 의미심장	인터넷신문
제2019-250호	폴리뉴스	3월 1일	라이프	박유천 소환한 황○○는 누구?...나이 서른 둘, 박유천 3년전 불미스러운 사건 다시 수면위로!	인터넷신문

제2019-251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3월 2일자 연예면 「박유천♥, 황○○ 'LA에서 제일 예쁜 한국인' 결혼한다더니 “어떻게든 가해자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가수와 연인관계였던 모 기업 창업주의 외손녀가 SNS에 폭로한 내용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해당인의 초상을 공개하고,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동명이인인 여배우의 이력을 게재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5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52호	쿠키뉴스	3월 1일	-	재벌 3세 또 말썹?...황○○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별일을 다 겪네”	인터넷신문

제2019-253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3월 29일자 사회면 「김의겸 참 나쁜 여자 아내 혼자서 내린 결정 ... 돈에 눈이 어두워 청와대 대변인 남편 인생을 망친 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표를 냈다고 보도하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건물 매입을 결정하였다는 전 대변인의 해명을 근거로 당사자의 배우자에

	<p>대해 ‘참 나쁜 여자 돈에 눈이 어두워 청와대 대변인 남편 인생을 망친 셈’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p> <p>이는 비록 당사자의 해명에 근거한 보도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254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3월 13일자 종합면 「정준영 동영상 난 절대 아니라니까」 오초희. 정유미. 이청아의 절규 왜?... 사실이면 연예계 끝장, 하지만 연기도 ‘술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사건의 피해자로 일부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중 한 명의 초상을 함께 게재하였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여 해당 여성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5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55호	인터넷 일요시사	3월 13일	오늘의 이슈	정유미, 나영석 불륜설에 또 “터무니없이 이름조차 불쾌” 억울한 성관계 동영상 루머	인터넷신문
제2019-256호	플리뉴스	3월 13일	라이프	정유미, 나영석 PD와 황당 루머에 이어 이청아와 정준영 동영상에 이름 거론...누가 가짜뉴스 만드나?	인터넷신문

제2019-257호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대상보도	인터넷 파주에서 2019년 2월 28일자 정치·사회면 「(주)○○○○ 황팀장 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공공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 나이, 소속 업체명,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58호	주식회사 충남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충남일보 2019년 3월 18일자 지역소식면 「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검찰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정당의 전(前)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 정당, 지역구, 직책,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관계인 성폭력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회 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5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59호	충남일보	3월 21일	08	“처제성폭행 피의자 엄벌하라” 민주당 충남도당	지역일간지

제2019-260호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019년 3월 19일자 사회/정책면 「부산 S여고 ‘성폭력 미투’ 불거져... “너를 반찬으로 오해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학교내 교직원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6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61호	부산닷컴	3월 19일	사회	부산○○여고 교사 성폭력 SNS 고발...“반바지 입으면 반찬으로 오해”	인터넷신문
제2019-262호	인터넷 서울경제	3월 19일	사회일반	부산 s여고 교사 미투, “너를 반찬으로 오해해 먹을 수 있어” “키스 해봤나”	인터넷신문
제2019-263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3월 19일	라이프	“널 반찬으로 오해해 먹을 수도...” 부산 S여고 교사 ‘미투’ 폭로글 SNS에 이어져	인터넷신문
제2019-264호	인터넷 아주경제	3월 19일	-	부산 S여고 교사 “짧은 바지 입고 오면 할아버지들이 너를 반찬으로 오해” 충격 발언	인터넷신문

제2019-265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3월 9일자 핫이슈면 「“12년지기 남사친과 코인노래방 갔다가 기절했는데, 그 사이 ‘성추행’ 당했습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을 담은 CCTV 영상을 게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266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4월 1일자 사회면 「윤서인 사과문 논란 “딸아, 조두순 아저씨 놀러오셨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만화가가 ‘조두순 사건’의 성폭력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소재로 하여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웹툰이 논란이 되어 사과문을 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웹툰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비록 해당 내용이 웹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고 가해 당사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웹툰의 소재로 사용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6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67호	디스패치뉴스	3월 29일	ALL	‘조두순 사건 희화화’ 웹툰작가, 피해자에 사과·2천만원 배상	인터넷신문
제2019-268호	매경닷컴	3월 29일	핫이슈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 윤서인, 2000만원 배상 합의... “사과드린다”	인터넷신문
제2019-269호	시선뉴스	4월 1일	대중문화	“딸아 예전에 성폭행했던 아저씨 놀러오셨다?” 충격 재조명... ‘조두순’ 과거 논란 핫이슈 등극	인터넷신문
제2019-270호	청년일보	4월 1일	Y-Society	조두순 ‘핫이슈 등극’... “딸아 예전에 성폭행했던 000 아저씨 놀러오셨다?” 충격 재조명	인터넷신문

제2019-271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3월 8일자 사회면 「손이 순식간에 팬티속으로 ‘똥쓸짓’...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한맺힌 증언 그리고 이미숙, 송선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를 편집한 내용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72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9년 3월 29일자 사회면 「생중계 후 대화방 폭파... ‘몰카 공유’의 진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적발이나 단속이 불가능한 영상 유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73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3월 7일자 사회면 「강남 주택가서 ○○○○ 흡입한 20대 여성들...5700개 압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명칭, 별칭 및 제조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7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74호	아시아경제 닷컴	3월 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 흡입한 20대 여성 3명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9-275호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3월 12일	뉴스	'버닝썬 논란' 환각물질...11번가·g마켓·쿠팡 등서 버젓이 팔려	인터넷신문
제2019-276호	인터넷 한국일보	3월 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 흡입한 20대...5700개 압수	인터넷신문
제2019-277호	뉴스1코리아	3월 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 흡입 20대 여성들...5700개 압수	뉴스통신
제2019-278호	뉴시스	3월 12일	사회	주택가 독버섯 '○○○○'...강남 동네서 한달 3번 적발	뉴스통신
제2019-279호	인터넷 세계일보	3월 7일	사회	[단독] 또 '○○○○'... 강남 주택가서 여성 3명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9-280호	아이뉴스24	3월 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 흡입한 20대 여성들	인터넷신문
제2019-281호	위키트리	3월 7일	사회	"쓰레기장에 휘핑가스 캡슐아..." 강남 주택가서 '○○○○' 상습 흡입한 20대들	인터넷신문
제2019-282호	인터넷 금강일보	3월 7일	사회	휘핑캡슐 뭐길래? ○○○○ 흡입한 20대 여성 붙잡혔다	인터넷신문
제2019-283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3월 7일	사회	강남서 '○○○○' 흡입 20대 체포...원료인 휘핑캡슐 무더기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284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월 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 흡입한 20대 여성들..."캡슐 5700개 압수"	인터넷신문

제2019-285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3월 19일자 사회면 「성인용품점에 판매된 '○○'...800명 투약 가능한 ○○○ 유통조직 검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28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86호	온라인 중앙일보	3월 19일	사회	은밀히 숨긴뒤 '던지기'... '버닝썬 마약' ○○ 이렇게 팔았다	인터넷신문
제2019-287호	인터넷 매일신문	3월 19일	사회	800명 분량 일명 '○○'(○○○) 유통 일당 경찰에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9-288호	인터넷 한겨레	3월 19일	사회	'○○' 유통 남성들 검거...12년간 가장 많은 양 압수	인터넷신문

제2019-289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3월 26일자 이슈면 「“우리 개는 안 물어, 아이 잘못”...4살 아이 피투성이 만든 핏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 아이가 맹견에게 물렸다고 보도하면서 상처 입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290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3월 5일자 월드면 「코끼리 때리다 몸통에 깔려 온몸이 으스러진 사육사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사육사가 코끼리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사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29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91호	인사이트	3월 4일	햇이슈	말 안 듣는다며 코끼리 '피투성이' 될 때까지 학대하던 남성이 압사당한 채 발견됐다	인터넷신문

제2019-292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3월 27일자 월드면 「사람들이 일으킨 화재로 가족 잃고 온 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강아지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강아지들이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9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93호	인사이트	3월 26일	햇이슈	사람들이 집에 '불' 지르자 동생부터 입에 물고 탈출 시도한 유기견	인터넷신문

제2019-294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서울신문 2019년 4월 1일자 11면 「사교육 효과 확실한 정시 소득 높을수록 확대 선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학 전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95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 2019년 3월 19일자 정치면 「민주평통 “국민 58%, 북미 비핵화 협상 낙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96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3월 25일자 종합면 「[G 칼럼] 이해하기 까다로운 ‘문재인 정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97호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대상보도	아시아투데이 2019년 3월 22일자 06면 「김학의·장자연 사건' 상설특검 도입 촉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29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298호	노컷뉴스	3월 25일	문화	법-역사 사이 김학의·장자연 사건...법학자 '정의실현' 진단	인터넷신문
제2019-299호	인터넷한겨레	3월 21일	사회	“‘셀프 수사’ 안 돼...버닝썬·김학의·장자연 특검 실시하라”	인터넷신문

제2019-300호		주식회사 뉴스핌
대상보도	뉴스핌 2019년 3월 18일자 사회면 「'낙태죄는 위험' 인권위 입장에 다시 찬반 논쟁 점화..현재 판결 주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01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19년 3월 8일자 사회면 「"미투운동 지지 못해"…20대 남성 '여혐' 심해졌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투운동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0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02호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2일	사회	미투운동 지지율 1년새 10%p '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03호	한강타임즈	3월 8일	사회	여성정책연구원 “미투 운동 이후 국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인터넷신문
제2019-304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3월 8일	뉴스	미투 운동은 정말 사회 변화를 일으켰을까?	인터넷신문

제2019-305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9년 3월 11일자 경제면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대전제…축소·폐지 검토 아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0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06호	뉴데일리	3월 11일	사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필수인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307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3월 11일	정치/정책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한다	인터넷신문
제2019-308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월 12일	경제	되풀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해법은 기본공제에 포함?	인터넷신문
제2019-309호	일요서울	3월 11일	경제	“여지만 남겼다”...신용카드 소득 공제 3년 연장? 혜택은 어디로?	인터넷신문
제2019-310호	e머니에스	3월 11일	금융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대전제… 폐지 아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311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9년 3월 4일자 10면 「학부모들, 정부 강경대응 지지… 국민 81% “유치원 3법 개정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12호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대상보도	메디컬투데이 2019년 3월 7일자 정책면 「연일 초미세먼지 극성…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차량2부제 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차량 2부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1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1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9일	뉴스	국민 10명중 8명 초미세먼지 줄이기 전면 차량2부제 찬성	인터넷신문

제2019-314호		주식회사 제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제민일보 2019년 3월 19일자 경제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찬반 논란 제주도 ‘시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1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15호	프라임경제	3월 20일	아웃소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는 25일 첫 접수…구직자 85% ‘환영’	인터넷신문

제2019-316호		경인투데이뉴스
대상보도	경인투데이뉴스 2019년 3월 13일자 지역뉴스면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 찬성 67.0% vs 반대 27.2%」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17호	주식회사 광주매스컴
대상 보도	광주매일신문 2019년 3월 13일자 08면 「지역주민 관절·척추 질환 해결사 자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18호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3월 12일	라이프	지역주민 관절·척추 질환 해결사 자임	인터넷신문
제2019-319호	인터넷 내일신문	2월 28일	지방자치	“치과 치료 통해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인터넷신문
제2019-320호	지역내일	2월 28일	건강·의료	“치과 치료 통해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인터넷신문
제2019-321호	티에이치이 dailynews	3월 20일	라이프	부산여드름! 고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이라면?	인터넷신문
제2019-322호	매경닷컴	3월 6일	IT·과학	○○피부과, 맞은 건물로 이전 진료	인터넷신문
제2019-323호	인터넷 경남매일	2월 26일	기획/특집	“일상생활로 돌리는 재활치료는 사랑에서 나오죠”	인터넷신문
제2019-324호	플리뉴스	3월 5일	경제	반영구화장·눈썹문신·타투 제거 망설이는 이들, 피부과 피코레이저 시술로 개선 가능해	인터넷신문

제2019-325호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
대상 보도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019년 4월 2일자 사회/문화면 「양산 실종 아동 발견...어디서 찾았나」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실종 아동을 발견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아동의 초상 등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 아동 수배전단을 게재하였다. 비록 전단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동이 이미 가족에게 돌아와 전단 배포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에서, 아동의 초상, 성명, 생년월일, 나이, 성별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지속하여 공개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2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26호	뉴스인사이드	4월 2일	사회	양산실종아동 발견, 동네 주변 걷고 있었다...“다친 곳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327호	뉴스투데이	4월 2일	라이프	흔계 듣고 사라졌던 ‘양산 실종아동’ 찾았다.. 동네 걷다 경찰에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328호	동아닷컴	4월 2일	사회	양산 실종아동, 밤새 집 주변 뱅뱅...도망친 이유 물었더니?	인터넷신문
제2019-329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2일	사회	양산 실종 아동, 신고 하루 만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인터넷신문
제2019-330호	스포츠한국	4월 2일	시사	양산실종아동 찾았다 “무사히 가족 품으로...다친 곳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331호	인터넷 신아일보	4월 2일	사회	‘양산실종아동’ 무사히 귀가...“거주지 주변서 밤 새워”	인터넷신문
제2019-332호	인터넷 천지일보	4월 2일	사회	‘양산 실종아동’ 발견... 실종 하루 만에 가족 품으로	인터넷신문
제2019-33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2일	최신기사	양산 실종아동 찾았다...하루 만에 자진귀가	인터넷신문

제2019-334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 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4월 10일자 사회면 「“○○○○와 연인관계” 주장男 “마약 함께 투약” 진술」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와 연인관계라 주장하는 남성의 진술을 전하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3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35호	국제뉴스	4월 10일	사회	○○○○ 공범? '의외의 인물'	뉴스통신
제2019-336호	아시아뉴스통신	4월 10일	연예	○○○○ 부인 입열다...“마약 투약에 동성애까지?” 라디오스타 분량 삭제...해피투게더는 VOD 중단	뉴스통신
제2019-337호	뉴데일리	4월 10일	연예	○○○○ '동성 연인'과 필로폰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9-338호	뉴스인사이드	4월 10일	연예	○○○○,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과 연인사이...아내 명○○ “날 못 나가게 감금”	인터넷신문
제2019-339호	뉴스타운	4월 11일	사건/사고	'마약 파문' ○○○○, 공범-> 동성 애인? "CCTV 찍혀...필로폰 후 동성 행위도"	인터넷신문
제2019-340호	뉴스투데이	4월 10일	라이프/종합	확성·삭발로 2차례 빠져나갔던 ○○○○.. 동성연인과 마약투약 의혹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341호	더팩트	4월 10일	연예	○○○○, 동성 애인·전신 체모까지...반전의 연속	인터넷신문
제2019-342호	동아닷컴	4월 10일	사회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인터넷신문
제2019-343호	매경닷컴	4월 10일	핫이슈	○○○○ 공범, 연인 관계?...마약 이어 동성애 논란까지 '충격의 연속'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44호	매일신문	4월 10일	사회	○○○○ 마약 공범, 동성 연인 관계?	인터넷신문
제2019-345호	미디어펜	4월 10일	연예·스포츠	○○○○, 동성애 관계에 전신 제모까지...마약 논란은 서막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19-346호	베리타스	4월 11일	-	○○○○ 공범 누구? ○○○○ 동성 연인 불륜 의혹도	인터넷신문
제2019-347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10일	연예	'몰몬교 신자' ○○○○의 부끄러운 민낯 "마약과 불륜"	인터넷신문
제2019-348호	세계로컬타임즈	4월 10일	뉴스&이슈	'몰몬교 신자' ○○○○, 지난해 '동성연인' 주장하는 마약사범과 함께 입건	인터넷신문
제2019-349호	수원일보	4월 10일	연예/이슈	○○○○, 동성 내연남과 불륜 정황 "마약 복용 후 유사성행위 즐겼다"	인터넷신문
제2019-350호	스타데일리 뉴스	4월 10일	피플	○○○○, 마약 투약 공범 추정 男과 연인설 불거져	인터넷신문
제2019-351호	스포츠한국	4월 11일	연예	○○○○ 구속영장 기각, '동성 연인'과 마약투약 의혹까지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9-352호	싱글리스트	4월 10일	사회	○○○○, 오늘(10일) 영장실질 심사...지난해 동성연인과 마약투약 의혹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353호	아시아경제 닷컴	4월 11일	사회	"○○○○와 연인관계, 함께 마약했다"	인터넷신문
제2019-354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4월 10일	사회	○○○○, 연인주장 男 "함께 마약 투약"...경찰, 증거·정황 다수 확보	인터넷신문
제2019-355호	위키리크스 한국	4월 11일	컬처	"○○○○, 동성 연인과 함께 마약 투약했다" 경찰, ○○의 마약과 불륜 정황 포착	인터넷신문
제2019-356호	위키트리	4월 11일	엔터	"연인관계였다" ○○○○ 마약 공범이 전한 '충격적인 진술'	인터넷신문
제2019-357호	인터넷 금강일보	4월 10일	사회	○○○○ 부인, 동성애 연인 "나와 연인관계" 알고 있었나?	인터넷신문
제2019-358호	인터넷 뉴스웨이	4월 10일	일반	몰몬교 신자인 ○○○○, 마약에 동성애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359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4월 10일	연예	○○○○ 공범 있었다? A씨 "그와 연인 관계" 충격 고백	인터넷신문
제2019-360호	인터넷 신아일보	4월 10일	사건·사고	"○○○○, 동성 연인과 함께 마약했었다"	인터넷신문
제2019-361호	인터넷 아주경제	4월 10일	사회	'몰몬교' ○○○○(○○), 마약 투약 이어 동성애 의혹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62호	인터넷 일간리더스경 제신문	4월 10일	사회	○○○○는 남자를 사랑한다?... 남성 공범 "우리는 연인사이"	인터넷신문
제2019-363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4월 10일	연예	"○○○○와 연인관계" 男마약사범 경찰서 "함께 투약" 진술	인터넷신문
제2019-36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0일	연예	"○○○○와 동성애 관계" "함께 투약" ... 男 마약사범, 경찰서 '충격 진술'	인터넷신문
제2019-365호	전자신문 인터넷	4월 10일	-	○○○○ 공범 정체? '깜짝이야'	인터넷신문
제2019-366호	통합뉴스	4월 10일	사회/일반	○○○○ 공범 주장은?	인터넷신문
제2019-367호	티비리포트	4월 10일	엔터	'마약 혐의' ○○○○, 동성애 의혹... "男연인과 함께 투약"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368호	한경닷컴	4월 10일	사회	○○○○, 타락한 몰몬교 신자... 동성연인과 마약 투약 '지혜의 율법' 어겨	인터넷신문
제2019-369호	한국금융	4월 11일	오늘의이슈	'마약 의혹' ○○○○, 공범이 동성 애인? CCTV 영상 확보 "동성 행위 진술도"	인터넷신문

제2019-370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9년 4월 10일자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동성애 사실 을 공개하고 이를 '동성행각',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는

	<p>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37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71호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0일	사회	○○○○ 부끄러운 민낯...마약과 동성애 동시에	인터넷신문
제2019-372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4월 10일	사회/정책	'마약에 동성 불륜 의혹까지' 물몬교 신자 ○○○○의 추악한 민낯	인터넷신문

제2019-373호	주식회사 양평시민의소리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양평시민의소리 2019년 4월 5일자 사회면 「양평읍 공무원, 비영리 단체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출자로 지목된 공무원의 성, 소속, 직위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74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일보 2019년 4월 15일자 사회면 「대구, 교통사고 처리해달라…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보험사기 일당 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일당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일부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75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2019년 4월 8일자 사회면 「[단독]“생리 여학생에 ‘떡볶이 국물…’ 발언도’ 스쿨미투 재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스쿨 미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여과 없이 게재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성적 발언 등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7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76호	동아닷컴	4월 2일	사회	‘생리 열달간 안하게 해줄까?’…‘스쿨미투’ 교사 6명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9-377호	뉴스1코리아	4월 2일	인천	‘생리 열달간 안하게 해줄까?’…‘스쿨미투’ 교사 6명 송치	뉴스통신
제2019-378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2일	사회	‘10달간 생리 안하게 해줄까?’ 인천 ‘스쿨미투’ 교사 8명 입건	인터넷신문

제2019-379호		주식회사 뉴스온미디어
대상보도	뉴픽 2019년 3월 20일자 사회면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델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청각 마비에 사용된 도구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7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80호	뉴스1코리아	3월 19일	정치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델미(종합)	뉴스통신

제2019-381호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2일자 8면 「버닝썬 수사 비웃듯... _○○ 살래요_ 대포통장으로 합시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8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1일	사회	버닝썬 수사 비웃듯... “○○ 살래요? 대포통장으로 합시다”	인터넷신문

제2019-383호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9년 4월 1일자 사회면 「금보다 비싼 일부 상류층 자제들의 과자? ‘○○○○’가 뭐길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4호		주식회사 남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남도일보 2019년 4월 15일자 뉴스면 「마약 청정국 옛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사용방법,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85호	남도일보	4월 16일	09	마약 청정국 옛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	지역일간지

제2019-386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4월 3일자 사회면 「재벌가 3세 손댄 ‘액상○○’…검색만으로 판매자 접촉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87호	e머니투데이	4월 24일	사회	현대가 3세 투약한 ○○○오일, 환각효과 대마초의 20배	인터넷신문

제2019-388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4월 9일자 사회면 「로버트 할리가 마약 구매한 인터넷 시장…일반인도 ‘무방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9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9년 4월 17일자 사회면 「끔찍한 아파트 흉기 살인사건 현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록 모자이크처리하였으나 핏자국이 남아 있는 범행 현장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38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390호	e머니투데이	4월 18일	-	벌레 넣는다 시비, 인분 뿌리고...진주 방화 살인범의 '과거'	인터넷신문
제2019-391호	e머니에스	4월 17일	정치/사회	진주 화재, 방화+흉기난동으로 '5명 사망'... "임금체불 불만"	인터넷신문
제2019-392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17일	사회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일가족·조카 등 5명 사상	인터넷신문
제2019-393호	세계로컬타임즈	4월 18일	뉴스&이슈	'진주 방화·흉기 난동', 당시 119녹취 들어보니... "몇 층이나" 질문만 반복	인터넷신문
제2019-394호	시사플러스	4월 17일	헤드라인뉴스	아파트 방화·흉기 공격 40대 정신병 전력... "충간소음 갈등"	인터넷신문
제2019-395호	오마이뉴스	4월 17일	사회	"조용한 진주에 왜 이런 일이..." 방화·살인 사건에 시민들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9-396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17일	시사	끔찍한 아파트 흉기 테러 현장	인터넷신문
제2019-397호	인터넷 위클리오늘	4월 17일	사회	진주 방화·살인 사건 용의자, 주민들과 충간소음 갈등 빚어	인터넷신문
제2019-398호	인터넷 전남일보	4월 17일	사회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일가족·조카 등 5명 사상...가정 풍비박산	인터넷신문
제2019-399호	한국증권신문	4월 18일	종합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 경찰 "범인 '조현병' 사건 터지고 알았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00호	인터넷 한국일보	4월 17일	지역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인터넷신문

제2019-401호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019년 4월 17일자 사회/정책면 「[종합] 진주아파트 살인사건 사망 5명, 부상 13명 원인은 ‘임금체불 불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죄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자료사진을 게재하여 해당 살인사건의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0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02호	아시아 뉴스통신	4월 17일	사회	‘조현병’이면 감형? 정상참작 인정해야 하나...시민들은 불안에 떨어 “친모 죽이고도 심신미약 참작”	뉴스통신
제2019-403호	인사이트	4월 17일	핫이슈	아파트에 불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 흥기 휘둘러...“5명 사망, 10명 부상”	인터넷신문
제2019-404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7일	사회	[속보] 진주 아파트서 방화 뒤 흥기 휘둘러...5명 사망·10명 부상	인터넷신문
제2019-405호	메디컬리포트	4월 17일	Health & Life	진주아파트 범인 43세 남성...진주 가좌주공 살인사건 ‘화제’ 12살 여자아기도 사망...방화 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19-406호	인터넷 천지일보	4월 17일	사회	진주서 40대 남성 방화 후 흥기 휘둘러 15명 사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07호	메디파나뉴스	4월 22일	개원가	故임○○ 이어 진주사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해야”	인터넷신문
제2019-408호	시선뉴스	4월 26일	뉴스	‘안인득’은 곳곳에 있다... ‘충격’ 창원서 조현병 10대 이웃 살인 등	인터넷신문

제2019-409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4월 18일자 정치·사회면 「5명 살해하며 수없이 흥기로 찢러 피로 물든 ‘진주 아파트 살인마’ 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 묻은 범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0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10호	뉴스1코리아	4월 17일	포도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의 손	뉴스통신
제2019-411호	디스패치뉴스	4월 17일	ALL	“막을 수 있었던 참극”... 진주 살인 피의자 올해만 7번 경찰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412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4월 20일자 핫이슈면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자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투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413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4월 8일자 사회면 「'주인님이 안 데려가서' 강원산불에 타죽은 강아지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죽은 개의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14호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9년 4월 12일자 3면 「현재 '여성 건강권 회복' 존중한 듯...여론도 폐지 과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낙태죄 논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1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15호	인터넷 영남일보	4월 12일	사회	현재 '여성 건강권 회복' 존중한 듯...여론도 폐지 과반	인터넷신문
제2019-416호	MBC-TV	3월 30일	뉴스데스크	'낙태죄' 운명 다음 주에 갈린다... "키운트다운"	방송
제2019-417호	뉴스1코리아	4월 11일	사회	현재 오늘 낙태죄·자사고 운명 결정...오후 선고	뉴스통신
제2019-418호	매경닷컴	4월 10일	정치	[레이더P]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9-419호	일요신문	4월 11일	사회	[현장스케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앞두고 발 디딜 틈 없는 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제2019-420호	헤모필리아 라이프	4월 10일	헤모IN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 초읽기, '희귀질환 가족들 의견은?'	인터넷신문
제2019-421호	e머니에스	4월 11일	사회	'낙태죄' 처벌 합당한가... 오늘(11일) 현재서 위헌여부 판단	인터넷신문

제2019-422호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일간리더스경제 2019년 4월 22일자 2면 「경남·울산 70% _접근성 좋아지면 가덕 반대 안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3호		주식회사 호남삼현
대상보도	호남매일 2019년 4월 23일자 03면 「박근혜 석방 반대 62.0% 압도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4호		주식회사 제주매일
대상보도	제주매일 2019년 4월 30일자 4면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부셔도 좋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25호	인터넷 제주매일	4월 30일	사회/교육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부셔도 좋다?	인터넷신문

제2019-426호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상보도	한경닷컴 2019년 4월 10일자 사회면 「국민 대다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찬성…반대 15.6% 불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7호		주식회사 더팩트
대상보도	더팩트 2019년 3월 22일자 사회면 「[TF초점] 장자연·김학의 은폐된 진실…“그래서 공수처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공수처 설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8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9년 4월 30일자 정치면 「'4박5일' 동물국회...여야 모두 패스트트랙 '치명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몸싸움 국회' 책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29호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대상보도	메디컬투데이 2019년 4월 30일자 정책면 「국민 94.7%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 인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0호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대상보도	메트로신문 2019년 4월 7일자 경제면 「'추경'태풍급 위기에 번트급 대책으로 한계, '스몰볼' 전술로 극대화해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제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1호	주식회사 새전북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새전북신문 2019년 4월 13일자 연예/핫이슈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한일관계의 또 다른 쟁점 'SBS뉴스스토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한일 국민 상호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2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9년 3월 31일자 국방·외교면 「[밀리터리 인사이트] 뜨거운 여론…‘핵잠수함’은 왜 필요한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핵잠수함 도입 필요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3호		주식회사 거인미디어
대상보도	한국정책신문 2019년 4월 25일자 사회면 「실화탐사대 조두순, 출소일은 언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4호	한류타임즈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9년 4월 5일자 라이프면 「'강남 ○○○○병원', '○○○○병원'으로 새로운 도약」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3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35호	경남매일	4월 22일	17	100명 환자에게 100가지 맞춤처방으로 치료효과 높이죠	지역일간지
제2019-436호	인터넷 경남매일	4월 21일	기획/특집	100명 환자에게 100가지 맞춤처방으로 치료효과 높이죠	인터넷신문
제2019-437호	인터넷 경인일보	4월 23일	지역종합	○○○○병원, 소아청소년클리닉 4월말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438호	인터넷 의학신문	4월 23일	병원	○○○○병원, 4개 소아청소년클리닉 개소	인터넷신문
제2019-439호	인터넷 주간 의계신문	4월 23일	병원	○○○○병원, 4개 소아청소년센터 클리닉 개소	인터넷신문
제2019-440호	e머니에스	3월 29일	지역	부산 ○○○병원, 척추·관절·내과 중심병원으로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441호	IPTV NEWS	3월 28일	지역소식	○○○요양병원 증축 개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인터넷신문
제2019-442호	경기중앙신문	4월 5일	사회	오산에는 믿을만한 '○○○○병원'이 있다	인터넷신문

제2019-443호		뉴스통신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스통신 2019년 5월 15일자 사회면 「해경, 식사 중 의식 잃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해경이 의식을 잃은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응급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44호		유한회사 광주전남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9년 5월 14일자 사회면 「○○군 공직자 이래도 되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다통을 벌인 공무원 양 당사자의 성, 소속, 직위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 중 일방이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직기강해이를 지적한 기사라 할지라도 신원 및 정신과적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4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45호	광주타임즈	5월 14일	01	○○군 공직자 이래도 되나	지역일간지

제2019-446호		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5월 13일자 SOCIETY면 「아프리카에서 납치 된 한국인 여성 얼굴 공개(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4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47호	아시아 경제닷컴	5월 12일	국제	아프리카서 납치됐다 구출된 한국인·프랑스인 등 3명 佛 도착	인터넷신문
제2019-448호	인터넷 서울신문	5월 11일	국제최신	프랑스군에 구출된 인질들 “작전 중 전사한 장병들 애도”	인터넷신문
제2019-449호	인터넷 영남일보	5월 13일	국제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인터넷신문

제2019-450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5월 3일자 연예·문화면 「황○○, 버닝썬 이문호+린사모와 관계에 ‘잘 어울렸다’.. 박유천 나체 협박+고급빌라서 성관계 파티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인의 초상을 공개하였으며 내밀영역에 관한 사안을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인 당사자	

	<p>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45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51호	데일리타임즈	5월 4일	사회	황○○, 버닝썬 이문호+린사모와 관계에 '잘 어울렸다'.. 박유천 나체 협박+고급빌라서 성관계 파티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452호	벤처창업신문	5월 31일	라이프	'YG 성접대 연루' 스트레이트 측에서 인터뷰한 한 목격자는...	인터넷신문
제2019-453호	업코리아	5월 31일	핫이슈	'YG성접대 마약 현장에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 가 밝힌 바에...	인터넷신문
제2019-454호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일	사회	만나본 적도 없는 임블리...팔로어들은 왜 지갑 열었나	인터넷신문
제2019-455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28일	뉴스	YG 성 접대 의혹 목격자 황○○ 언급, 네티즌 관심	인터넷신문
제2019-456호	인터넷 금강일보	5월 28일	문화	'박유천과 마약, 성접대 현장 의혹' 황○○ ... 평소 그녀의 모습	인터넷신문
제2019-457호	인터넷 대구일보	5월 28일	연예	'황○○'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길래 범망 피할 수 있었나	인터넷신문
제2019-458호	인터넷 매일신문	5월 28일	사회일반	'YG 성접대 연루' 황○○ 나이 및 직업은?	인터넷신문
제2019-459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8일	연예	황○○-한○○, 비연예인 셀럽에 우는 연예계[SS이슈]	인터넷신문
제2019-460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5월 28일	Visual	'마약 혐의' 황○○, 성매매 현장에도 기웃? "몰카 올리고 즐거워했다" 카톡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461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p>투스타뉴스 2019년 4월 29일자 셀럽면 「[리봇] 한성주 전 아나운서, 전 남자친구 ○○○○ 동영상 유출 이후 근황은?...「서울 대병원 연구원 재직 중」」 제하의 보도</p>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근황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유명인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비디오 파문, 혼전임신, 낙태, 협박 및 폭력 의혹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고 일반인인 전 남자친구의 실명 및 이력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62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 2019년 5월 27일자 사회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국립대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 피의자의 성, 나이, 소속 학과, 직책 등 신원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6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63호	국민일보	5월 28일	14	검, '조교 채용비리·시험문제 유출' 서울과기대 3명 기소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64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7일	시사	검, '조교 채용비리·시험문제 유출'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465호	뉴스토마토	5월 28일	06	'빛나간 자녀 사랑' 국립대 교수 재판에	중앙일간지
제2019-466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5월 27일	사회	아들 시험지 빼돌리고 올 A+ 준 국립대 교수 재판에	인터넷신문
제2019-467호	세계일보	5월 28일	10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기소	중앙일간지
제2019-468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27일	사회	"눈물 나는 '부정?' 아들에게 시험문제 빼주다 적발된 국립대 교수	인터넷신문
제2019-469호	한국일보	5월 28일	12	교수가 문제 유출하고 채점 조작 국립대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중앙일간지
제2019-470호	중도일보	5월 28일	02A	아들에 모두 A+학점... 지인 자녀, 조교로 부정 채용	지역일간지
제2019-471호	뉴스1코리아	5월 27일	사회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뉴스통신
제2019-472호	뉴스스	5월 27일	사회	조교 청탁 채용, 아들에 옛 시험문제 유출...교수들 기소	뉴스통신
제2019-473호	연합뉴스	5월 27일	최신기사	국립대교수,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자신 강의는 모두 'A+'	뉴스통신
제2019-474호	노컷뉴스	5월 27일	사회	아들 위해 시험문제 유출...서울과기대 비위 교수들 재판에	인터넷신문
제2019-475호	뉴스핌	5월 27일	사회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조교 부정채용...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476호	동아닷컴	5월 27일	사회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477호	매경닷컴	5월 27일	사회	국립대교수,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자신 강의는 모두 'A+'	인터넷신문
제2019-478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5월 27일	사회	검찰, '시험문제 유출·부정채용' 국립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인터넷신문
제2019-479호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7일	사회	아들에게 시험지 빼돌리고 성적 A+ 준 국립대 교수	인터넷신문
제2019-480호	OM뉴스	5월 27일	교육	서울과기대교수, 아들이 신청한 8과목 모두 'A+'...사전에 시험문제 빼내 주어	인터넷신문
제2019-481호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7일	사회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등 서울과기대 교수 3명 재판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82호	인터넷 세계로컬 타임즈	5월 27일	뉴스&이슈	그들의 수상한 성적 뒤엔 교직원 가족이'...서울과기대 교수들 법원행	인터넷신문
제2019-483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5월 27일	시사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자신 강의는 모두 'A+' 준 국립대교수	인터넷신문
제2019-484호	인터넷 시민일보	5월 27일	사회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 성적은 A+	인터넷신문
제2019-485호	인터넷 아주경제	5월 27일	사회	교수 아버지가 챙겨준 '족보'로 아들은 A+	인터넷신문
제2019-486호	인터넷 이데일리	5월 27일	사회	檢, 아들에게 시험문제 빼돌린 서울과기대 교수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487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5월 27일	사회	아들에게 시험지 빼돌리고 성적 A+ 준 국립대 교수	인터넷신문
제2019-48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27일	사회	아들 강의 점수 '올 A+'준 과기대 교수...시험문제도 유출	인터넷신문
제2019-489호	조선닷컴	5월 27일	사회	아들한테 시험문제 빼내주고, 성적 A+준 국립대교수	인터넷신문

제2019-490호	주식회사 에스에쓰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9년 5월 1일자 사회면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하기도...“조두순 아저씨 놀러 오셨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만화가가 '조두순 사건'의 성폭력피해자 및 그의 가족을 소재로 하여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웹툰이 논란이 되어 사과문을 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웹툰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웹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고 가해 당사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웹툰의 소재로 사용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91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5월 16일자 사회면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풀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 김포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 살해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92호		주식회사 뉴스큐브
대상보도	뉴스큐브 2019년 5월 14일자 사회면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군인이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도구를 이용한 자해방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49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93호	전남일보	5월 14일	05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점유	지역일간지
제2019-494호	인터넷 전남일보	5월 14일	사회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인터넷신문
제2019-495호	the대한일보	5월 15일	8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지역일간지
제2019-496호	뉴시스	5월 14일	사회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뉴스통신
제2019-497호	노컷뉴스	5월 14일	지역	군 복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한 훈련병 집행유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498호	동아닷컴	5월 14일	사회	“울면서 지낸다” 여친 말 듣고 자해해 전역한 20대 집행유예	인터넷신문
제2019-499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14일	시사	“보고 싶다” 여친 호소에...자해 후 전역한 훈련병 집행유예	인터넷신문
제2019-500호	e머니에스	5월 14일	정치/사회	“보고 싶어” 여친 말에 훈련소서 자해한 뒤 전역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신문
제2019-501호	MTN	5월 14일	사회	“보고싶어 힘들다” 여자친구 통화 후 군 복무 기피 위해 자해한 20대 男 집행유예	인터넷신문

제2019-502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5월 17일자 ALL면 「강남 일대 ‘OOOO’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환각물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체포했다고 보도하면서 환각물질의 명칭, 제조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0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03호	뉴스1코리아	5월 17일	사회	서울 강남권 ‘OOOO’ 주의보...아레나 DJ 등 95명 검거	뉴스통신
제2019-504호	연합뉴스	5월 17일	최신기사	강남 일대 ‘OOOO’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뉴스통신
제2019-505호	뉴스파인더	5월 17일	사회	경찰, ‘OOOO’ 불법 유통업자·흡입자 대거 적발	인터넷신문
제2019-506호	인터넷 경향신문	5월 17일	사회	강남 주택가서 버젓이 ‘OOOO’ 95명 무더기 검거...BJ·군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507호	인터넷 금강일보	5월 17일	사회	‘OOOO’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08호	인터넷 한국일보	5월 17일	사회	버닝썬 와중에... 강남선 또 ○○○○ 흡입	인터넷신문
제2019-509호	파이낸스 투데이	5월 17일	사회	경찰, '○○○○' 유통·흡입 95명 검거...클럽 DJ에 운동선수 까지 다양	인터넷신문

제2019-510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5월 14일자 사회면 「“초5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어요”...단독서 제자 성희롱 교사 처벌 수위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직 교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발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발언을 부각하여 게재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11호	인터넷 서울신문	5월 13일	사회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어” 교육청,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 파악 중	인터넷신문
제2019-512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5월 14일	사회	“초5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어요”...단독서 제자 성희롱 교사 처벌 수위는?	인터넷신문

제2019-513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5월 24일자 사회면 「“XX에 침 놓으라” ○○대 ‘단톡방 성폭력’ 고발...“가해자들, 제2정준영 될라 걱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대학 한의학과와 일부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과 학생들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고발한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등이 독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14호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7일	사회	“회음 부항하면서...” ○○대 한의학과 단톡방 성희롱 의혹	인터넷신문

제2019-515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5월 15일자 핫이슈면 「“침대에선 엄마보다 네가 더 낫다”...5살짜리 딸 30년간 ‘성폭행’한 아빠가 한 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아버지의 성적발언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6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5월 9일자 사회면 「[단독] 현직 여경, 상관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직 경찰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성, 성별, 나이,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제목에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7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9년 5월 9일자 전국면 「용인서 30대 여경 숨진 채 발견…유족 “상사 때문에 힘들어 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직 경찰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성별, 나이,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18호	아유경제 (AU경제)	5월 9일	사회·문화	용인서 여성 경찰관 숨진 채 발견… “평소 상관 때문에 힘들어 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19호	인터넷 월요신문	5월 9일	사회	용인 ○○경찰서 “30대 여경 자택서 숨진 채 발견”...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520호	주식회사 새전북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새전북신문 2019년 5월 19일자 사회면 「난치병이 불러온 비극, 형 숨진채 발견... 동생은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유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내용으로 인해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2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21호	새전북신문	5월 20일	6	난치병이 불러온 비극	지역일간지
제2019-522호	전북중앙신문	5월 20일	4	희귀 난치병 앓던 형제 세상과 작별 '슬픈선택'	지역일간지
제2019-523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5월 19일	사회	희귀 난치병 앓던 형제 세상과 작별 '슬픈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9-524호	주식회사 중부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일보 2019년 5월 23일자 사회면 「포천 공장서 합성마약 '○○' 유통·투약한 외국인 근로자 무더기 적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사진 및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52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25호	중부일보	5월 24일	19(B)	1) 합성마약 '○○' 유통·투약 외국인 무더기 적발 2) 경찰에 압수된 ○○	지역일간지

제2019-526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5월 23일자 사회면 「“유산돼라, 이혼하게ㅋㅋ” 죽어서도 이혼 못 한 언니(인터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정폭력 관련 청원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언어폭력이 담긴 메시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보도하고, 일부를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27호	OTN뉴스
대상보도	OTN뉴스 2019년 4월 24일자 대전면 「요양병원 환자폭행 “대전에서도 발생” 되었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요양병원 노인 폭행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상처가 난 환자의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28호 아이앤비넷 주식회사	
대상 보도	노트펫 2019년 5월 17일자 사회면 「군산서 개 매달고 달린 봉고차 포착」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 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달리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2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 구분
제2019-529호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9일	사회	‘악마 에쿠스’ 악몽 또 ...이번엔 승합차가 개 매달고 달렸다	인터넷신문
제2019-530호	위키트리	5월 17일	-	“쇠줄에 묶여 힘겹게...” 군산서 개 매달고 운전한 차주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531호	인사이트	5월 16일	핫이슈	“전라도 군산 한 도로에서 봉고차에 목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532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5월 19일자 ALL면 「음식으로 고양이 꼬드겨 땅바닥에 ‘광’ 내리꽃은 학대범 (CCTV)」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 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33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9년 5월 12일자 국제면 「獨 호텔룸,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 석궁에 꿰뚫린채 죽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독일의 '석궁 사망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석궁에 맞은 고양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3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34호	인터넷 문화일보	5월 13일	국제	50대男과 30대女 2명 호텔서 석궁에 꿰뚫린 채...	인터넷신문

제2019-535호		주식회사 국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5월 21일자 국제면 「“빨리 내려”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노인 숨져(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버스 승객이 노인을 밀쳐 노인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3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36호	MBC-TV	5월 16일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 버스 승객이 밀어버린 노인 한달 만에 사망	방송
제2019-537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18일	국제	“친절하게 말해라” 조연한 노인 밀쳐 숨지게 한 20대 美 여성…보석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9-538호	주식회사 매일방송				
대상보도	MBN 2019년 5월 15일자 뉴스8 「“타다 물러가라”…택시기사 분신 사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택시 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CCTV 영상을 게재하고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39호	아이앤비넷 주식회사				
대상보도	노트펫 2019년 5월 27일자 해외면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땡!.. '네티즌 수사대 나섰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노출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0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5월 29일자 사회면 「좋아하는 남성 흥기로 찌르고 경찰 앞에서 담배 태우는 여성 (신주쿠 사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흥기에 찌려 혈흔이 남자 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노출된 현장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1호		주식회사 이비뉴스
대상보도	이비엔(EBN)뉴스센터 2019년 5월 22일자 「화폐개혁 이슈에 부동산 심리 '들썩'...집값 요동칠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화폐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42호	아주경제	5월 21일	02	이주열 “리디노미네이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중앙일간지

제2019-543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5월 2일자 문화면 「관객의 선택권 vs 시장 수요...스크린상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4호		주식회사 광주매스컴
대상보도	광주매일신문 2019년 5월 20일자 02면 「국민 80% _5·18왜곡처벌법 제정 필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45호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5월 19일	뉴스	국민 80% “5·18왜곡처벌법 제정 필요”	인터넷신문
제2019-546호	톱스타뉴스	5월 19일	사회	[이슈] 독일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5천만유로 벌금’ 사실?...5.18 왜곡 처벌법은?	인터넷신문

제2019-547호	뉴데일리 주식회사				
대상보도	뉴데일리 2019년 5월 21일자 IT·과학면 「세계보건총회에 쏠리는 게임업계의 눈... ‘장애·질병’ 등재 예의주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4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48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5월 19일	-	WHO총회에 ‘年 13조’ 게임산업 달렸다	인터넷신문
제2019-549호	문화뉴스	5월 14일	경제·사회	게임 중독도 질병?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장애’ 등재 앞뒀...	인터넷신문

제2019-550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국민일보 2019년 5월 27일자 29면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열린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51호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상보도	MBC-TV 2019년 5월 8일자 뉴스투데이 「[여론조사] 국민 60% “한국당 장외투쟁 멈추고 협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방송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5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52호	문화저널21	4월 30일	전체기사	패스트트랙 후폭풍···날카로워진 자유한국당 ‘말말말’	인터넷신문

제2019-553호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파이낸셜뉴스 2019년 5월 24일자 6면 「부모의 '체벌할 권리' 손본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체벌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5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54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23일	경제	부모의 '체벌할 권리' 손본다	인터넷신문

제2019-555호 주식회사 뉴스1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19년 5월 16일자 전국면 「현중 노사 '법인분할'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본사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56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 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5월 8일자 정치면 「국민 60%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찬성...추가부담 4000원 가장 선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재생에너지 사용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55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57호	스트레이트뉴스	5월 8일	경제	국민 절반 이상 전기요금 부담, 누진제 70% 이상 불만족	인터넷신문
제2019-558호	아시아경제닷컴	5월 8일	경제	“국민 60%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찬성...월 추가부담 4000원대 선호”	인터넷신문
제2019-559호	인터넷브리치경제신문	5월 8일	경제일반	국민 60%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찬성...추가부담 4000원 가장 선호	인터넷신문
제2019-560호	인터넷에너지경제	5월 8일	-	국민 절반이상,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찬성...추가부담 4000원 가장 선호	인터넷신문

제2019-561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 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9년 5월 28일자 일반면 「국민 60%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엑스레이 찍는다면 “병원으로”」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 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허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p> <p>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562호	한류타임즈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9년 5월 3일자 라이프면 「천안〇〇한방병원, 천안 〇〇〇에 승격 개원...한양방 협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 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56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63호	뉴스1코리아	5월 3일	산업	〇〇의료재단, 한양방 협진 천안〇〇한방병원 개원	뉴스통신
제2019-564호	뉴스스	5월 3일	사회	‘비수술 척추치료’ 천안〇〇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승격	뉴스통신
제2019-565호	doctor W	5월 3일	뉴스	천안〇〇한방병원, 천안 〇〇〇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66호	글로벌경제 신문	5월 5일	산업	천안〇〇한방병원, 천안 〇〇〇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67호	데일리메디팜	5월 3일	한방	천안○○한방병원, 천안 ○○○에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68호	이투데이	5월 3일	뉴스	천안○○한방병원, 3일 천안 ○○○에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69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5월 3일	뉴스	천안○○한방병원, 천안 ○○○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0호	인터넷 세계타임즈	5월 3일	건강/생활정보	천안○○한방병원, 천안 ○○○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1호	인터넷 천지일보	5월 3일	사회	천안○○한방병원, 천안 ○○○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2호	인터넷 한익신문	5월 3일	뉴스	“천안지역의 척추건강 주치의로 거듭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573호	헬스데이뉴스	5월 6일	의료계단신	천안○○한방병원, 천안 ○○○에 5월 3일 승격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4호	국제신문	5월 21일	24	50년 역사 ○○ 거점병원... 신경계 질환 대학병원급 진료 명성	지역일간지
제2019-575호	인터넷 국제신문	5월 20일	LIFE	○○병원, 50년 역사 ○○ 거점병원...신경계 질환 대학병원급 진료 명성	인터넷신문
제2019-576호	e-주간시흥	4월 27일	특집/기획	‘○○내과’ 첨단 검진시설 갖추고 ○○동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7호	조세금융신문	5월 2일	HEALTH & BEAUTY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 ○○○ 원장, ○○역 ○○○성형외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578호	주식회사 트랜스파이ना이트
대상보도	메디컬리포트 2019년 6월 25일자 일반기사면 「황○○, 마약동영상에 성관계 동영상까지? “옷 다 벗고 춤춰” 피해자가 여럿.. 박유천 마약 형량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마약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을 공개하고,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가 성관계 동영상 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p>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인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57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79호	내외경제TV	6월 5일	사회	○○○○ 외조카 황○○ ‘경찰청장이랑 베프’라더니..홍○○ ○○○○ 회장까지 사죄 나서 “경영엔 관계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580호	인터넷 세계일보	6월 5일	사회	황○○, 마약 투약 혐의 인정...“박유천과 함께 안했다”	인터넷신문
제2019-581호	인터넷 국제신문	6월 25일	뉴스	황○○, 조 로우와 친분 있었나? 조 로우 절친 디카프리오와 식사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582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보도	뉴시스 2019년 6월 10일자 연예면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배우의 미성년자 자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58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583호	내외경제TV	6월 10일	엔터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에 '시선 집중'	인터넷신문
제2019-584호	노컷뉴스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585호	뉴스엔	6월 10일	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루푸스 호전→남자친구와 핑크빛 투샷[SNS★컷]	인터넷신문
제2019-586호	뉴스웍스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셀프 웨딩 화보 공개 '화제'	뉴스통신
제2019-587호	뉴스인사이드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남자친구와 '셀프 웨딩' 공개... "희망을 준 남자친구님에게 박수를"	인터넷신문
제2019-588호	뉴스인코리아	6월 10일	-	故최진실 딸 최준희, 루푸스 호전→남자친구와 핑크빛 투샷[SNS★컷]	인터넷신문
제2019-589호	뉴스컬처	6월 10일	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깜짝 셀프 웨딩 사진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590호	뉴스투데이	6월 10일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셀프웨딩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591호	더 셸럽	6월 10일	스타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올해 나이 17살에 '셀프웨딩'을? [셀럽샷]	인터넷신문
제2019-592호	더팩트	6월 10일	연예	최준희, 17세에 남자친구와 셀프 웨딩... "우리 공주님"	인터넷신문
제2019-593호	데일리안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594호	디오데오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면사포 쓰고 남친과 다정 모습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595호	문화뉴스	6월 10일	뉴스	최준희, 벌써 '셀프 웨딩'을?...남자친구는 누구? 몇 살이길래? '시선 집중' '대박'	인터넷신문
제2019-596호	미디어펜	6월 10일	연예·스포츠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597호	브레이크뉴스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남자친구와 셀프 웨딩 사진 공개..17세에 결혼?	인터넷신문
제2019-598호	서울와이어	6월 10일	방송/연예/스포츠	최준희 '이런 모습 처음이야'...결혼 실화? 네티즌 '갑론을박'	인터넷신문
제2019-599호	인터넷 세계일보	6월 11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셀프 웨딩 사진' 과잉 보도 경쟁 논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00호	스타뉴스	6월 10일	방송	'故최진실 딸' 최준희, 17세에 결혼? 셀프웨딩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601호	스타데일리뉴스	6월 10일	피플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02호	스포츠Q	6월 10일	엔터테인먼트	최진실 딸 최준희 남자친구와 셀프웨딩 논란 왜?	인터넷신문
제2019-603호	스포츠니어스	6월 10일	연예	'웨딩 사진 공개'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앓고 있는 루푸스병이란?	인터넷신문
제2019-604호	스포츠투데이 M	6월 10일	연예	최준희, 루푸스병·열애 고백→건강 회복→연인과 셀프 웨딩 공개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605호	시선뉴스	6월 10일	대중문화	최진실 딸 최준희, 달달한 남자친구와의 일상 담긴 '럽스타그램' 눈길	인터넷신문
제2019-606호	싱글리스트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남자친구와 행복한 한때	인터넷신문
제2019-607호	씨앤비뉴스	6월 10일	-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양, '남자친구와 웨딩사진' 공개...덧글 불만도 드러내 '왜'	인터넷신문
제2019-608호	아시아경제닷컴	6월 10일	연예스타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609호	아시아뉴스통신	6월 10일	문화/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올린 상대 남자친구 김범은 누구?...루푸스병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까지	뉴스통신
제2019-610호	아시아투데이닷컴	6월 10일	연예·스포츠	'故최진실 딸' 최준희, 웨딩사진 공개..."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11호	업코리아	6월 13일	핫이슈	'셀프 웨딩' 최준희는 지난 2월 루푸스 전신...	인터넷신문
제2019-612호	엑스포츠뉴스	6월 10일	국내연예	"♥보다 값진 건 없어"...최준희, 남친과 셀프웨딩 놓고 '갑론을박'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613호	오늘경제	6월 10일	라이프	최준희 갈수록 여신 미모, 세련되고 예뻐 '인기폭발' 여러여리해...오늘도 시선올킬	인터넷신문
제2019-614호	인터넷울산종합일보	6월 10일	연예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나"...최준희의 옆자리 지켰던 한 사람의 정체	인터넷신문
제2019-615호	위키리크스 한국	6월 10일	컬처	최준희, '셀프 웨딩'에 '시선 집중' 남자친구는 몇 살이길래? "우리 공주님♥"	인터넷신문
제2019-616호	이투데이	6월 10일	연예/스포츠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샷 논란에 "사람 관중 만들지 말라" 분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17호	인사이트 코리아	6월 13일	ENTERTAINMENT	'셀프 웨딩' 공개된 사진속 최준희는 하얀 원피스에...	인터넷신문
제2019-618호	인터넷 경남매일	6월 10일	핫이슈	양극화 반응 일어난 최준희...“고작 열일곱 소녀, 그만하라” 불편한 여론	인터넷신문
제2019-619호	인터넷 경북신문	6월 10일	핫이슈	최준희, '벌써 셀프 웨딩?'...남자친구 몇 살이길래 "우리 공주님♥"	인터넷신문
제2019-620호	인터넷 경인일보	6월 10일	연예	최준희 "남자친구 덕분에 루푸스병 호전", 셀프 웨딩사진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621호	인터넷 대구일보	6월 10일	연예	최준희 "왜 마음대로 퍼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욕먹게 하는지"...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9-622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6월 10일	종합뉴스	'어머내!' 최준희, 지금 뭐하고 있나 보나...남친의 다부진 체격과 출중한 용모 '눈길'	인터넷신문
제2019-623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6월 10일	문화·스포츠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남친과 셀프웨딩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24호	인터넷 무등일보	6월 10일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남자친구와 셀프 웨딩?...“나를 또 기사로 쓰는 기자, 쓸거리 없냐”	인터넷신문
제2019-625호	인터넷 문화일보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26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6월 10일	문화	최진실 딸 셀프웨딩,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27호	인터넷 서울경제	6월 10일	TV방송	[SE★PIC] 최진실 딸 최준희, 깜짝 '셀프웨딩' 공개..남자친구와 '보보'	인터넷신문
제2019-628호	인터넷 스타트업투데이	6월 13일	라이프	'셀프 웨딩' 같은 날 최준희의 남자친구 역시...	인터넷신문
제2019-629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결혼 계획?	인터넷신문
제2019-630호	인터넷 시민의소리	6월 10일	연예	최준희,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화제...루푸스병 투병중	인터넷신문
제2019-631호	인터넷 시민일보	6월 11일	핫이슈	'최진실 딸'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남자친구와 깜짝 셀프 웨딩 셀피 '눈길'	인터넷신문
제2019-632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6월 13일	투데이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지난 9일 최준희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33호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6월 10일	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34호	인터넷 아주경제	6월 10일	-	남친과 달달화보 최준희 “가족 사랑 부족해 남친에 의지한다” 발언 조명	인터넷신문
제2019-635호	인터넷 영남일보	6월 10일	문화	17세 최준희, 면사포 쓴 채 부케 들고 남친과 셀프웨딩?	인터넷신문
제2019-636호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9-637호	인터넷 인천일보	6월 14일	라이프	‘최진실 딸’ 앞서 지난 2월 루푸스 투병…	인터넷신문
제2019-638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6월 10일	연예	”사람을 관종으로 만들어” 최준희, 남친과 사진 공개→분노	인터넷신문
제2019-639호	인터넷 일요시사	6월 10일	오늘의 이슈	예복 입은 최준희♥남자친구, 럽스타그램 포착…온통 연인 사진뿐 “사랑하는 공주님”	인터넷신문
제2019-640호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6월 10일	스포츠/연예	최준희, 셀프 웨딩 화보? “사람 관종 만들었다. 루푸스 재발할 정도”	인터넷신문
제2019-641호	인터넷 제민일보	6월 10일	연예	미성년자 최준희, 연인과 예복 입고 콧잔등 키스…“사랑하는 공주님♥” 애정 가득	인터넷신문
제2019-642호	인터넷 중도일보	6월 10일	핫클릭	최진실 딸 셀프웨딩, ‘시선 집중’…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43호	인터넷 천지일보	6월 10일	연예	최준희 남자친구와 셀프웨딩 화보?... 나이 ‘깜짝’	인터넷신문
제2019-644호	인터넷 축산신문	6월 12일	방송/연예	‘최진실 딸’ 무엇보다 두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코…	인터넷신문
제2019-645호	인터넷 충청리뷰	6월 10일	방송·연예	최준희, 최진실 딸 셀프웨딩 사진 ‘눈길’	인터넷신문
제2019-646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 제	6월 10일	엔터	최준희, 웨딩 화보 악플에 네티즌 “누가 준희한테 돌을 던지나”	인터넷신문
제2019-647호	인터넷365	6월 10일	생활의 발견	최준희, 남자친구와 드라마틱한 일상 “사랑보다 값진 건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648호	전자신문인터 넷	6월 10일	핫이슈	최진실 딸 셀프웨딩, 최준희 엄마 웨딩 패러디? ‘알콩♥’	인터넷신문
제2019-649호	제주교통복지 신문	6월 13일	핫이슈	‘故최진실 딸’ 최준희는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愛より貴いものはない…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50호	조이뉴스24	6월 10일	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51호	청년일보	6월 10일	방송/연예/스포츠	최준희 셀프웨딩, 누구나 꿈꿔볼법한 상황 속 ‘꽃뿔함’	인터넷신문
제2019-652호	쿠키뉴스	6월 10일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53호	텐아시아	6월 10일	핫이슈	‘최진실 딸’ 17살 최준희, 남자친구와 웨딩 사진? 부케에 베일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654호	투스타뉴스	6월 10일	-	[리뷰]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루푸스병 함께 이겨낸 남자친구와 ‘셀프웨딩 사진’	인터넷신문
제2019-655호	티브이데일리	6월 10일	방송	루푸스병 딴은 최준희 “남자친구 인스타화, 왜 눈치보아야 해?”	인터넷신문
제2019-656호	티비리포트	6월 10일	스타	‘최진실 딸’ 최준희, 루푸스병 정상수차→남친과 셀프웨딩...응원ing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657호	한경닷컴	6월 10일	연예	故 최진실 딸 최준희, 17살의 웨딩스냅...남자친구와 코 보보	인터넷신문
제2019-658호	한국정책신문	6월 10일	연예·스포츠	최진실 딸 셀프 웨딩, 준희는 지금 엄청 행복합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659호	화이트페이퍼	6월 10일	라이프	최진실 딸 최준희 웨딩사진 공개...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60호	enews24	6월 10일	뉴스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SNS]	인터넷신문
제2019-661호	e글로벌이코 노믹	6월 10일	-	‘최진실 딸’ 최준희, 나이 17세 동갑내기 남친과 셀프웨딩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662호	e머니에스	6월 10일	연예	故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웨딩... 결혼하나?	인터넷신문
제2019-663호	e머니투데이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부모님 결혼사진 본뜬 ‘셀프웨딩’ 사진 화제	인터넷신문
제2019-664호	mk스포츠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셀프웨딩...누리꾼 “최준희 하고싶은거 다해”VS“평범하게 살았으면”	인터넷신문
제2019-665호	MTN	6월 10일	연예	최진실 딸 최준희, 셀프 웨딩 사진 콘셉 공개?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666호	SBNNEWS 서해신문 서해방송	6월 13일	방송/연예	‘웨딩사진 논란’ 최준희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신문
제2019-667호	STN SPORTS	6월 10일	연예	[해시태그#]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남친과 셀프웨딩 사진 당당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668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6월 11일자 사회면 「고유정 졸업사진+전남편에 “과거 CC였다”? 살해이유는? ○○○+분쇄기 살해방법에 “따라할까 겁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유정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인 전(前) 남편의 결혼 전 교제, 이혼, 피의자의 가정환경, 졸업사진 등을 공개하고 살해 방법, 범죄에 사용된 악물의 치사량 등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범행 수법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69호		주식회사 에스에쓰미디어판
대상보도	뉴스인사이드 2019년 6월 11일자 사회면 「고유정 전 남편 살해방법 의문 풀리나.. ‘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 뭐길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유정 사건’의 살해방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6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70호	내외뉴스통신	6월 16일	오늘의 핫뉴스	고유정, 전 남편 살해방법으로 사용된 '○○'은 무엇?	뉴스통신
제2019-671호	이코노미톡뉴스	6월 20일	라이프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살해 용도로 쓰인 ○○○은 어떤 약품?	인터넷신문
제2019-672호	인터넷 시민일보	6월 12일	핫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방법으로 사용된 '○○'... '강간 약물'로도 불려	인터넷신문

제2019-673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일보 2019년 6월 10일자 연예면 「수사 들어간 ○○○ 매니저, 과거 TV에 출연... 보살피는 줄 알았는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매니저가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니저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7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74호	부산닷컴	6월 10일	-	○○○ 어머니, 생전 거액사기 의혹 매니저 김○○과 재계약 맺지 않은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675호	인터넷 매일신문	6월 10일	법원,검찰	○○○ 매니저와 함께 출연한 인간극장 언제 방송? 매니저 이름은?	인터넷신문

제2019-676호		뉴스파고			
대상보도	뉴스파고 2019년 6월 4일자 파고뉴스면 「처제성폭행 '짐승형부' 전 ○○당 ○○○ 청년위원장 항소 취하...징역 13년 확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처벌을 성폭행한 모 정당의 전(前) 청년위원장에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성, 전 소속 정당, 지역구, 직책 및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관계인 성폭력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77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6월 23일자 사회면 「에스컬레이터 탄 여성 치마 훔쳐보는 남성 포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78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6월 6일자 사회면 「[사건 돌아보기] 조두순 사건의 전말과 나영이 현재 상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두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679호		주식회사 오토데일리
대상보도	오토데일리 2019년 6월 20일자 영상&포토면 「[영상] 차알못 김여사도 이제 걱정 끝! 혼내진동 티볼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신형 자동차 출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운전자를 뜻하는 ‘김여사’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 및 영상에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표현에 해당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7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80호	스포츠조선 닷컴	6월 12일	사회	제천 김여사? 승용차 약국 돌진... 운전미숙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9-681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6월 8일자 핫이슈면 「“제 동생 향문에 소주병 꽂고 라이터로 고문한 ‘제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주세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그 일부를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68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82호	뉴데일리	6월 18일	충북	집단폭력·여중생 성폭행 등 '얼룩진 제천교육계'	인터넷신문
제2019-683호	뉴스1코리아	6월 14일	전국	충북교육청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가해자 8~9명 추정"	뉴스통신
제2019-684호	뉴스투데이	6월 11일	라이프	제천 학교폭력 청원글 "소주병으로 유사강간.. 발가락에 휴지 꽃아 불까지 붙여"	인터넷신문
제2019-685호	동아닷컴	6월 14일	사회	충북교육청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가해자 8~9명 추정"	인터넷신문
제2019-686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12일	사회	"유사강간 후 '보험금으로 효도해' 조롱... 그 부모는 '판단 잘하라'더라"	인터넷신문
제2019-687호	인터넷 동양일보	6월 10일	사회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 국민청원도 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19-688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6월 9일	라이프	"지울 수 없는 흉터 만들어"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 강간 피해 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제2019-689호	인터넷 중부매일	6월 9일	사회	피해학생 누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인터넷신문
제2019-690호	인터넷 충북일보	6월 9일	사회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파문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9-691호	조선닷컴	6월 10일	사건사고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논란 파문...경찰 진상조사 나서	인터넷신문
제2019-692호	충북인뉴스	6월 9일	사회·교육	"발가락사이 휴지 꽃아 불붙여"	인터넷신문
제2019-693호	충북일보	6월 10일	3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피해 파문	지역일간지
제2019-694호	톱스타뉴스	6월 12일	사회	[이슈] 충북 제천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에 이어 교사 '성폭력'까지... '무너진 교육 현장'	인터넷신문
제2019-695호	디스패치뉴스	6월 9일	All	"제 동생 향문에 소주병·담배 꽃고 폭행한 학생들을 처벌해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9-696호	한강타임즈	6월 10일	사회	[한강T-이슈] '제천 학교폭력' 소주병 성적 수치심·화상까지.. 학교 측 은폐 의혹에 파장 커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697호	e머니에스	6월 10일	사회	“소주병과 칫솔 꽂고...” 제천 학교폭력 청원에 누리꾼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9-698호	e머니투데이	6월 10일	뉴스	제천 학교폭력 靑 청원 “남동생 유사강간까지...”	인터넷신문

제2019-699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6월 28일자 사회면 「군대 안가려 5개월 채소·과일만...SNS 자랑하다 딱걸린 20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의로 체질량 지수 수치를 낮추는 방법, 멀미 예방 패치를 사용해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방법 등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00호	OM뉴스
대상보도	OM뉴스 2019년 6월 1일자 정치·경제·사회면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나이, 소속, 직책, 모 지역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0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01호	내외뉴스통신	6월 3일	전국	○○문화재단 신임 사무국장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	뉴스통신
제2019-702호	뉴스1코리아	6월 1일	대전·충남	○○ 문화재단 신임 사무국장, 실종 13일만에 숨진채 발견	뉴스통신
제2019-703호	뉴스스	6월 1일	대전/충남	○○문화재단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종합)	뉴스통신
제2019-704호	대전일보닷컴	6월 2일	충남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05호	디트news24	6월 1일	사회	○○문화재단 신임 사무국장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06호	아시아뉴스통신	6월 1일	사회	[속보] ○○문화재단 선임된 A사무국장...씨늘한 시신으로 발견	뉴스통신
제2019-707호	인터넷 굿모닝충청	6월 1일	사회	[속보] 실종 ○○시청 전 사무관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08호	인터넷 동양일보	6월 2일	사회	○○지역 사건·사고 잇따라 발생	인터넷신문
제2019-709호	인터넷 중도일보	6월 1일	천안시	○○문화재단 신임 사무국장 내정자 결국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10호	인터넷 충청리뷰	6월 2일	사회	○○문화재단, 6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 왜?	인터넷신문
제2019-711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6월 2일	사회	○○문화재단 임용 앞두고 실종 전 ○○시 사무관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12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일	사회	실종됐던 전 ○○시청 사무관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713호	충청신문	6월 3일	6	○○문화재단 사무국장,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9-714호	충청타임즈	6월 3일	3	○○문화재단 임용 앞두고 실종 전 ○○시 사무관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9-715호	충청투데이	6월 3일	6	실종된 전 ○○시 사무관, 숨진 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19-71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6월 7일자 핫이슈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안락사’로 직접 끝내며 가족들에게 ‘미소’ 지은 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투병 생활 끝에 안락사를 택했다고 보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안락사’로 직접 끝내며 가족들에게 ‘미소’ 지은 여성”, “잠에 빠져들 듯 세상을 떠났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상 및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17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톱스타뉴스 2019년 6월 12일자 사회면 「[이슈] ‘갈 때까지 간 YG’ 아이콘(iKON) 비아이(김한빈), 디스패치 공개→마약 의혹 카톡 “너랑은 같이 해봤으니깐, 난 천재되고 싶어서 하는거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사용량, 사용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18호	인사이트	6월 12일	핫이슈	‘비아이 투여 의혹’ 일어난 마약 ‘○○○’를 복용한 여성이 그린 자화상 변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19호	인터넷 입법국정 전문지 더 리더	6월 11일	인물 포커스	윤흥희 위원장, “상습·단순 마약범 나눠 처벌해야”	인터넷신문
제2019-720호	더 셸럽	6월 12일	문화/사회	마약류 ○○○란 무엇? 환각효과 ‘코카인 100배·필로폰 300배’	인터넷신문
제2019-721호	동아닷컴	6월 12일	사회	비아가 사고싶다 한 마약 ‘○○○’ 무엇?...환각효과, 필로폰 300배	인터넷신문
제2019-722호	스타뉴스	6월 12일	KPOP	비아이, 구매 의혹 마약 ‘○○○’ 무엇? 환각효과 필로폰 300배	인터넷신문
제2019-723호	시선뉴스	6월 13일	사회일반	강력한 환각제, 논란의 마약...○○○란?	인터넷신문
제2019-724호	위키트리	6월 14일	엔터	“비아이, 천재 되고파” 다른 마약보다 ‘○○○’가 더 위험한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725호	인터넷 이데일리	6월 12일	연예	아이콘 비아이 마약 의혹 ‘○○○’ 무엇? 필로폰 300배 환각효과	인터넷신문
제2019-726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6월 17일	뉴스	유명아이돌 ○○○구매 의혹?... 사실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돼	인터넷신문
제2019-727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6월 14일	포토	[카드뉴스] ‘이승훈-한○○-비아이’, 카톡 속 등장한 은밀한 용어4	인터넷신문

제2019-728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6월 27일자 국제면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칵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29호	아이앤비넷 주식회사
대상보도	노트펫 2019년 6월 27일자 사회면 「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남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죽이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2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30호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7일	사회	“바닥에 무참히 패대기...” 길고양이 학대 CCTV 영상 공분	인터넷신문
제2019-731호	위키트리	6월 29일	-	사람을 좋아해서 다가간 길고양이 바닥에 패대기 친 학대범	인터넷신문

제2019-732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6월 6일자 핫이슈면 「‘살충제’ 뿌려진 물 마셨다가 허망하게 죽은 아기 코끼리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코끼리가 살충제 중독으로 죽었다고 보도하면서 코끼리 사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33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6월 22일자 국제면 「젓소 몸통에 ‘손 드나드는 구멍’…기괴한 동물실험에 佛 ‘발각’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젓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3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34호	인사이트	6월 21일	햇이슈	프랑스 동물실험 농장에서 옆구리 ‘구멍’ 뚫린 채 우유 생산하는 젓소들	인터넷신문

제2019-735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6월 9일자 국제면 「미국 발각 뒤집은 송아지 농장 학대(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송아지 농장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36호	뉴스프리존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19년 6월 12일자 포토뉴스면 「보수당의 반대로 15년째 ‘잡자는’ 국회의원 소환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3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37호	the대한일보	6월 13일	03	靑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지역일간지
제2019-738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6월 14일	-	“타결될 듯 말 듯”...국회 정상화 막판 고비 넘을까	인터넷신문
제2019-739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11일	시사	한 달 넘게 국회 문닫고 네 탓 하는 여야... “국민소환제 하자”	인터넷신문

제2019-740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9년 6월 11일자 정치면 「여론 반발 커지자... 靑 “김원봉 서훈 불가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김원봉 서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 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p>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741호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위클리오늘 2019년 6월 22일자 산업면 「김명환 위원장 구속... 민주노총 “총파업 불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42호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서울 2019년 6월 10일자 8면 「지연되는 국가직 전환에 애타는 소방관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4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43호	일요서울	6월 7일	정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전직 경찰' 손에 달렸다	인터넷신문
제2019-744호	G1TV	6월 10일	G1 8 뉴스	[G1 8 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구'	방송

제2019-745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6월 14일자 스포츠면 「'축구 결승전' 앞두고 있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우승하면 군면제는 어떻게 되나? '사상초유의 일이라 예상 불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45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46호	내외경제TV	6월 14일	연예스포츠	'축구 결승전' 코 앞인데, 우승해도 선수들 군면제 못받는다고?..'대체 기준이 뭐야'	인터넷신문

제2019-747호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녹색경제신문 2019년 6월 10일자 We코노미면 「○○한방병원, 신관 개관으로 243개 병상 규모 한방병원으로 변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 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74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48호	뉴스포인트	6월 25일	News Brief	○○○ ○○○ 원장 “확장 이전 통해 고품격 의료서비스 선보일 것”	인터넷신문
제2019-749호	온라인 중앙일보	6월 7일	독자 서비스	[치아愛 날] 3D 모의수술 거친 최적 치료법 ... 무결점 임플란트 시술 도전	인터넷신문
제2019-750호	인터넷 중도일보	6월 10일	전국	인천 ○○병원, 수술환자 대상 “쌈케어” 서비스 실시	인터넷신문
제2019-751호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6월 20일	라이프	○○○성형외과, 다음달 ○○역 인근으로 신사옥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752호	인터뷰365	6월 24일	생활경제	○○○성형외과, ○○역에 새 동지 튼다.. 7월 1일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753호	인터뷰365	6월 7일	생활경제	○○○성형외과 비만센터	인터넷신문
제2019-754호	인터뷰365	6월 20일	생활경제	청주 ○○○○정형외과 개원...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중점진료	인터넷신문
제2019-755호	뉴스스	6월 10일	산업	○○한방병원, 신관 오픈...지상 16층, 지하 5층	뉴스통신
제2019-756호	동아닷컴	6월 26일	IT/의학	100평대 숲속 쉽터-산소방 등 갖춘 한·양방 ‘○○한방병원’ 신관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757호	동아일보	6월 26일	C6	100평대 숲속 쉽터-산소방 등 갖춘 한·양방 ‘○○한방병원’ 신관 오픈	중앙일간지
제2019-758호	매경닷컴	6월 19일	IT·과학	[의료] 고주파치료서 실내숲까지...○○한방병원 신관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759호	메트로신문	6월 10일	사회	○○한방병원, 신관 오픈.. 대학병원급 시설 갖춰	인터넷신문
제2019-760호	문화일보	6월 11일	21	○○한방병원 신관 오픈... 한·양방 협진해 암치료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61호	서울비즈	6월 20일	-	○○한방병원, 143개 병상 규모의 신관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762호	인터넷 세계일보	6월 17일	전국	○○한방병원 신관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763호	세계일보	6월 17일	21	○○한방병원 신관 개원	중앙일간지
제2019-764호	인터넷 문화일보	6월 11일	사회	○○한방병원 신관 오픈... “한·양방 협진해 암치료”	인터넷신문
제2019-765호	인터넷 세계로컬 타임즈	6월 17일	로컬&와이드	○○한방병원 신관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766호	인터넷 이데일리	6월 10일	뉴스	○○한방병원, 오늘(10일) 신관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767호	인터넷 한국일보	6월 10일	라이프	한·의학 통합 암 치료하는 ○○한방병원, ○○○○역 인근에 신관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76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6월 10일	일반	○○한방병원, 환자 위한 최적 시스템 갖춘 신관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769호	조선닷컴	6월 25일	특집섹션	“환자 편의 최우선”... ○○한방병원 신관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770호	조선일보	6월 25일	C3	환자 편의 최우선... ○○한방병원 신관 개원	중앙일간지

제2019-771호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대상보도	인터넷 시사저널 2019년 7월 12일자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그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일명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가해자의 직장, 직업, 혼인관 계, 자녀 수, 불륜, 친자확인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7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72호	시사포커스	7월 19일	사회	[단독] 베트남 여성 폭행 남자 전처, “베트남 돌아가지 않으면 소송 불사”	인터넷신문

제2019-773호		쿠키미디어 주식회사			
대상보도	쿠키뉴스 2019년 7월 7일자 사회면 「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 영상 확산… 가해 남성 긴급체포(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일명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7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74호	e머니투데이	7월 7일	뉴스	[영상]울부 짓는 아들 앞에서 주먹으로…베트남 여성 폭행한 남편	인터넷신문

제2019-775호		주식회사 디지털미디어랩			
대상보도	내외경제TV 2019년 7월 10일자 사회면 「황○○ 징역2년에 ‘박유천은 집행유예인데’.. “아빠가 경찰총장과 베프” 안통했나, 직업 뭐길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과 추징금 구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부모의 실명, 이혼 사실, 부친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공개하였다.				

	<p>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인 당사자의 초상 및 가족의 신원, 부모의 이혼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77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76호	메디컬리포트	7월 2일	일반기사	"마약 되게 좋아한다" 박유천 징역, 황○○ 근황은? 나체 사진 보내며 "안오면 뿌릴거야"	인터넷신문
제2019-777호	에이아이 타임스	7월 10일	LIFE	황○○ 징역 2년-박유천 집행유예, 인스타그램 근황은? "경찰청장과 베프"라는 아버지 직업은?	인터넷신문
제2019-778호	디스패치뉴스	7월 29일	All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린다" 출소 후 근황 알린 황○○	인터넷신문
제2019-779호	마이데일리	7월 29일	-	'마약 혐의' 황○○, 출소 후 SNS 재개→심경 밝혀...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린다"	인터넷신문
제2019-780호	문화뉴스	7월 19일	엔터테인먼트	마약투약, 박유천과의 열애... 황○○ 직업은?	인터넷신문
제2019-781호	비즈엔터	7월 19일	엔터'톡'	法, 황○○ 집행유예 이유? #단순투약 #반성 #전과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782호	서울와이어	7월 19일	방송/연예/스포츠	'마약 투약 혐의' 황○○-정석원, 엇갈린 재판 결과 이유는? "백 있고 백 없고 차이?"	인터넷신문
제2019-783호	인터넷 무등일보	7월 19일	테마뉴스	황○○, 마약 벗어나려는 진심의 오열 눈길 "약물중독·식이장애 올 때 내가..."	인터넷신문
제2019-784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7월 19일	문화	황○○-정석원, "백 있고 백 없고의 차이?"...마약 혐의 엇갈린 재판 결과 왜?	인터넷신문

제2019-785호		주식회사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대상보도	뉴스브라이트 2019년 7월 19일자 「황○○ 아버지 직업은? 10년 전 이혼, 어머니 서○○ 대표와 '재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창업주의 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당사자 부모의 실명, 이혼 사실, 부친의 근무처 및 직위, 모친의 재혼 사실, 모친과 재혼한 자의 실명, 직장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인 당사자의 가족의 신원, 부모의 이혼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8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86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10일	-	'징역 2년 구형' 황○○...'금수저' 딸 줄줄이 마약 하나	인터넷신문

제2019-787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9년 7월 8일자 사회면 「“고양이에 가혹행위...처벌해 주세요” ○○○고 학생들 국민청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소속 학교명, 직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78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788호	노컷뉴스	7월 9일	사회	이번에는 쇠파이프로 고양이 중상, 잇따르는 동물학대	인터넷신문
제2019-789호	대전MBC 뉴스	7월 9일	뉴스투데이	“고양이 쇠파이프로 때려” ○○○고 학생들 국민청원	방송
제2019-790호	연합뉴스	7월 8일	최신기사	“새끼 낳은 길고양이 때려 중상…가해자 처벌해 주세요”	뉴스통신
제2019-791호	디스패치뉴스	7월 8일	all	“새끼 낳은 길고양이 때려 중상…가해자 처벌해 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19-792호	스포츠조선닷컴	7월 8일	사회	“고양이에 가혹행위…처벌해 주세요” ○○○고 학생들 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제2019-793호	아이뉴스24	7월 9일	사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미 고양이 쇠파이프로 때려” 청원…경찰 조사 중	인터넷신문
제2019-794호	우리들뉴스	7월 9일	교육	○○○고 경비 ‘고양이 학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인터넷신문
제2019-795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1일	시사	새끼 낳은 길고양이 때려 직위해제 된 80대 여교 경비원	인터넷신문
제2019-796호	인터넷 대전일보	7월 9일	사건·법조	대전·충남에서 동물 학대 잇따라 발생	인터넷신문
제2019-797호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1일	사회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	인터넷신문
제2019-798호	조선닷컴	7월 8일	사회	靑 국민청원 “고양이 쇠파이프로 때리고 꼬리 잡고 던져…엄벌 촉구”	인터넷신문
제2019-799호	한경닷컴	7월 8일	사회	“고양이에 가혹행위…처벌해 주세요” ○○○고 학생들 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제2019-800호	한국경제TV	7월 8일	뉴스	“새끼 낳은 어미고양이를 폭행하다니”…○○○고 학생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제2019-801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7월 18일자 사회면 「역대 최대 37명, 말레이 불법 온라인도박 한국인 일당 송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02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9년 7월 9일자 외교·안보면 「北 목선 입학 당일 오후 초소 근무병 휴대폰서 “군 생활 힘들다” 유서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북한 목선 입학 당일 초소 근무병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의 초상 및 자살한 초소 근무병의 성과 나이, 소속, 계급, 근무 소초 등을 공개하여 북한 선원들과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03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일보 2019년 6월 26일자 6면 「연료 1000리터 필요…커지는 북 목선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북한 목선 입항 경로와 목적 등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0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04호	인터넷 미래한국	7월 11일	국제·안보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인터넷신문

제2019-805호		주식회사 전민일보
대상보도	전민일보 2019년 7월 10일자 6면 「설계 지식, 사기 악용' 11억 편취한 보험설계사 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보험설계사가 벌인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기수법에 사용된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 보험료 납부 기간 등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0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06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9일	사회	설계하며 얻은 지식 보험사기로 악용'...지인들과 공모 11억 편취한 보험설계사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9-807호	전주매일	7월 10일	4	허위 보험 계약체결로 수당 챙겨	지역일간지
제2019-808호	뉴스1코리아	7월 9일	전국	종신보험 가입 후 해지...수십억 수당 챙긴 보험설계사	뉴스통신
제2019-809호	뉴스스	7월 9일	사회	허위 보험 계약체결로 수당만 11억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구속'	뉴스통신
제2019-810호	브레이크뉴스	7월 9일	사회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모집수당 11억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9-811호	위키트리	7월 9일	사회	"보험료 대납할테니 가입만 해줘"	인터넷신문
제2019-812호	인터넷 경향신문	7월 10일	사회	지인 64명에게 종신보험 가입시켜 수당 11억원 갈취한 보험설계사	인터넷신문
제2019-813호	인터넷 새전북신문	7월 9일	사회	종신보험 가입 후 해지 방법으로 수십억 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9-814호	인터넷 세계일보	7월 10일	사회	보험료 '돌려막기'로 11억 챙긴 40대 구속	인터넷신문
제2019-815호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7월 9일	사회	종신보험 가입 후 해지 방법으로 수십억 챙긴 보험설계사 검거	인터넷신문

제2019-816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7월 18일자 사회면 「[이슈&탐사]“큰 손 여러 명 걸렸다” 범죄사업된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스테로이드 불법유통에 대해 보도하면서 판매 가격, 판매 수익, 유통 방법, 유통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 등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17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6월 30일자 연예면 「전미선 “박○○과 ‘한 달 계약연애’ 시작해 결혼” 남편과 인연 ‘재조명’」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와 배우자간의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비록 유명인의 자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자살자 유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18호	내외경제TV	7월 1일	방송·연예	배우 전미선, 남편 박○○ “같은 일 해서 도움받을 줄 알았는데...” 자살 루머 속출... 빈소 톱스타 조문 행렬	인터넷신문
제2019-819호	뉴스브라이트	7월 16일	문화·연예	전미선 남편 누구? 연애 한 달도 하기 전에 결혼 “유부남 같았다”	인터넷신문
제2019-820호	뉴스인사이드	6월 30일	연예	고 배우 전미선, 결혼한 남편 박○○은 누구? 영화 ‘연애’ 촬영감독...“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인터넷신문
제2019-821호	뉴스타운	6월 29일	오늘의 이슈	박○○ 아내 극단적 선택 추정...유족 충격 커 “사랑해요”란 문자 빼놓지 않았는데”	인터넷신문
제2019-822호	더 셉템	6월 29일	연예	전미선, 사망 소식에 네티즌 애도...남편 박○○ 감독에 위로 물결	인터넷신문
제2019-823호	데일리그рид	6월 29일	방송·통신	남편 박○○에 칭찬 일색...“누가 더 착한지 경쟁하려 결혼?” 농담도	인터넷신문
제2019-824호	스포츠Q	6월 29일	엔터테인먼트	배우 전미선 사망... 남편 박○○부터 배우 이서림까지 ‘주목’	인터넷신문
제2019-825호	인터넷 공감신문	7월 1일	생활·문화	배우 전미선 빈소, 톱스타 조문 행렬...남편 박○○ “같은 일 해서 도움받을 줄 알았는데...” 자살 루머 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26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일	생활	“현장서 만나 계약 연애” 故 전미선이 전한 남편 박○○	인터넷신문
제2019-827호	인터넷 국제신문	7월 2일	사회	故 전미선 “남편과 계약 연애로 시작…임신 때 한두 번 본게 전부”	인터넷신문
제2019-828호	인터넷 매일신문	6월 30일	연예	故전미선 남편, 박○○ 감독 누구?나이는?	인터넷신문
제2019-829호	부산닷컴	6월 29일	-	전미선, 극단적 선택… 남편 촬영감독 박○○, 영화 ‘연애’서 만나 결혼	인터넷신문
제2019-830호	인터넷 서울신문	6월 29일	스타요즘	배우 전미선 사망, 남편은 영화 ‘연애’서 만난 박○○ “존경했다”	인터넷신문
제2019-831호	스포츠한국	6월 29일	연예	故 전미선, 남편 박○○ “존경하는 연기자였다” 남달랐던 부부에	인터넷신문
제2019-832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6월 29일	Visual	‘박○○ 아내’ 故 전미선, 늦은 새벽 확인된 통화내역有…“욕실에 누워 호흡無” 탄식	인터넷신문
제2019-833호	인터넷 전기신문	6월 29일	전기문화	박○○ 아내, 극단적 선택 추정…“‘사랑해요’란 말 빼놓지 않았는데” 유족 충격 빠져	인터넷신문
제2019-834호	인터넷 제민일보	6월 29일	연예	‘박○○ 아내’ 故 전미선, 새벽 1시 50분 통화내역有…“욕실에 누워 호흡無”	인터넷신문
제2019-835호	인터넷 천지일보	6월 29일	연예	배우 전미선 남편 누구? 촬영감독 박○○… 영화 ‘연애’서 만나 결혼	인터넷신문
제2019-836호	인터넷 충청리뷰	6월 30일	방송·연예	박○○, 전미선과 행복했던 시절 “존경하던 연기자였다”	인터넷신문
제2019-837호	조세금융신문	6월 29일	이슈투데이	‘극단적 선택 추정’ 박○○ 아내…충격에 빠진 유족 “‘사랑해요’란 말 빼놓지 않았는데”	인터넷신문
제2019-838호	쿠키뉴스	7월 7일	전체기사	故전미선 비보에 남편 박○○ 촬영감독도 관심…“오빠 아닌 형이라 불러”	인터넷신문
제2019-839호	e머니투데이	6월 30일	연예	故전미선이 밝힌 ‘남편 박○○’ 재조명…“계약연애로 시작”	인터넷신문

제2019-840호		주식회사 미디어우리
대상보도	우리타임즈 2019년 7월 5일자 뉴스면 「(종합)자살소동 40대 男 10시간 만에 종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자살을 기도하여 경찰과 장기간 대치했다고 보도하면서 자살 미수자의 자택 주소를 상세히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 미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41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7월 5일자 국제면 「친구 머리채 잡아 번기에 넣고 때려…잔인한 13살 소녀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초등학교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42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7월 24일자 월드면 「풀장에서 몸부림치다 '익사' 해버린 프렌치불독 (CCTV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애완견이 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843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7월 1일자 사회면 「“누군가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였습니다”(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죽이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4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44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7월 2일	보이스	주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길냥이 패대기쳐 죽인 범인의 정체 (CCTV)	인터넷신문

제2019-845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9년 7월 4일자 국제면 「미국 경찰은 흥기 든 남성을 사살하는 장면을 왜 공개했을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범인을 사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4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46호	위키트리	7월 4일	사회	흥기 들고 경찰에 달려들다 총 맞아 숨진 한국계 남성...바디캠에 담긴 당시 상황	인터넷신문

제2019-847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7월 9일자 사회면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오토바이 추돌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4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48호	디스패치뉴스	7월 8일	All	시화방조제 오토바이 사망 사고 블랙박스 영상 (충격주의)	인터넷신문
제2019-849호	뷰어스	7월 10일	소셜	“헬멧 쓴 라이더, 그대로 날아갔다”...시화방조제 오토바이 사망 사고(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850호	오편	7월 9일	자동차	“충격적인 영상 주의” 시화방조제 ‘과속 오토바이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851호	인사이트	7월 9일	핫이슈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 사고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852호	NTD뉴스	7월 9일	사회	시화방조제 오토바이 사망사고 당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853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7월 17일자 핫이슈면 「아빠에게 ‘스마트폰’ 뺏기자 부모 눈앞에서 뛰어내린 소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소년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54호		주식회사 남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남도일보 2019년 7월 8일자 뉴스면 「유승준 입국 허용…반대 69%vs찬성 23%…네티즌 “영원히 입국불허하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5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55호	스포츠조선	7월 15일	10	유승준 국내 입국 '산 넘어 산' 왜	중앙일간지
제2019-856호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1일	뉴스	'병역기피' 유승준 다시 한국땅 뺏나?...오늘 상고심서 결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57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11일	-	유승준 17년만의 입국 실현될까?...가능성 반반	인터넷신문
제2019-858호	인터넷 월요신문	7월 11일	연예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오늘 대법원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9-859호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일간리더스경제 2019년 7월 15일자 11면 「정부, 日규제 대응 국내 대책 박차... “가용 자원 총동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5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60호	문화뉴스	7월 18일	경제·사회	노노재팬 사이트 접속 하셨나요? 일본행 항공권 여전히 인기있어 ‘국민 67% 불매운동 참여하겠다’	인터넷신문
제2019-861호	인터넷 금강일보	7월 18일	문화	노노재팬, 여러분 접속 하셨나요? 불매운동 참여 국민 67% ‘일본행 항공권은 여전히 뜨거운 인기’	인터넷신문
제2019-862호	인터넷 서울경제	7월 19일	사회 일반	[인터뷰] ‘보이콧 재팬’ 로고 제작자 “한 목소리 내는데 도움됐으면”	인터넷신문
제2019-863호	조선닷컴	7월 12일	사회 일반	日 기업 “불매 운동 길지 않을 것”...韓 네티즌 “이번엔 다르다”	인터넷신문

제2019-864호		주식회사 헤드라인제주
대상보도	헤드라인제주 2019년 7월 1일자 정치/행정면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갈등 걱정하는 도민들의 뜻”」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65호		주식회사 글로벌경제신문
대상보도	글로벌경제신문 2019년 7월 2일자 산업면 「○○○병원, 건강검진센터 별관 이전 확장오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 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865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66호	뉴스에이	7월 1일	전국뉴스	○○○병원, 건강검진센터 별관 이전 확장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867호	데일리메디	7월 9일	의원/병원	척추 전문기관 ○○○병원 '프리미엄 검진센터'	인터넷신문
제2019-868호	인터넷 보건타임즈	7월 1일	개원 개업	○○○병원, '건강검진센터 별관' 확장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869호	인터넷 의학신문	7월 1일	병원	강북지역 건강은 '○○○병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87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1일	일반	○○○병원, 건강검진센터 별관 이전 확장 오픈	인터넷신문
제2019-871호	뉴스포인트	7월 24일	News Brief	강남 ○○○한방병원, 서초구 ○○역 부근으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872호	매경닷컴	7월 24일	뉴스	강남 ○○○한방병원 ○○역으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873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7월 24일	사회	강남 ○○○한방병원 ○○역 부근으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874호	스포츠투데이 닷컴	7월 24일	사회	○○○한방병원, ○○역 부근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875호	인터넷 매일신문	7월 24일	사회	[○○병원]척추. 관절 수술만 16년, 질환별 전문 클리닉 운영	인터넷신문
제2019-876호	인터넷 의학신문	7월 29일	병의원	광주 ○○병원, 미세수술 전문 20년 맞아 새 도약 다짐	인터넷신문
제2019-877호	인터넷 대전투데이	7월 14일	종합뉴스	○○○○여성병원, 대전·세종 최초 바이백(VBAC) 자연주의출산 성공	인터넷신문
제2019-878호	인터뷰365	7월 22일	생활경제	척추관절 전문팀 구성 '○○○병원' 개원... 7월 15일 진료서비스 개시	인터넷신문

제2019-879호		주식회사 머니앤밸류	
대상보도	e머니에스 2019년 8월 21일자 정치/사회면 「'조국 딸' 조민 ¹⁾ , 공주대 인턴 논문은 '발표 요지록' 이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후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자녀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87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80호	시민일보	8월 28일	2	공지에 몰린 조국… 檢, 운동학원·5개대등 전격 압수수색	지역일간지
제2019-881호	이데일리	8월 30일	7	野 ‘조국 가족’ 증인 요구에 민주당 ‘안건조정위’ 신청 맞불	지역일간지
제2019-882호	주간한국	9월 2일	4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에	주간지
제2019-883호	TBS	8월 23일	뉴스	청문회부터 열어야 VS 검찰의 진상규명이 먼저 … 조국 후보자 의혹 논란, 여야 입장은?	방송
제2019-884호	뉴스웍스	8월 23일	정치	대학생 단체 “조민의 학위 취소하고, 조국은 구속 수사하라”	뉴스통신
제2019-885호	뉴시스	8월 22일	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뉴스통신
제2019-886호	내외경제TV	9월 3일	정치	‘조국 딸 조민 영어 성적 발언’ 주광덕 의원, 문 대통령 향한 과거 페이스북 발언은?	인터넷신문
제2019-887호	녹색경제신문	8월 21일	We코노미	조민 작성한 영어 논문, 교육부 미성년자 공저자 실태조사 대상에서 누락	인터넷신문
제2019-888호	뉴데일리	8월 22일	사회	“위선자 조국, 혼자 정의로운 척”… 2030의 분노	인터넷신문
제2019-889호	뉴스랩	8월 21일	사회	교육부 미성년자 공저자 실태조사 했지만…누락된 조민의 영어 논문	인터넷신문
제2019-890호	뉴스인사이드	8월 22일	정치	조국, 딸 조민 의혹에 대해 밝힌 입장… “절차적 불법 없었지만 비판 받아들이겠다”	인터넷신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당사자가 언론의 공개 인터뷰에 참여한 2019. 10. 4. 이후부터는 신원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대상에서 제외함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891호	뉴스프리존	8월 23일	정치	조국 후보자 딸에 언론보도 '팩트체크'... 민주당 의원·고동창·의전원 동기·입시전문가	인터넷신문
제2019-892호	뉴스핍	8월 23일	사회	"조국 딸 부정입학 진상규명 하라"...고려대 밝힌 쫓불	인터넷신문
제2019-893호	더 셸럽	8월 26일	문화/사회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조민 소천장학회 장학금, 문제 無"	인터넷신문
제2019-894호	더팩트	8월 27일	포도	[TF포도] '조국 딸 특혜 의혹' 서울대 압수수색 마친 검찰	인터넷신문
제2019-895호	데일리메디	9월 3일	의대/전공의	조국 후보자 논란 중심 의대·의사...불편한 의료계	인터넷신문
제2019-896호	데일리안	8월 27일	정치	청년을 위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진다	인터넷신문
제2019-897호	메디게이트 뉴스	8월 23일	의사/진료	"학술지 논문이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 병리학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판	인터넷신문
제2019-898호	메디소비자 뉴스	8월 26일	오피니언	고교생 '제1저자' 의학 논문, 의사들의 치욕이다	인터넷신문
제2019-899호	메디컬리포트	8월 29일	생활문화	오거돈-김성령-조국 대체 무슨 사이?...유세현장에도 나서 '재조명', 부산 여행 함께한 미스코리아 친구는 누구?	인터넷신문
제2019-900호	문화뉴스	8월 21일	뉴스	"절차적 불법은 전혀 없었지만" 조국 딸 조민 의혹에 조국 해명 보니? '비난폭주'	인터넷신문
제2019-901호	문화저널21	9월 4일	정치	조국 딸 논문사태에 불난 의사들 "논문철회해야"	인터넷신문
제2019-902호	미디어펜	9월 3일	정치	곽상도 "조국, 자료 제출 안하면서 '검증 끝났다' 큰소리"	인터넷신문
제2019-903호	스냅타임	8월 24일	이슈잇슈	"기득권 비판하던 조국 교수님...배신감 느낍니다"	인터넷신문
제2019-904호	스카이데일리 닷컴	8월 24일	정치	황교안 '깃발 들자' 보수진영 대결집	인터넷신문
제2019-905호	시사저널e	8월 22일	정치	조국 "법적 문제 없다며 나 몰라라 않을 것"...사퇴 여론 인지	인터넷신문
제2019-906호	시사포커스	8월 24일	포토뉴스	[포토] 고려대 촛불집회, "고려대는 조민(조국딸) 입학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라"	인터넷신문
제2019-907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8월 27일	오피니언	[사설] '조국 의혹' 수사,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봐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08호	온라인 중앙일보	8월 22일	사회	고대 '촛불집회' 제안자 돌연 포기선언...재학생 "계속 진행"	인터넷신문
제2019-909호	울산저널	8월 28일	오피니언	조국을 지키는 것은 촛불시민의 의무다	인터넷신문
제2019-910호	위키리크스 한국	8월 27일	경제	[진단]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민초들이 진보귀족 조국에게 확인하고 싶은 세가지	인터넷신문
제2019-911호	위키트리	8월 23일	사회	"조국 장관 임명을 가열차게 지지한다" 한밤중 서울대에 살포된 전단지 정체	인터넷신문
제2019-912호	이코노미 타임즈	8월 22일	사회	조국, 딸 조민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	인터넷신문
제2019-913호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3일	정치	[경향포토]개구리 가재 가면 쓴 대학생 국회 기자회견	인터넷신문
제2019-914호	인터넷 공감신문	8월 22일	사회	전대협, 서울대에 조국 후보자 비판하는 전단지 살포	인터넷신문
제2019-915호	인터넷 교통신문	8월 21일	전국	조민, 조국 딸 의혹에 조국 해명? "절차적 불법 전혀 없었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야"	인터넷신문
제2019-916호	인터넷 국민일보	8월 23일	시사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조국 딸 장학금 신청 안했어야"	인터넷신문
제2019-917호	인터넷 남도일보	8월 30일	사회	초중고생 "공부하느라 시간 부족"...네티즌 "세상은 부모 스펙이 최고나라" 조롱	인터넷신문
제2019-918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9월 4일	사회	의학 논문 쓴 의사 97% "조국 딸 제1저자, 타당하지 않아"	인터넷신문
제2019-919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8월 25일	오피니언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청문회	인터넷신문
제2019-920호	인터넷 매일신문	9월 3일	정치	[속보] 광상도 "조국, 모든 자료 다 감추고 질의응답해...국민 우롱하는 것"	인터넷신문
제2019-921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8월 22일	All	조국 딸 사진 공개 미디어워치에 靑 "무분별"	인터넷신문
제2019-922호	인터넷 세계일보	8월 24일	일반	조국이 부른 20대의 '배신감'... 文 국정 지지율 빨간불	인터넷신문
제2019-923호	인터넷 스페셜경제	9월 4일	국회/정당	조국 부인,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한국당 "사문서 위조 또는 금수저 특혜"	인터넷신문
제2019-924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8월 22일	최신뉴스	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1저자 자격 의심...신속 규명하라"	인터넷신문
제2019-925호	인터넷 시민일보	8월 26일	사회	단국대 장영표 교수, 학회지 게재 위해 논문에 허위적시 혐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26호	인터넷 시사오늘	8월 23일	현장뉴스	[현장에서] 촛불든 고려·서울대...“오늘 참가 않으면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것 같다”	인터넷신문
제2019-927호	인터넷 영남일보	8월 26일	오피니언	[송국건정치칼럼] 장영표 교수의 충격적인 실태	인터넷신문
제2019-928호	인터넷 주간조선	9월 2일	커버스토리	불공정 학종에 치인 20대 조국에 폭발하다	인터넷신문
제2019-929호	인터넷 주간한국	8월 23일	전체	‘조국의 오렐해저드’ 과거 발언이 결국 본인에게로	인터넷신문
제2019-930호	인터넷 중도일보	8월 22일	사회이슈	조국 딸 조민 의혹에 조국 해명 실화? “절차적 불법은 전혀 없었지만”	인터넷신문
제2019-931호	인터넷 천지일보	8월 24일	사회	[천지일보 영상뉴스] 고려대·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후보 사퇴, 부정입학 규명”	인터넷신문
제2019-932호	인터넷 충청리뷰	8월 21일	최신기사	“조국 딸 조민 포르쉐 탄다” 정유라가 그랬다면?	인터넷신문
제2019-933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8월 22일	정치	바른미래당, 조국 검찰 고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인터넷신문
제2019-934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8월 26일	정치	조국 딸 논란 동문들 반응은.. “특혜 말 안된다 반응은 학교 성실하게”	인터넷신문
제2019-935호	인터넷 입법국정 전문지 더 리더	8월 28일	-	조국, 정면돌파 재천명.. ‘투트랙 대응’	인터넷신문
제2019-936호	쿠키뉴스	8월 23일	정치	한국당 “조국 후보, 딸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허위 변경 의혹에 답해야”	인터넷신문
제2019-937호	톱스타뉴스	8월 22일	사회	조국, 딸 조민 및 가족 관련 논란 ‘정면돌파’ 의지...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938호	파이낸스 투데이	8월 28일	뉴스 일반	수사대응·청문회 투트랙 조국 “의혹 밝혀질것”	인터넷신문
제2019-939호	UPI 뉴스	8월 22일	정치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 “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인터넷신문
제2019-940호	놀라운뉴스	8월 19일	NEWS	논란중인 조국 딸 아이돌급 미모 화제 VS 공부는 ‘낙제’.. “신상털기는 그만”	인터넷신문
제2019-941호	인터넷 미디어워치	8월 20일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단독] 조국 해명은 거짓말...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 ‘논문실적’ 평가에 반영	인터넷신문

제2019-942호 경북일보 주식회사	
대상 보도	인터넷 경북일보 2019년 8월 26일자 국회·정당면 「최고일 의원, 페이스북 통해 조국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前)부인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후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4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43호	데일리안	8월 23일	정치	[조국 의혹 논란] 한국당 '3일 청문회' 요구하며 검찰 고발·세무조사 요청	인터넷신문
제2019-944호	인터넷 시민일보	8월 20일	정치	조국, 사노맹 활동 전력에 이어 가족 둘러싼 의혹도 '출출'...청문회 문턱 넘을까	인터넷신문
제2019-945호	뉴스1코리아	8월 27일	정치	한국당, 모친·부인·딸 등 조국 청문회 증인·참고인 25명 명단 공개	뉴스통신
제2019-946호	경북도민일보	8월 29일	3	멀고 먼 조국 청문회... 이번엔 증인 채택 놓고 충돌	지역일간지

제2019-947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대상 보도	노컷뉴스 2019년 8월 20일자 정치면 「김진태 “조국父 묘소에 이혼한 며느리 이름 새겨져”」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동생의 전(前)부인, 동생의 자녀 실명을 공개하였다.</p> <p>비록 조국 후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자녀, 동생의 전부인 및 자녀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94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48호	매경닷컴	8월 20일	정치	“조국 부친 묘지 비석에 4년앞서 이혼한 前제수 이름”	인터넷신문

제2019-949호	씨티21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씨티21뉴스 2019년 7월 31일자 지방자치면 「근무시간에 당구 레슨 받은 ○○시 ○○자문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모 지자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당구 레슨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소속, 직책 등 신원을 공개하였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94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50호	경기매일	8월 19일	13	자문관 초과수당 근무 내역 ○○시, 유출자 수사 의뢰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51호	경기일보	8월 1일	12	○○시 공무원노조, '근무중 당구 레슨' ○○자문관 사퇴 촉구	지역일간지
제2019-952호	경인일보	8월 1일	10	공무원노조 ○○시○○자문관 물러나라	지역일간지
제2019-953호	기호일보	8월 1일	18	근무시간 당구 ○○시 ○○자문관 사퇴를	지역일간지
제2019-954호	중부일보	8월 1일	7	근무시간 당구레슨 받은 ○○자문관 사퇴하라	지역일간지
제2019-955호	현대일보	8월 19일	1	○○시, '거짓 초과근무 수당' 간부 감싸고 '개인정보 유출자 색출' 경찰 수사의뢰 반축	지역일간지
제2019-956호	뉴스1코리아	8월 22일	인천	○○시-시의회,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놓고 '으르렁'	뉴스통신
제2019-957호	뉴시스	8월 16일	인천	○○시, '자문관 초과수당 근무 내역' 유출자 수사 의뢰	뉴스통신
제2019-958호	김포로	8월 1일	사회/경제	○○시 공무원노조, ○○자문관 물러나라	인터넷신문
제2019-959호	김포매일	8월 11일	사회	〈속보〉○○시 ○○자문관 당구게임 시간 초과근무 기록 남겨 도덕적 비난…	인터넷신문
제2019-960호	김포아이뉴스	7월 31일	정치/정보	○○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자문관 관련 성명서	인터넷신문
제2019-961호	김포타임즈	8월 15일	사건사고	"초과수당 정보 유출자 찾아달라"…○○시 경찰 수사의뢰	인터넷신문
제2019-962호	뉴스통신	7월 31일	-	○○ 공직사회 먹칠한 ○○자문관 물러나라	인터넷신문
제2019-963호	아시아투데이 닷컴	8월 20일	사회	○○시, 복무규정 위반 ○○자문관 관련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인터넷신문
제2019-964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8월 21일	경제·사회	○○시, 내부정보 유출 수사의뢰에 시의회 '발끈'	인터넷신문
제2019-965호	인터넷 김포미래신문	8월 24일	정치/행정	당구레슨 논란 ○○자문관 출퇴근기록부 유출 수사의뢰	인터넷신문
제2019-966호	인터넷 김포저널	8월 4일	지방자치	市○○자문관 이달말 계약만료, 재계약여부 관심집중	인터넷신문
제2019-967호	인터넷 엔디엔뉴스	7월 31일	수도권	○○시청공무원노조, 공직사회 먹칠한 ○○자문관은 스스로 물러나라 성명서 발표	인터넷신문
제2019-968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31일	사회일반	○○시 ○○자문관, 근무시간 당구장 출입…감사실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969호	인터넷 인천일보	8월 21일	경기	○○시 수사의뢰 '물타기 해명' 논란	인터넷신문
제2019-970호	경기신문	8월 12일	경기	○○시 자문관, 출근 했지만 퇴근기록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971호	쿠키뉴스	8월 20일	-	○○시의회, 정보유출 수사의뢰한 ○○시에 '엄중 경고'	인터넷신문

제2019-972호	주식회사 국제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제신문 2019년 8월 9일자 뉴스면 「성폭행으로 확정판결 징역 16년」 이재록 목사와 ‘슈퍼주니어’ 은혁은 무슨 관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대형 교회 목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확정판결을 전하면서 과거 해당 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유명 가수의 사진을 게재하고, 유명 가수와 그의 가족의 현재 교회 출석 여부 등을 보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결과 보도는 공적 목적이 있으며, 유명인의 일상도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목사의 범죄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명 가수와 그 가족의 종교 활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73호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중부매일 2019년 8월 3일자 사회면 「조○○ 양, 실종에서 엄마 품까지 ‘245시간 55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산에서 조난당한 미성년자가 구조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조 후 촬영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실종된 당시에는 제보를 위해 초상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구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7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74호	조선일보	8월 3일	10	산속에서 열흘 버텼다... 실종 여중생, 기적 같은 생존	중앙일간지
제2019-975호	중부매일	8월 5일	3	실종에서 엄마 품까지 '24시간 55분'	지역일간지
제2019-976호	조선닷컴	8월 4일	사회 일반	충북대병원 "조○○양 평소 상태로 회복...이르면 이번 주 퇴원"	인터넷신문

제2019-977호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19년 8월 7일자 연예면 「케빈 나 前 약혼녀 "1년간 성노예 생활, 성관계로 스트레스 풀다 싫증나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프로골퍼와 전(前) 약혼녀 간의 소송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97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78호	뉴스1코리아	8월 12일	방송·TV	케빈 나, '아내의 맛' 등장→과거 논란→방송 NO...논란의 6일(종합)	뉴스통신
제2019-979호	UPI 뉴스	8월 7일	연예	케빈 나, 파혼 논란에 "허위사실로 가족 다치지 않길"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980호	내외경제TV	8월 6일	방송·연예	케빈나(나상욱), 전 약혼녀에 3억여원 배상 무슨일? "성노예 삶을 살았다" 아내 ○○나	인터넷신문
제2019-981호	디스패치뉴스	8월 12일	All	결국 케빈 나 부부 분량 편집하기로 한 '아내의 맛'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82호	문화뉴스	8월 7일	방송	아내의 맛 케빈 나, 前 약혼녀와 '성 파문' 뒤흔들까? "싫증나자 버림받아"	인터넷신문
제2019-983호	스푸츠조선 닷컴	8월 7일	연예	'아내의 맛' 케빈나, 초호화 삶 공개→캐스팅 논란... "사실혼 일방 파기 NO" 해명[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984호	엑스포츠뉴스	8월 8일	방송/TV	'아내의 맛' 케빈나 논란, 시청률·이슈만 쫓다 초심 잃었나[엑's 초점]	인터넷신문
제2019-985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8월 12일	문화	TV조선 '아내의 맛', 파혼 논란에 '케빈 나' 불방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9-986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8월 12일	연예	'아내의 맛' 측 "케빈 나 촬영분, 방송 안 할 것...시청자에게 죄송"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19-987호	조선닷컴	8월 7일	연예 포토	'아내의 맛' 케빈나, 초호화 삶 공개→캐스팅 논란... "사실혼 일방 파기 NO" 해명[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988호	텐아시아	8월 7일	핫이슈	케빈나, '아내의 맛' 출연 논란... '성노예 주장' 전 약혼녀와 파혼	인터넷신문
제2019-989호	투스타뉴스	8월 13일	리부트	[리부트] '아내의 맛' 측 "케빈나(나상욱)-부인 나○○ 부부 방송 촬영분 방영 안 한다" ... 전 약혼녀와 성추문 의혹 무엇?	인터넷신문
제2019-990호	TV Daily	8월 7일	방송	'아내의 맛' 케빈 나, 캐스팅 논란...TV조선 측 "확인 중"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19-991호	TV리포트	8월 12일	-	케빈 나, 사생활 논란→"사실과 달라" 해명... '아내의 맛' "방송 안하기로"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992호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대구일보 2019년 8월 8일자 사회면 「최순실 옥중편지, 정유라에게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인 최순실 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자금을 넘겨주려고 쓴 서신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의 서신을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유	

제2019-99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993호	파이낸셜뉴스	8월 8일	8	최순실 정유라에 옥중편지 “30억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중앙일간지
제2019-994호	JTBC	8월 7일	뉴스룸	최순실 ‘옥중 편지’ 논란…딸 정유라에게 ‘재산 넘겼나’	방송
제2019-99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8월 7일	정치	[단독] 최순실 옥중편지, 정유라에 “돈은 어디 잘 갖다놓아라”	인터넷신문
제2019-996호	인터넷 국제신문	8월 7일	뉴스	최순실 정유라에게 “세금내면 4~50억 남는다. 건물 사라”…옥중편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997호	인사이트	8월 7일	핫이슈	감옥에 있으면서도 딸 정유라에 ‘수십억’ 몰래 넘기려 한 최순실의 옥중 편지	인터넷신문
제2019-998호	조세일보	8월 7일	정치사회	최순실 딸 정유라에 수십 억 전달 정황 포착 “현금으로 찾든가 가지고 있어야” 옥중편지 보내	인터넷신문
제2019-999호	직설	8월 8일	-	최순실의 옥중 편지 “유라야 조용해지면 건물 사라”	인터넷신문
제2019-1000호	한경닷컴	8월 8일	사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 대사 떠오르게 하는 최순실 옥중편지	인터넷신문

제2019-1001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8월 8일자 사회면 「경찰간부, 아들 통해 불법오락실 영업 조폭에게 단속정보 누설 혐의 기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단속정보 누설 혐의자인 경찰간부의 소속, 나이, 직책 등 신원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0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02호	광남일보	8월 9일	6	경찰관,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혐의 기소	지역일간지
제2019-1003호	광주매일신문	8월 9일	6	목포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혐의 기소	지역일간지
제2019-1004호	광주일보	8월 9일	6	아들에 단속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기소	지역일간지
제2019-1005호	남도일보	8월 9일	8	'아들 통해 단속 정보 누설'경찰 재판 회부	지역일간지
제2019-1006호	전남매일	8월 9일	7	아들 통해 단속 정보 유출 경찰관 기소	지역일간지
제2019-1007호	KBC 광주방송	8월 8일	KBC저녁뉴스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누설 현직 경찰 기소	방송
제2019-1008호	연합뉴스	8월 8일	최신기사	현직 경찰관,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혐의 기소	뉴스통신
제2019-1009호	노컷뉴스	8월 8일	지역	아들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1010호	뉴스프리존	8월 8일	사회	현직 경찰이 아들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한 혐의로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1011호	인터넷 경인일보	8월 8일	사회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1012호	인터넷 국민일보	8월 8일	시사	아들 통해 조폭에 단속 정보 유출...경찰 유착 비리 '점입가경'	인터넷신문
제2019-1013호	인터넷 남도일보	8월 8일	사회	현직경찰 아들 통해 단속 정보 누설 혐의 재판 회부	인터넷신문
제2019-1014호	인터넷 서울경제	8월 8일	사회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한 경찰관, 재판 넘겨져	인터넷신문
제2019-1015호	인터넷 한겨레	8월 8일	전국 호남	검찰, 아들 통해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불구속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1016호	인터넷 한국일보	8월 8일	지역	목포지청,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기소	인터넷신문

제2019-1017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9년 8월 24일자 사회면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피의자의 전신 모습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18호	뉴스스	8월 24일	국제	'일본여성 폭행 영상' 남성, 조사 출석...경찰 "엄중 사인"	뉴스통신
제2019-1019호	글로벌경제신문	8월 24일	-	경찰 '일본여성 위협·폭행 영상' 피의자·피해자 신원 확보. 사건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1020호	놀라운뉴스	8월 25일	NEWS	화제인 일본 여성 폭행 영상 및 피의자 신원 확보	인터넷신문
제2019-1021호	인터넷뉴스토마토	8월 24일	사회	경찰, '일본 여성 폭행 영상' 피의자 신원 확보	인터넷신문
제2019-1022호	뉴스핍	8월 24일	사건·사고	경찰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피의자 신원 확보...철저히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1023호	인터넷디지털타임스	8월 24일	-	"韓남성이 日 여성 욕설·폭행한다" 동영상 확산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9-1024호	로이슈	8월 24일	-	경찰 '한국 남성, 日여성 위협 영상' 진위파악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25호	인터넷세계일보	8월 24일	사회	韓 남성, 日 여성 무차별 폭행 영상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26호	사선뉴스	8월 24일	사회일반	홍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 폭행하는 동영상 '일파만파'...피해 여성 신고는 아직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1027호	인터넷아시아타임즈	8월 24일	정치사회	경찰 홍대서 벌어진 '일본여행객 폭행 사건', 한국인 신원확보해 '조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28호	아이뉴스24	8월 25일	사회	경찰 "영상 조작 없었다...일본 여성 폭행 혐의" 남성, 폭행·모욕죄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9-1029호	이코노뉴스	8월 24일	종합	일본여성 폭행 경찰 수사 착수...'갑자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마구잡이 폭행, 한국 치안 너무 안 좋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30호	이코리아	8월 26일	사회	홍대 일본女 폭행사건, 경찰 “강제수사 요건 안돼”	인터넷신문
제2019-1031호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4일	문화	일본인 여성 “홍대서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 경찰 진위 확인 중	인터넷신문
제2019-1032호	인터넷 문화일보	8월 24일	사회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 욕설·폭행’ 동영상 확산 파문	인터넷신문
제2019-1033호	아시아경제 닷컴	8월 24일	사회	“日여성, 홍대 앞에서 폭행당해” 영상 확산...파문	인터넷신문
제2019-1034호	인터넷 여성신문	8월 24일	사회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 폭행’ 영상 파문... 경찰, 수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35호	인터넷 이데일리	8월 25일	-	경찰 “‘홍대 앞 日여성 폭행’ 조작 없었다”...폭행·모욕 혐의 입건 검토	인터넷신문
제2019-1036호	이투데이	8월 24일	사회	‘홍대서 日여성 욕설·폭행’ 동영상 확산...경찰, 폭행남 수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37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8월 24일	사회	경찰 ‘日여성 폭행’ 사건, 한국인 남성 신병 확보	인터넷신문
제2019-1038호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4일	사회	경찰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피의자 신병 확보, 철저히 조사할 것”	인터넷신문
제2019-1039호	인터넷 환경일보	8월 24일	사회·문화	일본여성 폭행 단순사건?	인터넷신문
제2019-1040호	일요서울	8월 24일	사회	경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진위 파악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41호	인터넷 충청리뷰	8월 25일	사회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머리채 잡은 사실 인정	인터넷신문
제2019-1042호	톱스타뉴스	8월 24일	-	홍대 일본여성 폭행 남성, 경찰 조사...경찰 “엄중 사인”	인터넷신문
제2019-1043호	인터넷 투데이신문	8월 24일	사회	‘日 여성 폭행 영상’ 논란...경찰, 진위 파악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044호	한경닷컴	8월 26일	사건사고	홍대 폭행 피해자 일본 여성 “일본에서 한국 남자가 폭행했을 땐...”	인터넷신문
제2019-1045호	한국경제TV	8월 24일	뉴스	‘일본여성 폭행’ 동영상 경찰 수사 착수...“가해남성 추적 중”	인터넷신문
제2019-1046호	cnb뉴스	8월 25일	-	한국인 남성의 일본 여성 폭행 기사에 일본 네티즌 ‘격앙’	인터넷신문
제2019-1047호	e글로벌 이코노믹	8월 24일	종합	경찰, ‘일본 여성 위협·폭행’ 영상 한국 남성 신병 확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48호	e머니에스	8월 24일	정치/사회	한국남성이 일본여성 폭행?... 경찰 진위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1049호	e머니투데이	8월 24일	사회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인터넷신문
제2019-1050호	UPI 뉴스	8월 24일	사회	한국인 남성, 일본인 여성 폭행 파문 확산	인터넷신문

제2019-1051호	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8월 13일자 REAL VIDEO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 가해자의 범행과정을 영상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52호	주식회사 아시아타임즈
대상보도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019년 8월 13일자 정치사회면 「탈북 여성 6살 아들과 숨져, 두 달 전 '아사' 추정... "문재인 수석대변인 답 하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실명과 초상,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유가족 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52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53호	인터넷 세계일보	8월 28일	뉴스	굶어 죽은 탈북母子 한○○·김○○ 시민장례식 9월 7일 치른다	인터넷신문
제2019-1054호	채널A	8월 23일	뉴스A	“탈북 모자, 독극물 검출 안 돼”...굶주려 숨졌을 가능성 커	방송
제2019-1055호	인터넷 서울신문	8월 23일	국방·외교	한○○, 우리 모두 한 없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름 석 자	인터넷신문
제2019-1056호	중앙일보	8월 27일	28	여섯살 ○○이는 ‘결핍과 우울’을 그림으로 남기고 떠났다	중앙일간지
제2019-1057호	주간조선	8월 26일	사회/르포	죽은 모자를 위한 복지는 없었다	주간지
제2019-1058호	온라인 중앙일보	8월 26일	오피니언	뿐만 양상한 사람 그려놓고...6살 ○○이 ‘탈북’은 끝났다	인터넷신문
제2019-1059호	인터넷 주간조선	8월 26일	사회/르포	‘모자 아사’ 사태로 본 탈북자 복지의 현재	인터넷신문
제2019-1060호	공공뉴스	8월 27일	사회	[공공의 窓] 탈북민 모자 아사, 벗어날 수 없었던 굶주림의 굴레	인터넷신문

제2019-1061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나우뉴스 2019년 8월 13일자 토픽면 「[여기는 중국] ‘중국판 김여사’ 논란...포르쉐로 ‘길막’ 후 폭행까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운 전자를 뜻하는 ‘김여사’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 및 본문에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표현에 해당하여 여성 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2호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9년 8월 2일자 연예면 「[빅스타엑스파일] 열등감에 그릇된 욕망까지…친오빠에게 살해당한 무토 아즈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과거 일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3호		주식회사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19년 7월 30일자 국제면 「네덜란드서 'OOOO' 부작용 사례 급증…국내서도 유통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환각물질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환각물질의 명칭, 별칭, 환각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물품들, 환각물질이 담긴 물품을 상표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64호	아시아경제 닷컴	8월 3일	사회	중고사이트서 버젓이 거래되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	인터넷신문
제2019-1065호	연합뉴스	7월 30일	최신기사	네덜란드서 'OOOO' 부작용 사례 급증…국내서도 유통돼	뉴스통신

제2019-1066호		주식회사 광주매스컴
대상보도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2019년 8월 8일자 사회면 「'위험한 거래' SNS 조건 만남 기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채팅 앱을 공개하면서 이 앱들이 대화내용 등이 저장되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 핸드폰 번호 인증만 하고 개인정보는 실제와 다르게 설정 가능한 점 등을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67호	광주매일신문	8월 9일	6	'위험한 거래' SNS 조건 만남 기승	지역일간지

제2019-1068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투리 2019년 8월 21일자 사회면 「충격적인 실체... '원정 도박' 논란 BJ 철구, 과거 '이런 짓'까지 했다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유튜버가 과거 강력성범죄 사건인 일명 '김길태 사건'을 재연하고 있는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영상의 소재로 사용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9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2019년 8월 17일자 사회면 「여성 고객에 “해보고 싶다”...○○○○ ○○점 폐점 결정」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떡볶이 체인점 점주가 SNS에 게시한 고객에 대해 선정적으로 묘사한 성적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6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70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8월 17일	라이프	‘○○○○’ 한번 얹지른 물 주어 담을 수 없어... 장난으로 그랬다고?	인터넷신문
제2019-1071호	문화뉴스	8월 17일	일반	○○○○ ○○점 논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보기만 해도 민망한 성적 농담”	인터넷신문
제2019-1072호	인터넷 시사매거진	8월 17일	키워드	장난으로 그랬다고? ‘○○○○’ 이미 얹지른 물 주어 담을 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1073호	위키투리	8월 17일	-	배달앱 맛집 랭킹 1위 떡볶이집...알고 보니 사장이 트위터 ‘섹계’에서 손님 성희롱하는 곳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19-1074호	인사이트	8월 17일	사회	“요즘 부쩍 강간하고 싶다”는 성희롱 글 썼다가 강제 폐점 당한 ‘○○○○’ ○○점	인터넷신문
제2019-1075호	e-경상일보	8월 17일	방송/연예/이슈	‘○○○○’ 장난으로 그랬다 변명... 이미 얹지른 물 주어담을 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1076호	인터넷 경인일보	8월 17일	사회	“모텔 배달 갈때 제일 좋아”... ‘성희롱 트윗 논란’ ○○○○ ○○점 폐점	인터넷신문
제2019-1077호	인터넷 농업인신문	8월 17일	라이프	이미 얹지른 물 주어 담을 수 없어 ‘○○○○’ 장난으로 그랬다고?	인터넷신문
제2019-1078호	인터넷 여성신문	8월 17일	뉴스	‘여성 고객 성희롱 트윗’ ○○○○ 점주 논란... 본사 폐점 결정	인터넷신문
제2019-1079호	인터넷 한국스포츠키 경제	8월 17일	사회/정책	‘○○○○’ ○○점 점주 성희롱 ‘총격’... ○○○○ 점주 “배달하면서 강간해란 걸 해보고싶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80호	키즈TV	8월 17일	하이슈	'○○○○' 이게 장난이야? 이미 옆지른 물 주어 답을 수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1081호	톱스타뉴스	8월 20일	사회	'SNS 성희롱 논란' ○○○○ ○○점, 폐점조치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의미는?	인터넷신문
제2019-1082호	포커스데일리	8월 17일	사회	○○○○ 체인점 상호 자체도 "황당"	인터넷신문

제2019-1083호		주식회사 국제뉴스	
대상보도	국제뉴스 2019년 8월 2일자 전국면 「한 유기농 부부 빗더미, 판로없어 '자살'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기농 농사를 하던 부부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8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84호	서귀포방송	8월 4일	사회/환경	제주도, 평생 생명농업을 일궈온 유기농부	인터넷신문

제2019-1085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8월 2일자 국제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여성 상대로 흥기 들고 '묻지마 똥침' 찌른 엽기남」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묻지마'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흉기 사진 등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086호	애니멀플래닛
대상보도	애니멀플래닛 2019년 8월 29일자 애니멀뉴스팀면 「전동 스쿠터 뒤에 살아있는 강아지 매달고 '피투성' 될 때까지 도로 위 질주한 여성」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개를 스쿠터에 매달아 끌고 달리는 모습을 노출한 영상, 개가 피 흘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087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8월 9일자 경제면 「"일본은 코끼리 학살 조장하는 상아 거래 중단하라" 아바즈, 국제서명운동」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신체 일부가 절단된 코끼리의 사체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088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9년 8월 4일자 국제면 「태국 관광지에서의 ‘코끼리 학대’ 사진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학대당한 코끼리의 모습 및 학대에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게재 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8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89호	어린이동아	8월 6일	2	[오늘의 뉴스] 관광위해 학대받는 태국 코끼리	중앙일간지
제2019-1090호	뉴스1코리아	8월 4일	문화	“이래도 코끼리 관광하시겠습니까”…태국 코끼리 학대 사진에 ‘공분’	뉴스통신
제2019-1091호	리서치페이퍼	8월 1일	핫피드	태국 여행 가서 절대 ‘코끼리 관광’하면 안 되는 슬픈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1092호	오픈디스커스	8월 6일	동물	“태국 관광청도 금지” 태국 여행 가서 ‘코끼리 타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사진·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1093호	위키리크스 한국	8월 8일	일반사회	“태국 관광청도 금지” 태국 여행 가서 ‘코끼리 타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사진·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1094호	위키트리	8월 4일	사회	태국 여행 가서 ‘코끼리 관광’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신문
제2019-1095호	인사이트	8월 1일	동물	관광객 태우려는 장사꾼들 때문에 이마에 ‘낯질’ 당하며 훈련받는 코끼리	인터넷신문

제2019-109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8월 24일자 국제면 「할머니가 발에 ‘끓는 물’ 부어 화상 입고도 엄마 걱정할까 ‘미소’ 잃지 않는 소녀」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소녀의 화상부위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97호	주식회사 문화뉴스
대상보도	문화뉴스 2019년 7월 31일자 경제·사회면 「'일본 불매운동' 일본반응, 일본 대표 언론기관 '우려섞인 반응' VS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09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098호	베타뉴스	8월 2일	종합	소녀상건립기금마련에 참여한 설령탕집 사장, ○○설령탕 장○○ 대표	인터넷신문
제2019-1099호	인터넷 금강일보	8월 1일	사회	일본 불매운동 한달, 일식당·주점 “선의 피해자 없어야”	인터넷신문

제2019-1100호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대상보도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9년 8월 5일자 사회면 「(뉴스리듬)“지소미아 파기하라”, 한층 거세진 반일 집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01호		주식회사 덕천
대상보도	인터넷 전남매일 2019년 7월 26일자 뉴스종합면 「'○○치과' 지역민 생활습관 맞춰 맞춤형 진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 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0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02호	조세일보	8월 26일	뉴스	○병원, 외과수술 전문 12년 맞아 새 도약 다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03호	쿠키뉴스	8월 26일	Home	○병원, 외과수술 전문 병원 12년 맞아	인터넷신문
제2019-1104호	뉴스포인트	8월 21일	News Brief	천안 ○○동 '○○○○병원' 개원, 관절·척추 비수술 중점 진료	인터넷신문

제2019-1105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8월 22일자 사회면 「안혜경 또 뉴스메이커로 왜?... “하하가 양다리 걸쳤다는 소문도 있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본문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누리꾼의 댓글을 사용해 마치 최근에 특정 연예인들 간에 이슈가 발생한 것처럼 제목을 왜곡되게 표현하였다. 이는 독자의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06호		중앙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9년 9월 10일자 국제면 「[영상]선박서 마지막 구조된 한국인...손 흔들자 박수 쏟아졌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선박 사고로 고립된 선원을 구조했다고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06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07호	국민일보	9월 12일	24	지옥서 버틴 한국인 4명 “건강 이상무”	중앙일간지
제2019-1108호	뉴스핌	9월 10일	통일·외교	외교부 “구출된 골든레이호 韓 선원, 건강상태 비교적 양호”	인터넷신문
제2019-1109호	아시아경제 닷컴	9월 12일	국제	골든레이호 구출 한국인 선원 2명 귀국...나머지 8명도 조기 귀국	인터넷신문
제2019-1110호	인터넷 경향신문	9월 10일	국제	[속보]미 해안경비대 “골든레이호 고립 한국인 선원 3명 구조...다른 1명 구조작업중”	인터넷신문
제2019-1111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12일	시사	지옥서 버틴 한국인 4명 “건강 이상무”	인터넷신문
제2019-1112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9월 10일	라이프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 韓 선원 4명 모두 구조	인터넷신문
제2019-1113호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1일	국제	골든레이호 인양에 수개월 걸릴 듯...선원 4명은 퇴원	인터넷신문

제2019-1114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 2019년 9월 24일자 사회면 「“검은연기에 아비규환...” 휴대폰 비취 환자 대피시킨 직원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대피한 피구조자와 가족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1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15호	뉴스스	9월 24일	사회	환자 130여명 김포 요양병원 화재	뉴스통신
제2019-1116호	노컷뉴스	9월 24일	사회	대피해 있는 환자들	인터넷신문

제2019-1117호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대상보도	e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8월 31일자 종합면 「나경원 자녀의혹, 딸=김○○(성신여대) 아들=김○○(미국 예일대) …조국 딸 몰타기 악성댓글 무더기 고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실명 및 초상, 아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자녀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1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18호	서울와이어	8월 31일	핫이슈	‘나경원자녀의혹’ 화제 속 나경원 리즈시절 이렇게 예뻐? ‘여배우 아우라’	인터넷신문
제2019-1119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9월 10일	문화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실검 등극	인터넷신문
제2019-1120호	인터넷 중도일보	8월 31일	핫클릭	‘나경원자녀의혹’ 실검 등극에 강제 소환된 나경원 리즈시절 모습 다시보니? ‘여배우 뺨쳐’	인터넷신문
제2019-1121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9월 10일	정치/정책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당시 논문 작성한 바 없어”	인터넷신문
제2019-1122호	국민뉴스	9월 11일	뉴스종합	뭐 묻은 개? 나경원 아들 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등록 청탁 드러나.. 윤형진 교수 “나경원이 직접 부탁”	인터넷신문
제2019-1123호	뉴스브라이트	9월 10일	-	나경원 아들 논문청탁 입증은? “아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논문 작성 X	인터넷신문
제2019-1124호	뉴스프리존	9월 11일	정치	현직 검사 “정치개입 윤석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 논문도 수사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25호	미디어 리퍼블릭	9월 10일	정치사회	'나경원 아들 논문청탁'도 실검에...나 원대대표는 특혜 의혹 반박	인터넷신문
제2019-1126호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0일	속보	'나경원 아들 논문청탁' 검색어에, 나경원 "논문 작성한 바 없다" 주장	인터넷신문
제2019-1127호	인터넷 매일신문	9월 20일	정치	'나경원AFP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어떤 내용?	인터넷신문
제2019-1128호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9월 10일	정치사회	나경원 "당시 논문 작성한 바 없어... 법적조치할 것"	인터넷신문
제2019-1129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9월 10일	정치일반	나경원 아들 논문 의혹에 "명백한 명예훼손, 허위 보도시 법적조치"	인터넷신문

제2019-1130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9월 18일자 사회면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하던 남자" 양준혁, '미투' 터졌다 (사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 씨에 대한 한 여성의 성 관련 폭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준혁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잠든 모습 사진을 공개하고, 폭로한 여성의 주장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3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31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9월 19일	문화	양준혁 사진 폭로한 A씨, "수치심에 죽고 싶어" 발언 후 SNS 계정 삭제	인터넷신문
제2019-1132호	스포츠Q	9월 20일	프로야구	양준혁 인스타 미투녀 고소, 스캔들 초강경 대응	인터넷신문
제2019-1133호	싱글리스트	9월 18일	사회	양준혁, 사생활 폭로글 등장 "임XX랑 다를 게 없잖아"... 해당 계정 '비공개' 전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34호	인터넷 세계일보	9월 18일	사회	양준혁 성 관련 구설수 올라...“첫 만남에 성적인 행동 요구”	인터넷신문
제2019-1135호	인터넷 아주경제	9월 19일	-	양준혁 사진·미투 폭로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누리꾼 “허위미투 넘새기”	인터넷신문
제2019-1136호	인터넷 충청리뷰	9월 18일	방송 연예	[종합] 양준혁, 미투 터졌다? 성관계 폭로글·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19-1137호	일요서울	9월 18일	사회일반	성 스캔들 폭로 ‘전 야구선수 양준혁’ 충격	인터넷신문
제2019-1138호	투스타뉴스	9월 19일	이슈종합	[이슈종합] ‘성스캔들 논란’ 양준혁, 잠자는 사진 폭로 ‘미투’ 일까?...강경규 비난 속 ‘폭로女에 강경대응’	인터넷신문
제2019-1139호	TV Daily	9월 19일	방송	“미투 본질 폄훼”...양준혁 폭로녀 글 삭제→잠적 [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1140호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대상보도	투스타뉴스 2019년 9월 24일자 셸럽면 「양준혁, 여자와 성스캔들 파문...‘구강성교 강요’ 폭로+미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 씨에 대한 한 여성의 성 관련 폭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폭로한 여성의 주장을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4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41호	마이데일리	9월 18일	방송	양준혁, 성 스캔들 휩싸여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부터”	인터넷신문
제2019-1142호	브레이크뉴스	9월 18일	연예	양준혁, 성(성)스캔들 폭로 논란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소속사 ‘묵묵부답’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43호	스타뉴스	9월 18일	방송	양준혁, 性 스캔들 폭로글 등장?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	인터넷신문
제2019-1144호	스포츠투데이 M	9월 18일	야구	‘프로야구 출신’ 양준혁, 구강성교 미투 논란→“사실 아니다”(종합)	인터넷신문
제2019-1145호	엑스포츠뉴스	9월 18일	국내연예	양준혁, 性스캔들 폭로글 등장 “숨겨진 본성, 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	인터넷신문
제2019-1146호	이투데이	9월 18일	연예/스포츠	양준혁, 性스캔들 폭로 SNS…잠든 사진부터 구강성교 언급까지 ‘현재는 삭제’	인터넷신문
제2019-1147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9월 18일	문화	“구강성교 강요? 의도 보인다”…양준혁, 스캔들 루머에 ‘발끈’ (전문)	인터넷신문
제2019-1148호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9월 18일	연예가화제	양준혁, 성추문에 휩싸여…“첫 만남에 구강성교 강요” 폭로	인터넷신문

제2019-1149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투리 2019년 9월 24일자 사회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는 남성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50호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
대상보도	중부매일 2019년 9월 16일자 6면 「사업비 일부 송금 확인… 부정행위 적발시 특정감사 전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외부공연 연출·기획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 문화재단 임원의 소속, 직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5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51호	인터넷 중부매일	9월 15일	충주	'기획·연출 사례비' ○○○○문화재단 사무처장 조사	인터넷신문
제2019-1152호	충청타임즈	9월 16일	5	○○시, ○○문화재단 관리자 조사 착수	지역일간지
제2019-1153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9월 15일	정치	○○시, ○○문화재단 관리자 조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19-1154호	충청일보	9월 4일	7	"○○시 문화예술기관 감독 강화해야"	지역일간지
제2019-1155호	인터넷 충청일보	9월 3일	충주	조종근 의원 "○○○약단·○○○○문화재단 감독 강화해야"	인터넷신문
제2019-1156호	충청매일	9월 4일	6	"○○○약단·○○문화재단 운영 관리 소홀"	지역일간지
제2019-1157호	인터넷 충청매일	9월 3일	충북	"○○○약단·○○문화재단 운영 관리 소홀"	인터넷신문
제2019-1158호	인터넷 충북일보	9월 3일	일반·사회	조종근 ○○시의원 "○○○약단·○○문화재단 근무관리 허술"	인터넷신문

제2019-1159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19년 9월 6일자 법원·검찰면 「상습 마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석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재벌 3세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p> <p>이 기사가 비록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할지라도 공익상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인(私人)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15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60호	뉴스1코리아	9월 6일	전국	'마약 혐의'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4개월만에 석방(종합)	뉴스통신
제2019-1161호	연합뉴스	9월 6일	최신기사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종합)	뉴스통신
제2019-1162호	노컷뉴스	9월 9일	사회	검찰, '대마 상습 흡입' SK·현대가 3세 석방에 항소	인터넷신문
제2019-1163호	뉴스워치	9월 9일	사회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석방...검찰, 판결 불복 '항소'	인터넷신문
제2019-1164호	매경닷컴	9월 9일	사회	검찰,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석방 판결에 항소	인터넷신문
제2019-1165호	비즈트리뷴	9월 9일	사회	검찰 항소,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인터넷신문
제2019-1166호	인터넷 뉴스웨이	9월 6일	일반	변종마약 혐의 SK·현대가 3세...집행유예로 석방	인터넷신문
제2019-1167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7일	사회	SK·현대가 3세에 대마 판매한 공급책, 징역 1년 선고	인터넷신문
제2019-1168호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9월 6일	산업/재계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CJ 장남 '구속 영장'	인터넷신문
제2019-1169호	인터넷 한국일보	9월 9일	지역	검찰, '대마 흡입'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인터넷신문
제2019-1170호	청년일보	9월 9일	Y-사회	검찰, '마약 혐의' 재벌가 3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인터넷신문
제2019-1171호	컨슈머타임스	9월 17일	뉴스	SK·현대가 3세에 변종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선고	인터넷신문

제2019-1172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9월 26일자 41면 「“욕설·협박·생활고, 벗어나고 싶습니다”…디액션, TS에 계약해지 호소(전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와 연예 기획사 사이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가수 매니저와 대화하는 기획사 실장의 녹음된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소속사의 부당 행위를 보도를 통해 고발하는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의 음성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게재된 음성 및 가수가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욕설 등 언어폭력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73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조선 2019년 9월 3일자 ISSUE면 「딸 신혼집 근저당권 설정… 실제 소유는 최순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인 최순실 씨가 자녀인 정유라 씨에게 자신의 자금을 넘겨주려고 쓴 서신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의 서신을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자택 소재지와 전경사진, 평수, 주택의 구조 등의 정보와 정 씨의 현 남편의 성, 직업, 그가 두 번째 남편이고 정 씨 아들의 친부가 아닌 점 등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유라 씨와	

	<p>남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174호	놀라운뉴스
대상 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9월 23일자 NEWS면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권고 사항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소년법」 제62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175호	놀라운뉴스
대상 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8월 28일자 HUMOR면 「난리난 '주유소에서 충격적인 사고 일으킨 김여사」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0조의2(차별 금지)
권고 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태도가 좋지 않은 중년 여성운전자를 뜻하는 '김여사'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표현에 해당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176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신동아 2019년 9월 4일자 스포츠면 「청소년 잡는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실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테로이드 불법유통에 대해 보도하면서 명칭, 효과, 판매 가격, 판매 수익, 사용 방법 등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77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9월 2일자 월드면 「대낮에 호텔 수영장에서 '성관계'하다 딱 걸린 커플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수영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7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9월 17일자 사건사고면 「“수원가는 ‘37번’ 버스 안 옆자리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고 저를 보고 있어요”」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버스에서 한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79호		주식회사 포커스데일리
대상보도	포커스데일리 2019년 9월 5일자 부산·경남면 「○○ 해양경찰청 ○○○센터장 숙소서 숨진채 발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공무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직책, 나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7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80호	위키투리	9월 5일	사회	성추행 피고소 비관 ○○ 해양경찰청 ○○○센터장 숙소서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19-1181호	동아닷컴	9월 5일	사회	○○ 해양경찰청 ○○○센터장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인터넷신문

제2019-1182호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9년 9월 11일자 사회면 「요즘 핫템은 액상○○? 강남 클럽서 독버섯처럼 번진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 가격, 판매 사이트 사진 등 구입 경로, 환각적 효능, 냄새가 없어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액상 전자담배 흡입기와 호환가능한 점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83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8월 31일자 월드면 「갑자기 길가는 아이 얼굴을 칼로 찢어버린 여성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행인이 아이의 얼굴을 칼로 상처입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8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84호	인사이트	8월 31일	국제	처음 본 아이 얼굴을 갑자기 '칼'로 찢어버린 여성(영상)	인터넷신문

제2019-1185호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대상보도	일요신문; 2019년 9월 11일자 사회면 「산 채로 살아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개를 불로 태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86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9월 15일자 국제면 「남편에게 매일 '가정 폭력' 당하면서도 꼭 참아온 여성이 '얼굴'을 공개한 이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87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19년 9월 27일자 시면 「남편 잘못 만나 온몸에 '화상' 입고 '안면 이식 수술' 받았던 여성의 근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8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9월 10일자 동물면 「학대 당해 매일 '아픈 주사' 맞는데도 사람 너무 좋아해 '하악질' 한번 안 하는 길냥이 봄이의 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심한 학대를 당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189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9월 17일자 국제면 「근친 교배로 숨진 호랑이 86마리… 태국 ‘호랑이 사원’의 진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새끼 호랑이 시체가 병에 담긴 모습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190호	애니멀플래닛
대상보도	애니멀플래닛 2019년 9월 12일자 「개장수가 쓴 화살에 맞아 온몸 ‘피투성이’ 된 어느 유기견의 ‘슬픈 눈망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화살을 맞은 유기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191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상보도	조선닷컴 2019년 9월 6일자 대학입시면 「정시 놓고 또 쪼개진 교육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 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9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92호	국민일보	9월 19일	14	당정청 '대입 정시확대 불가' 재확인	중앙일간지
제2019-1193호	쿠기뉴스	9월 3일	뉴스	조국 딸 논란에 입시제도 대폭 손질될까...정시 확대·학종 폐지 목소리 ↑	인터넷신문

제2019-1194호		주식회사 미디어 제주
대상보도	미디어제주 2019년 8월 27일자 정치면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제주도의회가 나서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제주 제2공항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119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95호	인터넷 뉴스제주	9월 11일	사회	“제주 제2공항,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	인터넷신문
제2019-1196호	헤드라인제주	9월 18일	사회	[전문] 제2공항 도민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문	인터넷신문

제2019-1197호	주식회사 네오뉴스				
대상보도	뷰스앤뉴스 2019년 9월 3일자 정치면 「文대통령, 오늘 재송부 요청. 6일 조국 임명 강행?」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197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198호	인터넷 브릿지경제	9월 6일	문화	조국 인사청문회, '뜨거운 감자' 속 누리꾼 분노 “당신이 누린 건 범죄”	인터넷신문
제2019-1199호	인터넷 시사저널	9월 2일	정치	20대의 목소리 “조국 딸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인터넷신문

제2019-1200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상 보도	인터넷 병원신문 2019년 9월 11일자 병원면 「○○안과병원 수술실, 입원실 별관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00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01호	메디포뉴스	9월 10일	동정	○○안과병원, 수술실 입원실 별관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2호	보건뉴스	9월 10일	병·의원	○○안과병원 수술실, 입원실 별관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3호	엠디포스트	9월 10일	병·의원	○○안과병원 수술실, 입원실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4호	인터넷 고양신문	9월 23일	마이고양	○○안과병원 수술실·입원실 별관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5호	인터넷 후생신보	9월 10일	병·의원	○○안과병원, 수술실·입원실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6호	헬스포커스	9월 16일	의료	○○안과병원 수술실, 입원실 별관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07호	광주드림	9월 25일	뉴스	○○ 한방병원 총 260병상 확장 '전국 최대 규모'	인터넷신문
제2019-1208호	인터넷 한의신문	9월 25일	뉴스	○○ 한방병원, 전국 최대 규모 확장 '제2의 도약'	인터넷신문
제2019-1209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9월 27일	라이프	토탈 뷰티 네트워크 병원 '○○○○' 강남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1210호	인터넷 내일신문	9월 6일	사회	섬세한 진료로 완성하는 여자들의 워너비 '동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11호	지역내일	9월 6일	건강·의료	섬세한 진료로 완성하는 여자들의 워너비 '동안'	인터넷신문
제2019-1212호	인터넷 시민일보	9월 9일	생활	수원 ○○○○병원, 확장 이전 개원	인터넷신문
제2019-1213호	스포츠 조선닷컴	8월 30일	생활	○○○한의원 대구점. 입원실 갖춘 ○○○ 한의원으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14호	충청투데이	8월 29일	6	통증도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재활과 활력을 동시에	지역일간지
제2019-1215호	인터넷 충청투데이	8월 28일	뉴스	재활전문 ○○○ 병원, 통증도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재활과 활력을 동시에	인터넷신문
제2019-1216호	인터넷 시민일보	9월 3일	생활	새롭게 선보이는 '○○○○치과의원' 200평 규모의 확장 개원 예정	인터넷신문
제2019-1217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9월 2일	라이프	허리 및 어깨, 허리 통증, 비수술적인 치료로 개선 가능	인터넷신문

제2019-1218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19년 8월 28일자 화제면 「구혜선 안재현, 이혼한다더니 6시간 동안 단둘이..」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이혼 갈등을 겪고 있는 연예인 부부의 근황을 다루면서, 신혼시기에 있었던 일을 현재 발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독자의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19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보도	헤럴드POP 2019년 8월 28일자 화제면 「김경호, 뼈가 썩는 희귀병 투병..사망 위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가수가 과거 희귀병 투병을 했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최근에 해당 가수가 사망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독자의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0호		주식회사 뉴스와사람들
대상보도	뉴스프리존 2019년 10월 10일자 사회면 「[기자수첩] “나경원 아들, 논문 대필이다” 의혹 제기한 나진요 3차 집회」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아들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1호		주식회사 뉴시스
대상 보도	뉴시스 2019년 10월 18일자 정치면 「박원순 딸 서울대 법대 전과 거론에 설전…“비열한 행위”(종합)」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 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실명과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전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자녀들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22호	문화저널21	10월 31일	저널21	[단독] 검찰,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입건유예로 종결할 듯	인터넷신문
제2019-1223호	서울포스트	10월 8일	-	[진단] 문재인 후계자 비리종합박물관 조국은 이철희, 장영자어음사기사건을 능가한 단군이라 최대게이트.. 가족3대(모, 조국, 처, 동생, 딸, 아들, 동생, 조카)가 감빵에 갈 희대의 사건 될 수도.. 혐의들에 비공개가 아니라 광화문사거리에서 공개 소환조사 열어야	인터넷신문
제2019-1224호	투스타뉴스	10월 3일	정치	‘조국 부인’ 정경심, 아들-딸 이어 비공개 조사…조민 “허위로 증서 받은 적 없다”	인터넷신문
제2019-1225호	펜앤드마이크	10월 23일	사회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	인터넷신문

제2019-1226호 조세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조세일보 2019년 10월 18일자 정치사회면 「서울시 국감서 박원순 딸 ‘서울대 법대 전과’ 설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딸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7호 주식회사 충남일보	
대상보도	충남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4면 「평택해경, 전북 낚싯배 8명 전원 구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선박 전북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8호		주식회사 스타뉴스
대상보도	스타뉴스 2019년 10월 7일자 엔터테인먼트면 「캐빈 나, '아내의 맛' 하차 후 근황 #전세기 #둘째 출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프로골퍼로부터 1년여 동안 성노예처럼 부려지다가 버림받았다는 전(前) 약혼녀의 폭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28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29호	톱스타뉴스	10월 8일	-	○○나(나○○)♥케빈나(나상욱), 전 약혼녀 파혼논란 이후 근황 '딸과 함께'	인터넷신문

제2019-1230호		OM뉴스
대상보도	OM뉴스 2019년 10월 5일자 정치·경제·사회면 「조민 “표창장 위조 안 해..압수수색 당시 어머니 쓰러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조(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전 장관 딸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유승민 의원 딸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보도 당시 부정적인 공적관심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왜곡된 사진 정보로 인해 유승민 의원 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1호	주식회사 충청타임즈
대상보도	충청타임즈 2019년 10월 10일자 3면 「반○○ ○○농협 조합장 도박혐의 추가 검찰 송치」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 조합 임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32호	인터넷 충청타임즈	10월 9일	사회	반○○ ○○농협 조합장 도박혐의 추가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19-1233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상보도	경향신문 2019년 10월 7일자 8면 「주사 자국 없다고 모를쏘냐...니코틴 살인, 피는 못 속인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수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경구(經口) 치사량, 사망 사례에서 사용된 니코틴 패치 개수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34호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7일	사회	[서중석의 법의학 이야기-침묵 속의 진실을 찾아서](17)주사 자국 없다고 모를쏘냐...니코틴 살인, 피는 못 속인다	인터넷신문

제2019-1235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10월 7일자 사회면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 전 ○○점 점주 과거 성희롱 발언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떡볶이 체인점 점주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노골적인 성적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6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10월 22일자 월드면 「수갑 채우는 경찰 하반신에 엉덩이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성이 체포 당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7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대상보도	인터넷미디어오늘 2019년 10월 20일자 사회면 「○○○공업 부장급 직원, 회사 내 숨진 채 발견돼」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소속, 직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8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10월 22일자 월드면 「'카페서 새치기하는 여자' 그 자리에서 마구 폭행하는 여자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39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어미와 놀던 강아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자동차가 강아지를 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9-1240호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사회면 「선문대 칼부림 사건, 남성혐오증 여성이 범인?」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41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대상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9년 10월 14일자 연예문화면 「설리 사망, 인스타그램 예고했었다? “그 고백 받아주겠어” 죽음 암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뉴스통신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 설리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SNS 게시글이 죽음을 암시했다는 내용의 제목을 붙여 해당 게시글이 자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42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 보도	헤럴드POP 2019년 10월 2일자 화제면 「박해미, 남편 사망사고 못 버티고 결국 무속인이..」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 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본문과 다르게 배우 박해미가 무속인이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43호	주식회사 헤럴드
대상 보도	헤럴드POP 2019년 10월 18일자 화제면 「유승준 부친 충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 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수 유승준 부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편집하여 유승준의 부친이 마치 유승준이 강간범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44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상 보도	한국일보 2019년 9월 27일자 14B면 「○○영상의학과의원 확장 이전」 제하의 보도
매체 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 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24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45호	인터넷 강원일보	10월 15일	라이프	[우리지역 병의원]치질수술 2만건 풍부한 경험 환자 통증·재발 최소화 강점	인터넷신문
제2019-1246호	인터넷 의학신문	10월 10일	병의원	○○○○병원, 면역 중심병원 '주목'	인터넷신문
제2019-1247호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5일	지역	○○영상의학과, ○○○ 상가로 확장이전	인터넷신문
제2019-1248호	인터넷 한라일보	9월 27일	뉴스	○○한방병원 개원 "양·한방협진으로 수술 후 재활치료 총력"	인터넷신문

제2019-1249호	놀라운뉴스
대상보도	놀라운뉴스 2019년 11월 13일자 HUMOR/INFO면 「삼성전자 이재용 딸 근황 화제」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의 실명 및 초상, 출생연도를 공개하였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딸의 실명, 초상 등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제2019-1250호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대상보도	인터넷 여성조선 2019년 11월 18일자 ISSUE면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임종석, 미국 폴 라이언과 닮은 꼴?&아내,딸은 누구?»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딸의 실명, 재학중인 학교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딸의 실명, 학교명 등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1호		주식회사 펜앤드마이크
대상보도	펜앤드마이크 2019년 11월 19일자 사회면 「조국 동생 조권, 웅동학원 위장 소송 위해 유령회사 설립하고 가짜 계약서 10여장 만들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동생의 전(前) 부인 실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전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성명을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52호	아시아뉴스통신	10월 15일	정치	'조국 사퇴' 투쟁 선봉에 선 최고일 의원, 한국당 신뢰도 높이고 보수 민심 하나로 묶어	뉴스통신

제2019-1253호		주식회사 노블레스미디어			
대상보도	인터넷 일요저널 2019년 10월 27일자 사회면 「○○○○그룹 오○○ 본부장, 수습 아나운서 성추행 후 대기발령?」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모 기업 임원이 수습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임원의 실명 및 소속, 직책 등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3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54호	아시아타임즈	10월 27일	기업과 경제	○○○○ 본부장, 투자 핑계로 수습 아나운서 성추행	인터넷신문

제2019-1255호		주식회사 충청타임즈			
대상보도	충청타임즈 2019년 11월 18일자 3면 「업자에 3억 뒀돈 ○○○○공단 전 국장 법정구속」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조(사생활 보도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업무상배임수재 혐의로 모 공단 전(前) 국장이 법정구속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나이, 소속, 직책 등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9-1256호 인터넷뉴스신문고	
대상보도	인터넷뉴스신문고 2019년 11월 17일자 사회면 「法 남성 마사지사, 알몸 여성손님 상습 성추행 솜방망이 처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2조(범죄 묘사)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 마사지사가 알몸 상태의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 했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7호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19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뒤에서 머느리 꺼안고 입맞춘 시아버지…法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시아버지가 머느리를 강제추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추행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사용하여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1월 21일자 국제면 「“딸 무릎에 앉힌 다정한 아빠로 가장한 ‘아동 성추행범’을 신고합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아동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9호		주식회사 매일노동뉴스
대상보도	매일노동뉴스 2019년 11월 13일자 노동이슈면 「철도노조 ○○대의원, 코레일과 인사발령 갈등 후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4조(자살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코레일 직원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성(姓), 나이, 소속, 직책, 노조 대의원을 맡았던 점, 발령을 낸 지역 사업소 및 발령일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써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5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60호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2일	사회	“나 때문에 사족이 만든 규칙에 동료들 피해”...철도노동자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9-1261호	인터넷 금강일보	11월 14일	사회	○○ 철도노조 대의원 사망 놓고 갑질 때문 노사갈등 격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62호	매경닷컴	11월 14일	사회	○○서 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사측 황포로 극단적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9-1263호	연합뉴스	11월 13일	최신기사	○○서 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철도노조 집중 투쟁 선언	뉴스통신
제2019-1264호	전남일보	11월 22일	04	부당인사 항의에 갑질… 철도공사 직원 극단적 선택	지역일간지
제2019-1265호	온라인 중앙일보	11월 13일	사회	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코레일 갑질에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제2019-1266호	국민일보 주식회사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19년 11월 10일자 국제면 「여학생 얼굴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은 미국 여교사 (영상)」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노출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67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1월 11일자 국제면 「아빠 보고 싶어 우는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병문안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다」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길에서 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68호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대상보도	인사이트 2019년 11월 10일자 사건사고면 「40미터 높이 안테나에 맨몸으로 올라갔던 건설 노동자의 마지막 순간」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건설 노동자가 안테나 상단부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69호		주식회사 소셜뉴스
대상보도	위키트리 2019년 11월 11일자 월드면 「충격적인 홍콩 상황…시위대와 언쟁하던 시민 몸에 방화하는 영상 확산」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17조(충격·혐오감)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홍콩에서 시위대가 한 시민의 몸에 방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69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70호	인터넷 국민일보	11월 12일	국제	[영상] 홍콩 경찰 실탄 쏘자…시위대, 친중 남성 몸에 불질러	인터넷신문
제2019-1271호	뉴스1코리아	11월 12일	월드	[동영상]시위대가 친중인사 몸에 방화하는 장면	뉴스통신

제2019-1272호		주식회사 중앙신문
대상보도	중앙신문 2019년 11월 22일자 15면 「공항 화장실서 성폭행하려던 면세점 직원 영장」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본문과는 다르게 성폭력을 당할 뻔한 피해자인 면세점 직원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73호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대상보도	인터넷 시민일보 2019년 11월 11일자 대중문화면 「강한나 왕대륙 화제 속 호텔 수영장서 알몸으로 수영해 ‘충격」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법익침해 유형	제21조(기사 제목)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위 기사는 기사 본문과는 다르게 배우 강한나 씨가 호텔 수영장에서 알몸으로 수영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74호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대상보도	파이낸셜뉴스 2019년 11월 25일자 「靑 “日 불합리한 행동 반복된다면 협상 진전 어려울 것” 경고」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19조(여론조사 보도)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	

	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 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74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75호	헤럴드경제	11월 21일	05	“죽기를 각오”...출구 전략은 ‘안갯속’	중앙일간지
제2019-1276호	노컷뉴스	11월 22일	정치	종료도 유예도 ‘예측불허 반전’...90일간의 지소미아 파동	인터넷신문
제2019-1277호	인터넷 세계일보	11월 21일	정치	지소미아 종료 하루 앞으로... 靑, 마지막 반전 내놓을까	인터넷신문
제2019-1278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1월 24일	정치	靑 “日 불합리한 행동 반복된다면 협상 진전 어려울 것” 경고	인터넷신문
제2019-1279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11월 21일	정치일반	“죽기를 각오” 황교안의 단식, 출구전략은 ‘안갯속’	인터넷신문
제2019-1280호	한경닷컴	11월 22일	정치	“오전에도 대통령이 ‘극일’ 강조했는데...” 지소미아 극적 반전 왜?	인터넷신문

제2019-1281호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상보도	영남일보 2019년 11월 5일자 14면 「삼성서울병원 교수도 연수 오는 병원」 제하의 보도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법익침해 유형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 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019-1281호와 법익침해 유형 및 권고사항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언론사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19-1282호	인터넷 영남일보	11월 5일	사회	○○○○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도 연수 오는 병원	인터넷신문
제2019-1283호	강원일보	11월 5일	20	대학병원 수준 최신장비 갖춰 망막 수술만 5,000차례 달성	지역일간지
제2019-1284호	인터넷 강원일보	11월 5일	라이프	[우리지역 병·의원]대학병원 수준 최신장비 갖춰 망막 수술만 5,000차례 달성	인터넷신문
제2019-1285호	메디칼타임즈	10월 28일	병원·개원가	“중증 노인환자 24시간 치료…요양+재활 일상복귀 만전”	인터넷신문
제2019-1286호	조선일보	10월 29일	C02	항노화의 ‘비밀병기’ 줄기세포… 관절염·性 기능 개선 치료에도 효과적	중앙일간지
제2019-1287호	조선닷컴	10월 29일	특집섹션일반	“항노화의 ‘비밀병기’ 줄기세포… 관절염·性 기능 개선 치료에도 효과적”	인터넷신문
제2019-1288호	인터넷 건강신문	11월 18일	기업/기관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확대 운영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 대표전화 : 02) 397-3114
-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 홈페이지 : www.pac.or.kr
- * 블로그 : pacblog.kr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부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 MBC 8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전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빌딩 405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제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9 시정권고 사례집

제작 2020년 3월 30일

발행 2020년 3월 30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주)타라그래픽스 02)569-1472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사례집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